

월간
재정포럼

2020. February_Vol.284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02

권두칼럼

한국경제의 미래와 조세·재정정책 방향 | 정대영

현안분석

생계급여의 확대가 가계 이전지출의 승수효과에 미치는 영향 | 우진희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활용 및 인식 변화 | 정재호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유자격 기회 펀드(QOF) 투자 관련 최종 규정 발표 외



쓸수록 줄어듭니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 일회용 종이컵,
쓸수록 북극곰들의 집은 줄어듭니다.

kobaco

공익광고협의회

CONTENTS

권두칼럼

한국경제의 미래와 조세·재정정책 방향 | 정대영 02

현안분석

생계급여의 확대가 가계 이전지출의 승수효과에 미치는 영향
| 우진희 08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활용 및 인식 변화 | 정재호 34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유자격 기회 펀드(QOF) 투자 관련 최종 규정 발표 외 60



한국경제의 미래와 조세·재정정책 방향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 소장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의 미래가 희망적이지 않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듯하다. 정권교체가 되면 적폐청산과 함께 한국경제도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괜찮은 일자리의 부족은 지속되고, 서울 집값은 더 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사람들은 한국이 이미 선진국이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 상위 10~20%의 소득자들만 잘 살고, 서울만 화려해서는 선진국이 아니다. 중산층이 튼튼하고, 지방도 사람이 살만 해야 진짜 선진국이다.

한국경제의 성장률 정체와 양극화 심화

한국의 미 달러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은 2018년 3만 3,400달러였지만, 2019년에는 환율 상승 등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1995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달러를 넘었다. 한국은 언제쯤 4만달러에 이를 수 있을까? 미 달러화 가치가 폭락하지 않는 한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앞으로 3만 5,000달러 수준에서 주저앉을 가능성도 있다. 젊은이들에게는 지금이 가장 잘 살았던 시기로 기억될 수 있다.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 시대 전후에 태어나 3만달러 시대까지 살면서 기득권층에 올라선 사람들은 젊은이들의 좌절감을 이해하기 어렵다.

앞으로 한국경제가 활력을 찾고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껍질이 깨지는 고통이 있어야 조금 가능할 것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경기순환적 문제가 아니고, 성장능력의 결정요인인 노동·자본·

총요소생산성 모두가 구조적으로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부족도 일자리 전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로 심하게 양극화되었기 때문이다. 일자리의 양극화와 함께 서울 집값 폭등은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경제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하는 조세·재정정책

조세·재정정책은 국민경제의 기초를 만드는 경제정책의 핵심이다. 조세·재정정책이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조금씩이라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즉 성장능력 확충, 양극화 축소, 부동산으로의 자금 집중 방지, 고령화 등에 대비한 재정여력 확보 등이 조세·재정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한국경제의 활력도 되찾을 수 있다. 조세·재정정책 방향을 조세제도와 재정지출로 나누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한국의 조세제도는 법인세와 간접세 등에도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부분은 소득세이다. 한국은 개인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주요국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쳐 탈루되는 소득이 많고 조세 기반이 취약하다. 이는 주택임대소득 등 명백한 소득에 대한 미과세, 비트코인이나 유튜브 등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소득과 불법소득 등에 대한 과세능력 부족 등에 주로 기인한다. 여기에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40~50%가 여러 가지 이유로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부실한 소득세제도로 인해 한국의 조세제도가 정의롭지 못하고 지하경제가 커지는 원인이되기도 한다.

소득세 중 주택임대소득세는 최소한 일반소득과 비슷하게는 과세되어야 정상이다. 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거의 과세되지 않았다. 2020년부터 본격 과세한다고 하지만 실제 과세는 미미할 것 같다. 주택시장 안정과 세수 확보, 조세 정의 실현 등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철

.....

조세·재정정책은 국민경제의 기초를 만드는 경제정책의 핵심이다.

조세·재정정책이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조금씩이라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
**소득세 이외에
 우선 개편이 필요한
 부분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주택 관련 세제이다.
 이는 집값 안정과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저한 과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의 주택임대소득 규모가 얼마인지, 이중 어느 정도를 과세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통계를 투명하게 작성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의 주택임대소득은 신뢰할 만한 통계가 없다. 추정방식에 따라 40조원, 130조원 등으로 크게 달라진다. 평균 세율 10% 정도만 생각해도 엄청난 세수 증대효과가 있다.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과세는 가상화폐 등과 같이 새로 생긴 소득을 계속 쫓아가다 보면 뒷북만 치게 된다. 미국과 같이 소득세 포괄주의 도입이 정당이지만 반발이 클 것이다. 소득세 포괄주의는 공론화 등을 통해 논의를 시작하고, 과도기적으로는 주택구입 시 자금출처 조사를 더 엄격히 하여 과세되지 않은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특히 소득세 포괄주의가 도입되면 고소득사업자의 세금탈루도 어려워질 것이다.

소득세 이외에 우선 개편이 필요한 부분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주택 관련 세제이다. 이는 집값 안정과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보유세 강화와 취득세 인하, 양도소득세는 주택 보유 숫자보다는 양도차익의 크기에 따른 차등과세 강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의 납세 이연제도 도입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세율 인상 여력은 있으나 후세를 위해 남겨 두어야 한다. 법인세도 최고 세율을 소폭 인상할 여력이 있어 보이나 기업 환경이 나빠지고 있어 지금은 아닌 듯하다. 이보다는 법인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해서만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도 세수 증대와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 부동산임대소득이 법인소득의 50% 이상인 경우 최고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사업장을 해외로 옮길 수도 없어 실효성이 높을 것이다.

재정지출 확대,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다음으로 재정지출과 관련된 과제는, 장기적으로는 둔화되는 조세수입과 늘어나는 재정 수요의 조화문제이고,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많은 복지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둔화되는 조세수입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는 재정지출도 조세정책과 마찬가지로 성장동력 확충과 함께 자금흐름 개선, 노동시장의 불균형 완화 등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 지출 중 확충이 필요한 부분은, 이견이 많겠지만, 실업수당·주거복지·농민 수당 등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 중소기업 지원, 농업지원 등을 위한 재정지출은 확대도 필요하지만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

조세·재정정책은 다양한 국민의 욕구와 조세 저항 등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책 결정자들이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전망 등에 대해 좀 더 고민을 한다면, 괜찮은 일자리가 더 생겨나고 젊은 이들이 희망을 가지며 살고 싶어 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도 조금은 쉬워질 것이다. 출산율은 가족정책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KIPF**

.....

정책 결정자들이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전망 등에 대해 좀 더 고민을 한다면, 괜찮은 일자리가 더 생겨나고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며 살고 싶어 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 현안분석 |

■ 생계급여의 확대가 가계 이전지출의 승수효과에 미치는 영향

우진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활용 및 인식 변화

정재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생계급여의 확대가 가계 이전지출의 승수효과에 미치는 영향¹⁾

I. 서론

재정정책의 경기조절 기능은 경기 국면에 대응한 재량적인 지출 조정 혹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출이나 세율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세출과 세입이 경기 변동의 진폭을 완화시켜주는 기제를 의미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재량적인 지출 충격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재정 승수의 관점에서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광범위하게 논의되어 왔다. 그리고 자동 안정화 장치들이 경기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최근 들어 McKay and Reis(2016), Janiak and Monteiro(2016) 등의 연구에서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한 정량적인 분석 결과들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자동 안정화 장치의 크기와 재량적 재정지출 사이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규범적인(normative) 측면에서 자동 안정화 장치와 재량적 지출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논의하자면 “재정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자동 안정화 장치의 크기가 작을수록 재량적 재정지출을 경기 역행적으로 운용해서 평균적인 가계의 소비 평탄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 사회 후생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가?”와 같은 질문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의 첫 단계로 실증적인(positive) 측면에서 “재정제도에 내재된 자동 안정화 장치의 규모가 클수록 재량적 정부지출의 승수효과는 감소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탐구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생계급여의 평균적인 수급액의 증가가 특히 이전지출의 승수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량적인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자동 안정화 장치의 여러 구성 요소들 중 특히 생계급여에 집중하는 이유는 「2019~2023 국가 재정 운용계획」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반영하여 생계급여 관련 지출 총액이 2019년 3.8조원에서 2023년 5.7조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우진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jhwoo@kipf.re.kr)

1) 본고는 우진희·강동익, 「가계의 이질성을 고려한 이전지출의 승수효과 분석」, 2019 제IV, V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고의 분석 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한 것이다.

때문이다.

생계급여의 평균적인 수준이 증가하게 되면 수급 가구들의 가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가계의 예비적 동기의 저축과 노동 공급 유인을 감소시켜 전반적인 가계의 자산 축적 규모를 축소시키는 간접적인 효과도 발생하게 된다. 정부지출 중 특히 이전지출의 승수효과는 가계의 가치분소득과 자산 분포에 따라서 결정되는 한계소비 성향 분포에 의해 그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생계급여의 평균적인 수준 변화가 특히 재량적인 이전지출의 승수효과 크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I장에서는 생계급여 제도와 최근 도입되고 있는 부양자 의무 기준 완화 관련 정책에 대해 설명한다. 제III장에서는 승수효과 분석에 사용될 일반균형 모형의 구성과 모수 설정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제IV장에서는 제III장에서 소개한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평균적인 생계급여의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서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재량적 이전지출 증가 충격의 승수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한다. 제V장에서는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다.

II. 생계급여 관련 제도 소개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수급가구에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생계급여 수급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표 1>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구규모에 따른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수급가구에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부양의무자는
생계급여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 이내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한다.

<표 1> 2019년도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 및 선정 기준

(단위: 원)

| 2019년 |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
| 기준 중위소득 (A) |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 (A의 30%) | | 512,102 | 871,958 | 1,128,010 | 1,384,061 |

출처: 보건복지부,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019, p. 232

추가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부양의무자는 생계급여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 이내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를 의미한다. <표 2>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고려하여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양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분적인 도움을 받고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일정 금액의 부양비를 수급자에 대한 이전소득으로 산정하여 수급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표 2> 부양능력 판정 기준

| 구분 | 소득 기준 | 재산 기준 | 판단 기준 |
|---------|--|---|---------------------------------|
| 부양능력 없음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 | 부양의무자 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 소득 합계의 18% 미만 | 소득기준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면서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 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소득 4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 소득 합계의 18% 미만 | 소득기준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 부양능력 있음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면서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 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소득 40%를 합한 금액 이상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 소득 합계의 18% 이상 | 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중 하나만 초과하여도 있음으로 판정 |

주: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은 부양 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의미함

출처: 보건복지부,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019, pp. 182~184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과 관련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에 따라 “급여 신청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될 수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의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²⁾ 하지만 2017년에 수행된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 2015년 기준 비수급 빈곤층 93만명 중 다수가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2017년 8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는 중기 시계에 걸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상자 별·급여별로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부양의무자의 재산 중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기타 산정되는 재산에 적용되는 월 4.17%의 소득 환산율을 월 2.08%로 완화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³⁾

단계별 계획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부양의무자로 둔 수급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서 제외되었다.⁴⁾ 또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2019년 9월부터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을 월 2.08%로 완화하였다. 2020년 도입 예정인 생계급여 관련 정책들로는 ①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② 근로연령층(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소득 30% 공제, ③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에 적용하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대도시 5,400만원에서 6,900만원으로, 중소도시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농어촌은 2,9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인상하고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을 지역별로 20~36.8% 확대, ④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자녀인 경우, 자녀의 성별 및 혼인 여부에 따라서 ‘부양능력 미약’ 판정 시 적용하는 부양비 부과율을 차등 적용하였으나 이를 동일하게 하는 동시에 부과 비율 자체를 10%로 일괄 인하하였다.

III. 일반균형 모형

본장에서는 승수효과 분석에 사용할 McKay and Reis(2016)의 가계의 이질성을 명시적으로 반영한 뉴케인지언 모형(heterogenous agent new Keynesian)을 소개한다. McKay and Reis(2016)의 모형은 가계의 소득·자산 분포의 이질성, 노

2015년 기준 비수급 빈곤층 93만명 중 다수가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보건복지부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019. p. 218에서 인용하였다.

3) 구체적인 내용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p. 23을 참고 바란다.

4) 기초연금 수급자를 부양의무자로 둔 수급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18년 7월 발표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따라서 2019년 1월부터 앞당겨 시행되었다.

소득 상위 20% 가계는
 노동 생산성 충격과
 고용상태 충격에
 노출되어 있지 않고
 중간재 생산기업과
 자본재 생산기업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

동 시장 리스크, 고용·실업급여 수급·생계급여 수급상태에 대한 명시적인 구분
 이 가능하고, 가격 경직성 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본고의 분석 목적에
 맞게 이 전지출의 승수효과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모형이다.

모형 경제의 구성요소를 소개한 뒤에는 모형 경제의 소득 5분위별 소득과 자산
 분포 및 재정제도가 실제 한국 경제와 적합성을 갖출 수 있도록 모수를 설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모형 경제⁵⁾

가. 가구부문

소득 상위 20% 가계는 노동 생산성 충격과 고용상태 충격(고용상태에서 실업
 상태로의 전이)에 노출되어 있지 않고 중간재 생산기업과 자본재 생산기업을 모
 두 소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재 생산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업의 영
 업 잉여와 생산 자본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소득은 모두 소득 상위 20% 가계
 에 귀속된다. 소득 상위 20% 가계는 개별 가계에 특정한 소득 및 고용상태 충격
 (idiosyncratic shock)에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득 상위 20% 가계 안에서
 의 소득과 자산 분포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이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 가
 구를 상정하여 소비, 자산 축적, 노동 공급의 행태를 묘사할 수 있다. 소득 상위
 20%를 대표하는 가구의 최적화 문제는 식(1)과 식(2)로 표현될 수 있다.

$$E_0 \sum_{t=0}^{\infty} \beta_e^t \left[\log c_t - \psi_1 \frac{n_t^{1+\psi_2}}{1+\psi_2} \right], \quad \text{식 (1)}$$

$$s.t \quad (1 + \tau_c)p_t c_t + b_{t+1} - b_t = p_t [x_t - \bar{\tau}^x(x_t) + T_t^p]. \quad \text{식 (2)}$$

$$\text{where} \quad x_t = (I_{t-1}/p_t)b_t + d_t + w_t \bar{s} n_t$$

소득 상위 20% 가계는 소비(c_t)를 통해서 효용을 얻고 노동 공급(n_t)으로부터
 는 비효용을 얻게 된다. 식 (2)는 예산 제약식을 나타내는데 우변은 해당 분기의
 가처분소득, 좌변은 해당 분기의 소비와 채권을 이용한 저축 혹은 차입을 나타낸

5) 모형 경제의 묘사는 McKay and Reis(2016)의 p. 148의 방정식 (1)부터 p. 154의 방정식 (27)까
 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고의 분
 석 내용에 맞게 수정·재편집한
 것이다.

다. p_i 는 최종 소비재의 가격, w_i 는 시장 균형임금, t_i 는 채권에 대한 명목 이자율, \bar{s} 는 소득 상위 20% 가계의 노동 생산성, τ_c 는 부가가치 세율, $\bar{\tau}^x$ 는 소득세, T_i^p 는 정액세 혹은 정부로부터의 이전소득을 의미한다. 가계의 시장소득 (x_i)은 채권으로부터의 이자소득 혹은 비용, 중간재 생산업체와 자본재 생산업체로부터의 배당소득(d_i), 노동소득($w_i \bar{s} n_i$)으로 구성된다.

경제 내 소득 하위 80%에 속하는 가구들은 상위 20% 가구들과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우선, 소득 하위 80%에 속하는 가구들은 노동소득 충격과 함께 고용상태 충격에 노출되어 있다. 노동소득 충격은 이 가구들의 노동 생산성이 확률적으로 서로 다른 수준으로 이행하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소득 하위 80% 가계는 고용상태, 실업급여 수급상태, 생계급여 수급상태를 확률적으로 이행하게 된다. 소득 하위 80% 가구들의 경우에는 노동 생산성과 고용상태에 대한 개별적인 충격으로 인해 소득과 자산의 분포가 발생하게 되고 현재 자산 수준, 노동 생산성, 고용상태 등에 따라서 소비와 저축 및 노동 공급에 대한 최적 의사 결정이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가구들은 소득 상위 20%처럼 대표 가구를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가구의 특성에 따른 최적화 선택 문제와 가구 특성의 분포를 명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소득 하위 80% 중 고용상태에 있는 가구들은 소득 상위 20% 가구와는 달리 노동소득과 함께 채권 보유에 따른 이자소득만으로 시장소득이 구성된다. 실업급여 수급상태에 있는 가계들은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노동생산성에 비례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 생계급여 수급상태에 있는 가구들은 노동생산성 수준에 연동되지 않은 생계급여를 지급받는다. 따라서 근로자 가구의 최적 선택 문제는 다음과 같다. 생계급여는 실업급여와는 달리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적인 소득 하위 80% 가구의 상위 20% 가구 대비 중요한 차이점은 채권시장에서 차입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노동시장 충격과 차입 제약의 존재로 인해 소득 하위 가구 중 일정 비중은 현재 원하는 수준의 소비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게 된다. 이들 가구들은 특히 한계소비 성향이 높게 나타나게 된다.

데이터에서 관찰되는 소득 상위 20% 가구의 자산 집중도를 모형 경제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소득 하위 80% 가구의 시간 할인율(β_h)은 소득 상위 20% 가구의 시간 할인율(β_c)과 다른 값을 가지도록 설정했다. 그 외의 선호체계를 나타내

소득 하위 80%에 속하는 가구들은 노동소득 충격과 함께 고용상태 충격에 노출되어 있다. 노동소득 충격은 이 가구들의 노동 생산성이 확률적으로 서로 다른 수준으로 이행하게 됨을 의미한다.

재량적인 이전지출 증가의 승수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생계급여 수준은 AR(1) 형태의 확률 과정을 따르는 것으로 모형화하여 이들 급여 수준에 충격이 발생했을 때 모형 경제의 동태적인 반응을 통해서 이전지출의 승수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는 모수들은 소득 상위 20% 가구와 동일하다.

가계를 소득 상위 20%와 하위 80%의 두 그룹으로 나눈 선택이 다소 자의적일 수 있다. 하지만 모수 설정과정에서 각 소득 그룹이 차지하는 자산과 소득의 비중을 실제 데이터에서 관찰되는 수준과 유사하게 발생시키는 한, 소득 그룹 구분의 구체적인 선택이 재량적인 지출 증가 충격에 대한 모형 경제의 총량 변수들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의 모형 경제와 달리 소득 상위 15%와 하위 85%로 가계를 구분할 경우 모형 경제의 모수 설정 과정에서 데이터에 관찰되는 소득 상위 15% 가구의 자산과 소득 비중을 설명할 수 있도록 관련 모수들을 다시 설정해주면 현재의 모형 경제와 재정 승수에 대한 분석 결과는 유사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 이유는 소득 5분위 수준 근처의 항상소득 수준에서는 가계의 한계소비 성향이 일정한 수준으로 수렴하기 때문이다. 재량적인 이전지출 증가 충격에 노출되는 가계의 수가 현재 분석 대비 다소 늘어나거나 줄어들더라도 총수요 확대효과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재량적인 이전지출 증가의 승수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생계급여 수준은 AR(1) 형태의 확률 과정을 따르는 것으로 모형화하여 이들 급여 수준에 충격이 발생했을 때 모형 경제의 동태적인 반응을 통해 이전지출의 승수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소득 하위 80%에 속하는 가구 i 의 최적화 문제는 다음 식들로 나타낼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소득 하위 80% 가구들은 이질적인 가구 특성을 명시적으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 가구를 나타내는 “ i ” 첨자를 사용하여 최적화 문제를 표현한다.

$$\max E_0 \sum_{t=0}^{\infty} \beta_h^t \left[\log c_t(i) - \psi_1 \frac{n_t(i)^{1+\psi_2}}{1+\psi_2} \right] \tag{3}$$

$$s.t. (1 - \tau_c) p_t c_t(i) + b_{t+1}(i) - b_t(i) = p_t \left[x_t(i) - \bar{\tau}^x(x_t(i)) + \bar{T}_t^s 1_{\{\text{생계급여수급}\}} \right] \tag{4}$$

$$b_{t+1}(i) \geq 0 \text{ 차입 제약 조건} \tag{5}$$

$$\text{where } x_t(i) = \begin{cases} \frac{I_{t-1}b_t(i)}{p_t} + w_t s_t(i) n_t(i) & \text{고용상태;} \\ \frac{I_{t-1}b_t(i)}{p_t} + \min\{s_t(i) \overline{T}_t^u, \text{실업급여 상한}\} & \text{실업급여 수급상태;} \\ \frac{I_{t-1}b_t(i)}{p_t} & \text{생계급여 수급상태} \end{cases}$$

나. 생산부문

경제의 생산부문에는 완전 경쟁시장의 최종재화 생산기업,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가격 경직성에 직면하고 있는 중간재 생산기업과 자본 조정 비용에 직면하고 있는 자본재 생산기업이 있다.

최종재화 생산기업은 완전경쟁시장에서 중간재들의 일정한 대체 탄력성(μ)을 가진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최종재화를 생산한다.

$$y_t = \left(\int_0^1 y_t(j)^{1/\mu} dj \right)^\mu \tag{6}$$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중간재를 생산하는 중간재 생산기업들은 가계가 공급하는 노동과 자본재 생산업체가 공급하는 생산자본을 생산요소로 하는 다음의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중간재를 생산한 뒤 최종재화 생산기업에 판매한다.

$$y_t(j) = k_t(j)^\alpha l_t(j)^{1-\alpha} \tag{7}$$

중간재 생산업체는 생산을 위한 고정비용 ξ 를 매기 지불해야 한다. 중간재 생산업체들은 영업 잉여 중 일부분을 법인세로 납부하고 세후 영업 잉여는 중간재 생산업체들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소득 상위 20% 가구에 배당으로 지급한다. 중간재 생산기업들은 calvo-pricing 형태의 가격 경직성을 직면하고 있어서 매 분기 일정한 확률(θ)로만 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자본재 생산기업은 자본 조정 $\left(\frac{\zeta}{2} \left(\frac{\Delta k_{t+1}}{k_t}\right)^2 k_t\right)$ 비용하에서 생산자본에 대한 투

경제의 생산부문에는
완전 경쟁시장의 최종재화
생산기업,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가격 경직성에
직면하고 있는
중간재 생산기업과
자본 조정 비용에
직면하고 있는
자본재 생산기업이 있다.

정부의 수입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중간재

및 자본재 생산업체에

부과하는 법인세,

소득 상위 20% 가구에

부과하는 정액세로 구성된다.

정부 지출은 정부소비,

실업급여, 생계급여,

잔존 국고채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이루어진다.

자를 결정하고 축적된 자본 스톡은 이자율 r 을 받고 중간재 생산업체에 대여한다.

다. 정부부문

정부의 수입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중간재 및 자본재 생산업체에 부과하는 법인세, 소득 상위 20% 가구에 부과하는 정액세(lumpsum tax)로 구성된다. 정부 지출은 정부소비, 실업급여, 생계급여, 잔존 국고채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이루어진다.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국고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

재량적인 지출 증가로 인하여 잔존 국고채의 실질 가치가 균제상태 수준을 벗어나게 될 경우에 장기적으로는 재정수지를 조정하여 잔존 국고채의 실질 가치를 균제상태 수준으로 안정화시켜야 한다. 이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계의 행태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득 상위 20% 가구에 부과하는 정액세를 증가시키는 방식을 채택한다. 잔존 국고채의 실질 가치 변화에 대응한 소득 상위 20% 가계에 부과하는 정액세의 조정식은 식 (8)과 같다. 조정식에서 \bar{T}^p 는 균제상태에서의 소득 상위 20% 가계에 대한 정액세의 수준, \bar{B}/\bar{p} 는 균제상태에서의 잔존 국고채의 실질 가치를 나타낸다.

$$T_t^p = \bar{T}^p + \gamma^T \log\left(\frac{B_t/p_t}{\bar{B}/\bar{p}}\right) \tag{8}$$

라. 통화정책

현재 한국은행은 2%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을 목표로 해서 기준 금리를 설정하는 인플레이션 타기팅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를 반영하기 위해서 모형 경제에서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에만 반응하는 식 (9)와 같은 테일러 준칙(Taylor rule)을 따르도록 설정하였다.

$$I_t = \bar{I} + \phi \Delta \log(p_t) \tag{9}$$

수식 (9)에서 \bar{I} 는 균제상태에서의 명목 이자율, ϕ 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모수이다.

마. 시장 청산 조건

모형 경제의 균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생산자본시장, 채권시장, 그리고 최종 재화시장에 대한 청산 조건이 필요하다. 왈라스 법칙(Walras Law)에 따라서 나머지 3개 시장의 청산 조건이 성립하는 경우 최종 재화시장 청산 조건 역시 자동적으로 성립하게 되므로 노동시장, 생산자본시장, 채권시장 청산 조건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고려하겠다.

식 (10)에 제시되고 있는 노동시장 청산 조건의 좌변은 중간재 기업의 노동수요의 합계를 나타내고 우변의 첫 번째 항은 소득 하위 80% 가계의 노동 생산성을 고려한 유효 노동 공급, 두 번째 항은 소득 상위 20% 가계의 노동 생산성을 고려한 유효 노동 공급을 의미한다. 소득 하위 80% 가구의 비중이 소득 상위 20% 가구의 4배이기 때문에 소득 하위 80% 가구의 변수를 집계하는 적분 식에서의 상한은 4로 표시한다.

$$\int_0^1 l_t(j) dj = \int_0^4 s_t(i) n_t(i) di + \bar{s} n_t \tag{식 (10)}$$

식 (11)은 자본시장 청산 조건을 나타내고 있는데, 중간재 생산기업들의 생산 자본에 대한 수요의 합계가 자본재 생산기업의 생산 자본 공급량과 일치해야 함을 의미한다.

$$k_t = \int_0^1 k_t(j) dj \tag{식 (11)}$$

식 (12)는 채권시장 청산 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식 (12)의 좌변은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를 나타내고 우변의 첫 번째 항은 소득 하위 80%가 보유한 채권의 합계를 나타낸다. 우변의 두 번째 항은 소득 상위 20% 가구가 발행 또는 보유한 채권을 나타낸다. 정부와 소득 상위 20% 가구만이 채권 발행을 통해 차입을 할 수 있다.

모형 경제의 균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생산자본시장, 채권시장, 그리고 최종재화시장에 대한 청산 조건이 필요하다.

모형 경제의 구성 요소들은
 개별 경제주체들의
 최적화 문제, 시장 청산조건,
 정부의 행태 방정식 등을
 정합적으로
 만족시켜야 한다.

$$B_t = \int_0^4 b_t(i) di + b_t \tag{12}$$

바. 균형의 정의

모형 경제의 균형을 이루는 요소들은 소득 하위 80% 가계의 상태 변수 조합 (자산, 노동 생산성, 고용상태)에 따른 최적 소비와 노동 공급 함수, 소득 하위 80% 가계의 상태 변수들의 결합분포, 총량 변수인 GDP, 생산 자본, 소비, 노동 공급 총량, 생산 자본, 채권의 총량, 생산 자본에 대한 투자량, 가격 변수인 임금, 생산 자본에 대한 이자, 최종 재화의 가격, 정부의 정책 변수인 재정 수입, 재정 지출, 국고채 발행액, 명목 금리 등으로 구성된다. 모형 경제의 구성 요소들은 앞에서 설명한 개별 경제주체들의 최적화 문제, 시장 청산 조건, 정부의 행태 방정식 등을 정합적으로 만족시켜야 한다.

2. 모수 설정(calibration)

가. 외생적으로 설정된 모수

모형 경제와 데이터의 적률 일치 과정 없이 선행 연구나 데이터에서의 추정치를 직접 이용한 모수들로는 노동시장 상태 전이 행렬, 위험 회피도, 노동 공급 탄력성, 가격경직성, 생산함수에서 자본의 비중, 감가상각률, 중간재들의 대체 탄력성 등이 있다.

소득 하위 80%에 속하는 가계들이 노동시장에서 취업상태, 실업급여 수급상태, 생계급여 수급상태를 이행하게 될 확률은 다음 행렬과 같이 계산되었다. 행렬에서 각 행에 있는 값들은 현재 취업, 실업급여 수급, 생계급여 수급상태에 있는 가계가 다음 분기에 취업, 실업, 생계급여 수급상태로 이행하게 될 확률을 의미한다.

| | | | |
|------|-------|-------|-------|
| 취업 | 0.988 | 0.012 | 0 |
| 실업 | 0.199 | 0.678 | 0.122 |
| 생계급여 | 0.062 | 0 | 0.93 |

취업 상황에서 생계급여 수급상태로 곧바로 전환할 확률 및 생계급여 수급상

태에서 다시 실업급여 수급상태로 전환할 확률은 각 상태의 정의상 0이 되고 취업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될 확률과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취업자가 될 확률은 데이터에서 해당 확률을 직접 계산하였다. 그 외 실업급여 수급상태에서 취업상태로의 전이 확률과 실업급여 수급상태에서 생계급여 수급상태로의 전이 확률은 전이 행렬로부터 도출되는 취업자, 실업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의 장기적인 비율이 데이터에서 관찰되는 비율과 일치되도록 설정하였다.

취업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으로 전환할 확률은 2015년 1분기부터 2019년 2분기까지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 대비 고용보험 가입자 수 비율의 평균값인 $1.5\% (= \frac{0.012}{1-0.199})$ 로 설정하였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1분기부터 「구직급여 신규 신청동향」에서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 통계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2015년 1분기 이후의 자료를 이용하여 해당 확률을 계산하였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고용보험 통계를 이용하였다.

생계급여 수급상태에서 취업상태로 전환할 확률은 2017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간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계·주거·의료 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의 1년 후 1개 이상의 급여 수급에서 벗어난 탈수급자 비중인 22.7%를 맞출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⁶⁾

실업상태에서 취업상태로의 전환 확률과 실업상태에서 생계급여 수급상태로의 전환 확률은 노동시장 상태 전이 행렬의 장기 균형상태에서의 취업자 수, 실업급여 수급자 수, 생계급여 수급자 수의 상대적인 비중과 일치하도록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 실업급여 수급자 수, 15~64세 생계급여 수급자 수의 2008~2018년 각 연도 12월 말 기준 상대 비중의 평균치인 92%, 2.7%, 5.3%를 맞출 수 있도록 해당 확률들을 설정하였다. 모형 경제에서 고려하고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들은 근로 능력이 있어서 취업상태로 전이할 가능성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들이기 때문에 15~64세에 속하는 생계급여 수급자 수를 사용하여 상대적인 비중을 계산하였다. 연령별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노동시장 상태 전이 행렬 외에 외생적으로 설정한 모수들은 위험 회피도, 노동공급 탄력성, 가격경직성, 생산함수에서 자본의 비중, 감가상각률, 중간재들의 대

모형 경제와 데이터의 적률 일치 과정 없이 선행 연구나 데이터에서의 추정치를 직접 이용한 모수들은 노동시장 상태 전이 행렬, 위험 회피도, 노동공급 탄력성 등이 있다.

6) 관계부처 합동,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 p. 10을 참고하기 바란다.

노동시장 상태 전이 행렬
 외에 외생적으로 설정한
 모수들은 위험 회피도,
 노동 공급 탄력성,
 가격경직성, 생산함수에서
 자본의 비중, 감가상각률,
 중간재들의 대체 탄력성
 등이 있다.

체 탄력성 등이 있다.

가격경직성 파라미터 값인 θ 는 박창귀·송승주(2013)의 연구 결과에 따라 가격 지속성의 중앙값이 1년이 되도록 0.25로 설정하였다. 중앙값 1년은 9~11개월 정도로 알려진 미국의 가격 지속성의 중앙값과도 유사하다. 중간재들의 대체탄력성은 배병호(2014)의 추정 결과를 따라 4.5로 설정하였고 위험 회피도, 노동 공급의 Frisch elasticity, 생산함수에서 자본의 비중, 감가상각률은 관련 문헌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1, 0.5, 0.36, 6%로 설정하였다.

나. 모형 경제의 균제상태 균형을 이용해서 설정한 모수

가계의 선호체계, 정부 지출, 소득세, 법인세와 부가가치 세율, 근로자 가구가 직면하는 노동 생산성 충격, 중간재 생산업체들의 고정비용 등의 모수들은 모형 경제에서 균제상태에 있는 적률들을 데이터에서의 적률들과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설정하였다.

우선, 선호체계와 관련된 모수는 소득 상위 20% 가구와 소득 하위 80% 가구의 시간 선호율 및 노동 공급에 따른 비효용이 있는데 소득 상위 20% 가구와 소득 하위 80% 가구는 시간 선호율은 상이하고 그 외 선호와 관련된 모수들은 동일하다. 소득 상위 20% 가구의 시간 할인율(β)은 모형 경제의 균제상태에서의 분기 GDP 대비 자본 스톡의 비율이 통계청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7년 국민대차대조표 작성 결과」에서 생산자산 중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하고 계산한 값인 9.9가 되도록 설정했다. 근로자 가구의 시간 할인율(β^h)은 소득 상위 20% 가구의 자산이 경제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43.5%를 맞추도록 설정하였다. 소득 상위 20% 가구의 순자산 비중 43.5%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한 ‘소득 5분위별 자산, 부채, 소득 현황’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노동 공급에 따른 비효용 모수는 소득 상위 20% 가계와 고용상태에 있는 소득 하위 80% 가계의 평균적인 가용 시간 대비 노동 공급 시간의 비중이 33%가 되도록 설정하였다.

소득세의 누진성을 반영하기 위해 소득세의 한계세율을 소득세의 3차 함수로 근사하였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해당 세목의 GDP 대비 세수입을 맞출 수 있도록 정률의 세율을 설정하였다.

소득세의 한계세율 함수에 포함되는 4개의 모수들을 설정하기 위해 소득구간

1천만~2천만원, 2천만~4천만원, 4천만~6천만원을 소득 상위 20%의 평균세율인 1.3%, 3.5%, 6.6%, 12.5%에 맞추도록 설정하였다. 해당 소득 구간에서의 평균 세율은 「국세통계연보」에서 제공하는 2017년의 소득 구간별 평균세율을 이용하여 계산했다. 법인세율과 부가가치세 세율은 GDP 대비 법인세수와 부가가치세수의 비중인 3.4%, 3.9%를 맞추도록 조정했다. 중간재 생산업체들의 고정비용은 GDP 대비 법인의 영업 잉여 비중인 18.5%를 맞추도록 설정했다.

실업자들의 노동 생산성 대비 구직급여 비율은 2017년 1월 기준(「2017년 1월 고용보험통계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계정 중 구직급여 수급자당 평균수급액인 99만 9,000원(「2017년 1월 고용보험통계표」)의 2017년 가계금융복지 조사상 평균소득 대비 비중인 24%를 맞출 수 있도록 했다. 수급자 1인당 생계급여 수급액은 2017년 1월 기준 수급가구 평균 생계급여 수급액 42만원(「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수급자당 평균액으로 환산한 뒤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상 평균소득 대비 비중인 7.5%가 되도록 조정했다.

GDP 대비 정부소비는 2017년 통합 재정수지 항목 중 재화 및 용역, 기업 특별회계, 자본 지출의 합으로 계산한 5.85%가 되도록 했고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17년 말 중앙정부 채무만을 이용해서 계산한 값인 36.3%(연간 GDP 대비)를 맞추도록 설정했다.

현재 모형 경제에서는 소득 하위 80% 근로자들만 노동 생산성 충격에 노출되어 있고 노동 생산성 충격과 함께 고용상태 충격에도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노동 생산성 충격에 대한 추정치를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대안으로서 노동 생산성 수준 및 노동 생산성 이행 행렬을 5개의 모수로 나타내고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한 ‘소득 5분위별 자산, 부채, 소득 현황’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체 평균소득 대비 소득 분위별 평균소득의 비중과 함께 모형 경제에서 평균소득을 1로 정규화시키는 방식으로 노동소득 관련 모수들을 설정하였다.

소득 하위 80% 가구들의 노동 생산성을 3가지 수준으로 구성하고 노동 생산성 이행 행렬은 생산성의 지속성을 나타내는 1개의 모수를 이용하여 식 (1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소득세의 누진성을 반영하기 위해 소득세의 한계세율을 소득세의 3차 함수로 근사하였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해당 세목의 GDP 대비 세수입을 맞출 수 있도록 정률의 세율을 설정하였다.

소득 하위 80% 가구들의
노동 생산성을 3가지
수준으로 구성하고
노동 생산성 이행 행렬은
생산성의 지속성을 나타내는
1개의 모수를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begin{matrix} low \\ medium \\ high \end{matrix} \left[\begin{array}{ccc} 1-p & p & 0 \\ p & 1-2p & p \\ 0 & p & 1-p \end{array} \right] \quad \text{식 (13)}$$

소득 상위 20% 가구의 노동 생산성 수준까지 포함하면 노동 생산성과 관련하여 설정해야 할 모수는 5개가 된다.

<표 3> 모형 경제의 모수값들

| 모수 | symbol | 값 |
|-----------------|------------------|-----------------|
| 위험 회피도 | | 1 |
| 노동 공급 탄력성 | $1/\psi_2$ | 0.5 |
| 생산함수에서 자본의 비중 | α | 36% |
| 감가상각률 | δ | 1.5% (연 6%) |
| 가격 경직성 | θ | 0.25 |
| 중간재 대체 탄력성 | μ | 4.5 |
| 자본가의 시간 할인율 | β^e | 0.997 |
| 근로자의 시간 할인율 | β^h | 0.992 |
| 노동 공급에 따른 비효용 | ψ_1 | 18.3 |
| 소득세 함수-3차항 | τ_3^x | 0.0017 |
| 소득세 함수-2차항 | τ_2^x | -0.018 |
| 소득세 함수-1차항 | τ_1^x | 0.12 |
| 소득세 함수-상수항 | τ_0^x | 0 |
| 법인세율 | τ_k | 18.8% |
| 부가가치세율 | τ_c | 5.0% |
| 구직급여율 | $\overline{T^u}$ | 16.4% |
| 사회보장 급여 | $\overline{T^s}$ | 7.5% (평균소득 대비) |
| 중간재 생산의 고정비용 | ξ | 0.004% (GDP 대비) |
| 정부소비 비중 | $g/(GDP+\xi)$ | 5.99% |
| 근로자 노동 생산성-Low | s_l | 0.37 |
| 근로자 노동 생산성-Med. | s_m | 1.47 |
| 근로자 노동 생산성-High | s_h | 1.66 |
| 자본가 노동 생산성 | \overline{s} | 2.83 |
| 노동 생산성 이행 확률 | ρ | 1.8% |

출처: 모형 경제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표 4> 모형과 데이터에서의 모멘트값들

(단위: %)

| 모멘트 | 데이터 | 모형 경제 |
|----------------|--------|--------|
| 자본소득/GDP | 9.9 | 9.62 |
| 법인세수/GDP | 3.42 | 3.45 |
| 부가가치세수/GDP | 3.88 | 3.95 |
| 평균실업급여/평균소득 | 24 | 24.6 |
| 평균생계급여/평균소득 | 7.5 | 7.6 |
| 소득 1천만~2천만원 세율 | 1.28 | 1.34 |
| 소득 2천만~4천만원 세율 | 3.54 | 3.86 |
| 소득 4천만~6천만원 세율 | 6.57 | 6.27 |
| 소득 5분위 세율 | 12.5 | 11.52 |
| 2분위 평균소득/전체 평균 | 49.06 | 41.59 |
| 3분위 평균소득/전체 평균 | 81.24 | 79.93 |
| 4분위 평균소득/전체 평균 | 121.18 | 120.33 |
| 5분위 평균소득/전체 평균 | 230.12 | 243.10 |
| 모형 경제 평균소득 | | 1 |
| 정부소비/GDP | 5.85 | 5.99 |
| 법인 영업 잉여/GDP | 18.53 | 18.36 |
| 소득 5분위의 순자산 비중 | 43.5 | 42.94 |
| 평균 노동 공급 시간 | 33 | 32 |

출처: 모형 경제 및 「가계금융복지조사」, 「고용보험통계표」, 「국세통계연보」 자료 등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

<표 3>과 <표 4>는 모수 설정 과정을 통해 설정된 모수값들과 해당 모수값들에서 목표로 했던 데이터에서의 모멘트값과 모형 경제의 균제상태에서의 모멘트값들을 비교하고 있다.

<표 5>는 추가적으로 모형 경제에서의 소득 5분위별 평균 순자산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관찰되는 해당 값과 비교하고 있다. 소득 5분위별 평균 순자산은 모수 설정과정에서 직접 타기당한 모멘트들은 아니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한 ‘소득 5분위별 자산, 부채, 소득 현황’에서 관찰되는 값과 잘 근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형 경제의 소득 분위별 가구의 자산 축적 행태가 데이터와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모형 경제의 소득 분위별 가구의 자산 축적 행태는 데이터와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모형 경제를 이용하여
재량적인 이전지출 증가
충격에 대한 거시 경제의
반응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GDP 대비 국가채무의
변동성, 명목 이자율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반응 정도, 투자의 조정 비용
크기 등의 모수들이 실제 한국
경제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

<표 5> 전체 평균 대비 소득 분위별 소득과 자산의 평균

| 구분 | 소득-데이터 | 소득-모형 | 순자산-데이터 | 자산-모형 |
|------------|--------|-------|---------|-------|
| 전체 평균(만원) | 5,020 | | 31,572 | |
| 소득 1분위 (%) | 18.3 | 14.4 | 37.7 | 46.1 |
| 소득 2분위 (%) | 49.1 | 41.6 | 57.5 | 56.5 |
| 소득 3분위 (%) | 81.2 | 79.9 | 77.7 | 73.3 |
| 소득 4분위 (%) | 121.2 | 120.3 | 109.4 | 109.1 |
| 소득 5분위 (%) | 230.1 | 243.1 | 217.5 | 214.7 |

출처: 모형 경제 및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다. 모형 경제의 경기변동을 이용하여 설정한 모수

모형 경제를 이용해서 재량적인 이전지출 증가 충격에 대한 거시경제의 반응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GDP 대비 국가채무의 변동성, 명목 이자율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반응 정도, 투자의 조정 비용 크기 등의 모수들이 실제 한국 경제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생산성 충격, 통화정책 충격, 생산 비용 충격을 이용한 모형 경제의 경기 변동 시뮬레이션에서 나타나는 GDP 대비 국가채무, 정부 소비, 인플레이션, 투자의 변동성이 2000년대 이후 한국 경제에서 실제로 관찰되는 해당 변수들의 변동성과 일치되도록 관련 모수의 값을 설정하였다.

- 국가채무 조정식

$$T_t^p = \bar{T}^p + \gamma^T \log\left(\frac{B_t/p_t}{\bar{B}}\right)$$

- 통화정책 함수

$$I_t = \bar{I} + \phi \Delta \log(p_t) - \varepsilon_t$$

- 자본 조정 비용 함수

$$d_t^k = r_t k_t - \Delta k_{t+1} - \frac{\zeta}{2} \left(\frac{\Delta k_{t+1}}{k_t}\right)^2 k_t$$

<표 6> 모형 경제의 경기 변동을 이용하여 설정한 모수

| 구분 | 데이터 | 모형 | 관련 모수 | 모수값 |
|----------|--------|--------|----------|-------|
| 국가채무/GDP | 0.0071 | 0.0076 | 채무 조정식 | -3.25 |
| 투자 | 0.034 | 0.034 | 자본 조정 비용 | 13.7 |
| 인플레이션 | 0.0055 | 0.0053 | 통화정책 함수 | 1.48 |

출처: 모형 경제 및 「국민계정」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본고에서 선택한 생계급여 확대 정책의 반영방식을 통해 생계급여 확대가 가계의 예비적 동기의 저축과 노동 공급 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IV. 생계급여의 확대가 이천지출의 승수효과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제IV장에서는 제III장에서 설명한 모형 경제를 이용하여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재량적 이천지출 증가 충격의 승수효과를 분석한다. 제II장에서 소개한 생계급여 관련 정책들은 수급자 1인당 생계급여 수급액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기능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주로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수급 빈곤층에 생계급여 수급권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형 경제를 이용한 생계급여 확대 효과 분석에서는 2017년 한국 경제를 묘사하는 기준경제 대비 수급자 1인당 생계급여 수급액이 증가하는 형태로 생계급여 관련 정책 변화를 반영한다. 그 이유는 본고의 분석에서 사용하는 모형 경제에는 생계급여 비수급 빈곤층이 명시적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한계 때문이다. 다만 본고에서 선택한 생계급여 확대 정책의 반영방식을 통해서도 생계급여 확대가 가계의 예비적 동기의 저축과 노동 공급 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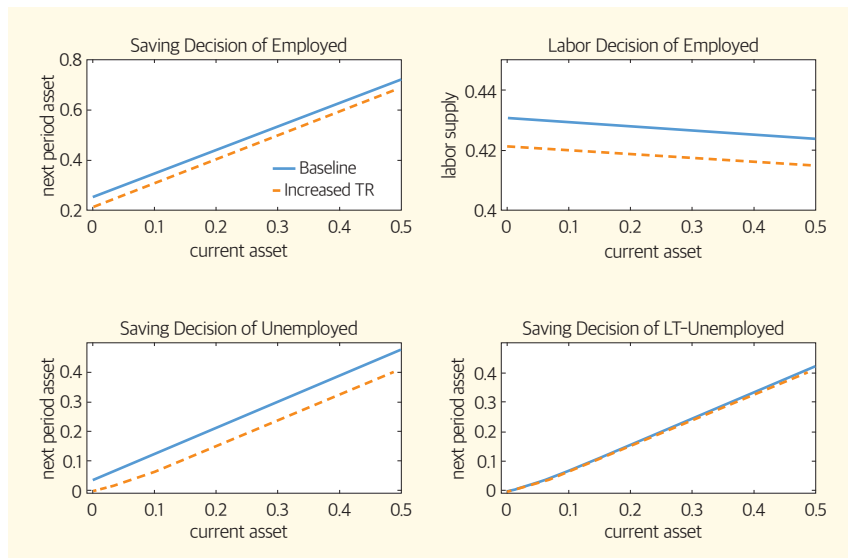
제1절에서는 우선 가상적으로 수급자 1인당 생계급여 수급액을 2017년 한국 경제를 묘사하도록 설정된 기준경제 대비 2배 인상했을 때에 가계의 저축 행태와 한계소비 성향에 나타나는 변화를 분석한다. 제2절에서는 평균적인 생계급여 수급액의 증가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재량적 이천지출의 승수효과 크기가 기준경제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생계급여의 수준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가계가 스스로 자산 축적을 통해 생계급여 수급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의 리스크에 대비할 유인이 감소하기 때문에 동일한 자산 수준에서 저축과 노동 공급의 유인이 감소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생계급여의 증가가 가계의 행태 및 한계소비 성향에 미치는 영향

기준경제 대비 생계급여의 수준이 2배가 되는 경우 노동시장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는 소득 하위 80% 가구들의 예비적 동기의 저축과 노동 공급 유인이 감소하게 된다. [그림 1]은 기준경제의 균제상태와 기준경제 대비 생계급여 수준이 2배인 경제의 균제상태에서의 소득 하위 80% 가구들의 노동시장 상태에 따른 저축과 노동 공급 행태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생계급여의 수준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가계가 스스로 자산 축적을 통해서 생계급여 수급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의 리스크에 대비할 유인이 감소하기 때문에 동일한 자산 수준에서 저축과 노동 공급의 유인이 감소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생계급여의 증가가 소득 하위 80% 가계의 저축과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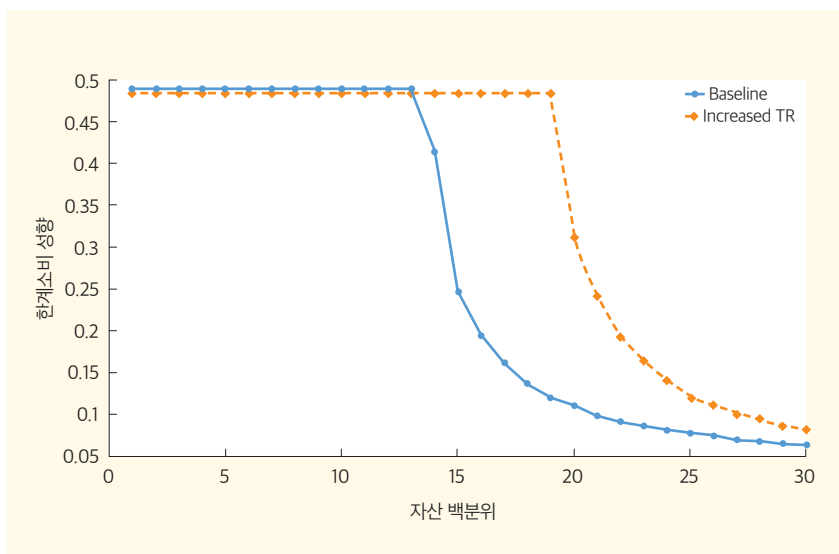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균제상태에서의 평균적인 생계급여 수준의 증가는 소득 하위 80% 가구들의 한계소비 성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직접적인 효과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들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서 한계소비 성향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 간접적인 효과는 앞서 행태 변화에서 확인했듯이 자산 축적의 정도가 감소하면서 한계소비 성향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림 2]와 [그림 3]은

기준경제의 균제상태와 생계급여가 증가한 경제의 균제상태에서 생계급여 수급자들과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해당 그룹 내 자산 분위별 한계소비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생계급여 수급자들의 한계소비 성향을 살펴보면 기준경제에서는 대략 자산 14분위 정도까지, 생계급여가 증가한 경제에서는 자산 22분위까지 한계소비 성향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는 각 경제별로 (중위 노동 생산성을 가진)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차입제약에 상태에 놓인 (자산이 0인) 가계의 비중이 14%, 22%이기 때문이다. 생계급여가 증가한 경제에서 차입제약에 놓인 생계급여 수급자들의 한계소비 성향이 기준경제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앞서 언급한 생계급여 증가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의 직접적인 효과이다. 자산 15분위 이상부터 30분위 정도까지는 생계급여가 증가한 경제에서의 한계소비 성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자산 분포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생계급여 증가의 간접효과이다. 생계급여 증가에 따른 직접효과로 인한 한계소비 성향 감소 정도에 비해서 간접효과로 인한 한계소비 성향 증가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량적인 이천지출 증가의 1차적인 총수요 확대효과가 증가하게 될 개연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생계급여 수급자들의 한계소비 성향을 살펴보면 기준경제에서는 대략 자산 14분위 정도까지, 생계급여가 증가한 경제에서는 자산 22분위까지 한계소비 성향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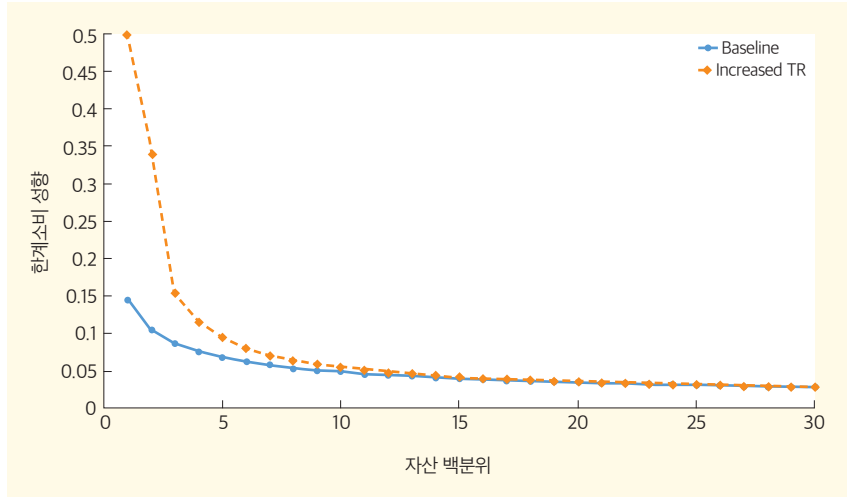
[그림 2] 생계급여의 증가가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한계소비 성향에 미치는 영향



출처: 저자 작성

실업급여 수급가구의 경우에는 생계급여 증가에 따른 직접적인 가처분 소득 증가효과는 없고 자산 축적의 감소로 인한 간접 효과만 나타난다.

[그림 3] 생계급여의 증가가 실업 급여 수급가구의 한계소비 성향에 미치는 영향



출처: 저자 작성

실업급여 수급가구의 경우에는 생계급여 증가에 따른 직접적인 가처분소득 증가효과는 없고 자산 축적의 감소로 인한 간접효과만 나타나기 때문에 재량적인 이전지출의 증가를 실업급여 수급자들에게 타기팅하는 경우의 승수효과 역시 기준경제 대비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생계급여의 증가가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대한 이전지출의 승수효과에 미치는 영향

생계급여 수급자 1인당 생계급여 수급액을 1%만큼 증가시키는 AR(1) 형태의 충격을 이용하여 주요 거시 변수들의 시계별 승수를 계산한다. i 시점에 이전지출 충격이 발생한 뒤 시점 t 에서의 생계급여의 균제상태 대비 변화분을 Δtr_t , 관심 변수 x 의 균제상태 대비 변화분을 Δx_t 라고 했을 때, 이전지출의 관심 변수 x 에 대한 T 분기까지의 누적 승수효과는 식 (14)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frac{\sum_{t=i}^{i+T-1} \Delta x_t}{\sum_{t=i}^{i+T-1} \Delta tr_t} \tag{14}$$

생계급여 충격을 이용한 충격 반응함수 혹은 재정 승수 계산에 있어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은 충격의 지속성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설정해야 되는가이다. 일반적으로 가계 이전지출은 의무 지출의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일단 법령에 의해서 수혜 대상과 수혜 금액이 결정되면 사실상 영구적으로 효과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정부가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특정 가계 이전지출 항목이 재량적으로 추세 대비 증가했을 때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이전지출 증가 충격이 일반적인 경기 변동 주기 안에 대부분 소멸되는 정도의 지속성을 가정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그런 차원에서 생계급여 충격의 지속성을 0.75로 설정하고 분석을 진행한다. 이전지출 충격의 지속성을 0.75로 설정하는 경우 충격 발생 후 1년 뒤에는 충격의 42.2%, 3년 뒤에는 4%가 남게 되어 정책 당국의 재량적인 이전지출의 증가효과가 경기 변동 주기 안에 사실상 소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표 7>은 기준경제와 기준경제 대비 균제상태에서의 생계급여 수준이 2배 높은 경제에서의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재량적인 이전지출 증가 충격의 승수효과를 비교하고 있다. GDP에 대한 시계별 승수효과를 살펴보면 충격 발생 시점의 승수는 기준경제의 0.177에서 0.183으로 증가하고 1년 및 3년 누적 승수는 기준경제의 0.107에서 0.12로, 0.089에서 0.103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항목별로 살펴보면 이전지출 증가의 직접 수혜 대상이 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들의 소비에 대한 승수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평균적인 생계급여 증가로 인한 한계소비 성향의 감소보다 자산 축적의 감소로 인한 한계소비 성향의 증가 폭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생계급여 수급가구와 달리 고용상태에 있는 소득 하위 80% 가구들의 소비에 대한 승수는 기준경제 대비 유의하게 감소한다. 고용상태에 있는 소득 하위 80% 가구들은 직접적인 이전지출 증가 충격에 대한 수혜 대상도 아니고 생계급여 수급상태에 놓이게 될 확률도 낮기 때문에 이 집단에 대한 소비 승수는 주로 이전지출 충격에 대한 실질 이자율의 반응에 의해서 결정된다. 실질 이자율의 반응은 시점 간 대체효과와 함께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이자소득에 영향을 주며 소득효과를 통해서도 소득 하위 80% 가구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준경제와 생계급여 수준이 높은 경제에서 이전지출 충격에 대한 인플

**생계급여 충격을 이용한
충격 반응함수
혹은 재정 승수 계산에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은
충격의 지속성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설정해야
하는가이다.**

평균적인 생계급여 수준이 높은 경제에서는 고용상태에 있는 소득 하위 80% 가계의 예비적 동기의 저축 규모가 줄어들면서 채권으로 이루어진 이들 가계의 자산 규모가 기준 경제 대비 12.8% 감소하게 된다.

레이션의 반응 정도는 유사하기 때문에 실질 이자율의 증가 폭 역시 비슷한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경제에서 실질 이자율 상승에 따른 시점 간 대체효과로 고용상태에 있는 가구의 소비 감소 정도는 유사한 수준이다. 하지만 평균적인 생계급여 수준이 높은 경제에서는 고용상태에 있는 소득 하위 80% 가구의 예비적 동기의 저축 규모가 줄어들면서 채권으로 이루어진 이 가구들의 자산 규모가 기준경제 대비 12.8% 감소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 이자율 증가로 인한 이자소득의 증가 규모가 기준경제 대비 감소하게 되면서 이전지출 충격의 고용상태에 있는 소득 하위 80% 가구의 소비에 대한 승수효과는 감소하게 된다.

소득 하위 80% 가계의 자산 규모 감소에서 기인하는 이전지출 증가 충격에 대한 이자소득 증가분의 감소는 이들의 노동 공급에 대한 승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고용상태에 있는 소득 하위 80% 가구를 중심으로 한 유효 노동 공급의 증가로 인해 충격 발생 1년 이후 시계에서의 투자에 대한 누적 승수 역시 기준경제 대비 증가하게 된다. 고용상태에 있는 소득 하위 80% 가구의 노동 공급의 증가로 인한 총공급의 증가가 수반되기 때문에 기준경제 대비 이전지출 증가 충격의 총수요 확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의 추가적인 증가 폭은 제한적이게 된다.

<표 7> 균제상태에서의 생계급여 수준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대한 이전지출의 승수효과 비교

| 승수계산 시계 | 1분기 | | 1년 누적 | | 3년 누적 | |
|--------------------------|--------|--------|--------|--------|--------|--------|
| | 기준 분석 | 급여 증가 | 기준 분석 | 급여 증가 | 기준 분석 | 급여 증가 |
| GDP | 0.177 | 0.183 | 0.107 | 0.120 | 0.089 | 0.103 |
| 소비 | 0.224 | 0.233 | 0.252 | 0.260 | 0.284 | 0.291 |
| 소비-소득 상위 20% | -0.110 | -0.110 | -0.133 | -0.133 | -0.228 | -0.225 |
| 소비-소득 하위 80% | 0.335 | 0.344 | 0.385 | 0.393 | 0.512 | 0.517 |
| 소비-소득 하위 80% -고용 | -0.003 | -0.028 | 0.003 | -0.021 | 0.021 | -0.001 |
| 소비-소득 하위 80% -실업급여 수급 | 0.018 | 0.012 | 0.016 | 0.011 | 0.016 | 0.012 |

<표 7>의 계속

| 승수계산 시계 | 1분기 | | 1년 누적 | | 3년 누적 | |
|--------------------------|--------|--------|--------|--------|--------|--------|
| | 기준 분석 | 급여 증가 | 기준 분석 | 급여 증가 | 기준 분석 | 급여 증가 |
| 소비-소득 하위 80% -생계급여 수급 | 0.319 | 0.360 | 0.366 | 0.403 | 0.474 | 0.506 |
| 투자 | -0.048 | -0.051 | -0.145 | -0.139 | -0.195 | -0.188 |
| 유효노동 | 0.121 | 0.125 | 0.076 | 0.085 | 0.080 | 0.090 |
| 유효노동-소득상위 20% | 0.064 | 0.060 | 0.066 | 0.064 | 0.092 | 0.089 |
| 유효노동-소득하위 80% | 0.057 | 0.064 | 0.010 | 0.021 | -0.012 | 0.000 |
| 인플레이션 | 0.014 | 0.014 | 0.013 | 0.013 | 0.016 | 0.017 |
| 명목이자율 | 0.020 | 0.021 | 0.019 | 0.020 | 0.023 | 0.025 |
| 소득 상위 20%의 총소득 | 0.065 | 0.071 | -0.258 | -0.215 | -0.394 | -0.336 |
| 소득세 수입 | 0.035 | 0.036 | 0.007 | 0.013 | -0.002 | 0.007 |
| 법인세 수입 | -0.060 | -0.056 | -0.032 | -0.032 | -0.030 | -0.031 |
| Lumpsum tax | 0.000 | 0.000 | 0.525 | 0.521 | 1.014 | 1.009 |
| 총세수입 | -0.014 | -0.009 | 0.512 | 0.515 | 0.995 | 0.999 |

출처: 모형 경제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고용상태에 있는
소득 하위 80% 가구의
노동공급 증가로 인한
총공급의 증가가 수반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추가적인 증가 폭은
제한적이게 된다.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고에서는 2017년 수급자 1인당 생계급여 수급액이 가상적으로 2배가 될 경우를 상정하여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재량적인 이전지출 증가 충격의 승수효과가 기준경제에서의 승수효과에 비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재량적인 이전지출 증가 충격의 승수효과가 기준경제 대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균적인 생계급여 수급액 증가로 인해 수급자들의 한계소비 성향이 감소하게 되는 직접적인 효과보다 예비적 동기의 자산 축적 유인 감소로

본고에서는 2017년 수급자 1인당 생계급여 수급액이 가상적으로 2배가 될 경우를 상정하여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재량적인 이전지출 증가 충격의 승수효과가 기존 경제에서의 승수효과에 비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인해 한계소비 성향이 높아지게 되는 간접효과의 정량적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본고의 분석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가 필요하다. 첫째, 본고에서 제시하는 정책효과 분석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전망하고 있는 생계급여 제도의 확대가 실제로 도입된 후 경제주체들의 자산 분포가 새로운 균형에 수렴할 때까지 장기간의 시계에서 발생하게 될 승수효과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생계급여의 수급 조건이 완화되는 정책이 도입된 직후에는 생계급여 수급자나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기대 가치분소득이 증가하는 직접효과로 인해 이들 가계들의 한계소비 성향이 감소하는 효과가 더 중점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전지출의 승수효과는 오히려 낮아지게 될 개연성이 더 높다.

둘째,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생계급여는 주로 자산 분포 경로를 통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생계급여와 재량적 지출의 승수효과 사이의 관계를 가치분소득의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주요 세입항목들이나 경기 변동에 따라서 가계가 직면하는 한계세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되는 소득세의 누진성과 같은 자동 안정화 장치의 다른 구성 요소에까지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 [KIPF](#)

참고문헌

- 강동익·우진희, 『가계의 이질성을 고려한 이천지출의 승수효과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 기획재정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9.
- 박창귀·송승주, 「기업단위 가격의 경직성 분석: 2012 서베이 자료를 중심으로」, 『BOK 경제연구』, 제2013-16호, 한국은행, 2013.
- 배병호,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을 위한 New BOK-DSGE 모형 구축 결과」, 『조사통계월보』, 5월호, 한국은행 2014, pp. 16~52.
- 보건복지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 2017.
- _____,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019.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위별 자산, 부채, 소득현황,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4/4/index.board.
- 한국은행, 「국민계정」,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98/list.do?menuNo=200454>.
- Janiak, Alexandre and Paulo Santos Monteiro, “Towards a Quantitative Theory of Automatic Stabilizers: The Role of Demographics,”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78, 2016, pp. 35~49.
- McKay, Alisdair, and Ricardo Reis, “The Role of Automatic Stabilizers in the U.S. Business Cycle,” *Econometrica*, 84(1), 2016, pp. 141~194.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활용 및 인식 변화

I. 서론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유무역 환경 속에서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1967년에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에 가입하였다. 1962년에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고 제2차 경제개발 계획이 시작되던 해이다. GATT 가입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GATT의 다자 간 관세인하협상 중 하나인 케네디라운드(Kennedy Round)에도 참여하였다. 당시 우리나라의 관세율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관세장벽 인하에 우리나라가 참여한 이유는, 우리나라 관세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출을 증대시킬 목적 때문이었다.¹⁾

이처럼 우리나라는 다자 간 관세인하협상을 통해 우리나라 교역 증진을 꾀하였고 그 혜택을 지금까지 누리고 있다. 우리나라가 다자 간 교역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 확산될 당시에도 FTA 체결을 서두르지 않았다는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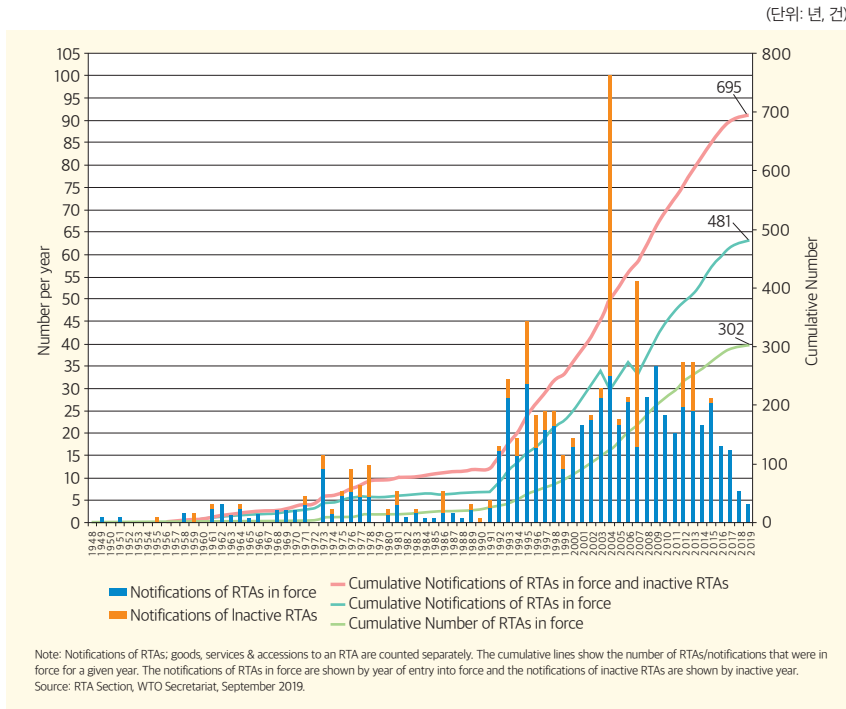
GATT의 마지막 다자 간 관세인하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가 힘겹게 타결에 이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이 크게 증가하였다. FTA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무역협정의 확산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출범 이후에도 이어졌다. 그리고 WTO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지역무역협정의 확산 추세는 누그러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jcheung@kipf.re.kr)

1) 우리나라는 생활수준이 낮고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개발도상국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GATT 제18조에 따라 농산물 등의 수입을 제한하였다.

[그림 1] 지역무역협정 체결 현황(1948~2019년)



출처: WTO,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regfac_e.htm, 검색일자: 2019. 9. 23.

우리나라가 칠레와 FTA를 체결한 2004년 당시 FTA 추진에 소극적이었던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이었다. 우리나라가 뒤늦게 FTA를 추진하면서 내세운 정책은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정책이었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는 15개의 FTA를 체결한 국가가 되었다.

FTA는 기본적으로 관세를 없애고 자유무역을 실행하는 협정이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던 관세 장벽이 FTA로 없어짐에 따라 일부 국내 산업 중에서는 상대국 수출 증대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하고 합법적인 수단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제도 등의 무역구제제도이다. 특히 무역구제제도는 불공정무역(unfair trade)을 시정하는 제도로 인식되어 정치적 부담도 덜하다.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불공정한 무역구조를 개선하겠다고면서 다수의 무역구제제도를 활용하여 수입을 규제하는 것이 전형적인 사례이다.

FTA는 기본적으로 관세를 없애고 자유무역을 실행하는 협정이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던 관세 장벽이 FTA로 없어짐에 따라 일부 국내 산업 중에서는 상대국 수출 증대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FTA 확산으로
교역 당사국 간
교역규모가 증가하면
이에 따라 반덤핑 및
불법보조금 분쟁도
증가하여 통상마찰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교통량이 증가하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도 증가하듯이 FTA 확산으로 교역 당사국 간 교역규모가 증가하면 이에 따라 반덤핑 및 불법보조금 분쟁도 증가하여 통상마찰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각국 정부에 남겨진 마지막 국내 보호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통상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2017년에 57건의 반덤핑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는 2001년(77건) 이후 가장 많은 조사 건수이다.²⁾ 그리고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조치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동시에 부과하였고, 2018년 초에는 대형 가정용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외국산 철강제품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판단으로 수입산 철강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고, 종합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미국의 지식재산권, 기술혁신, 기술개발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국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여 현재까지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다양한 무역구제 조치와 함께 안보위협, 지식재산권 등의 불공정 무역행위 규제 등의 다양한 명분으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FTA 등으로 교역환경이 변화하고 이와 함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무역구제제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이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역구제제도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를 많이 받은 국가 중 하나로 이들 조치에 대응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FTA 등으로 교역환경이 변화하고 이와 함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상황 속에서 무역구제제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우리나라도 이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역구제제도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전 세계적인 무역구제제도의 활용 추세와 주요 국가들의 무역구제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인식 변화의 필요성, WTO 제도의 수용,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무역구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우리나라 무역위원회의 역량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이희성, 「미국 반덤핑 조사 개시 동향 및 미국 기업이 반덤핑 제소시 주장하는 실질적인 피해 (MATERIAL INJURY) 사례」, 한국 무역협회, 2018. 3. p. 2.

II. 무역구제제도 활용 및 논의

무역구제제도는 외국 수입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혹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해당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수입 수량을 제한하는 등의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무역구제를 위한 수입규제 조치는 국가별로 매우 다양하다. 이 중 대표적인 무역구제제도에는 반덤핑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 그리고 세이프가드(Safeguard)제도 등이 있으며 모두 WTO 협정을 통해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1. 무역구제제도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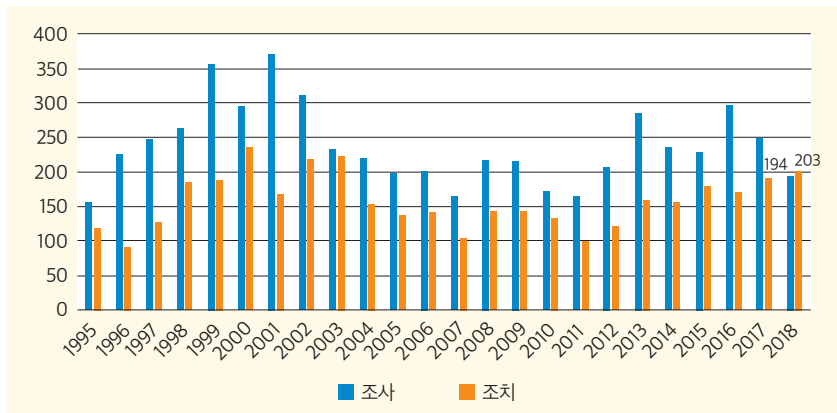
가. 반덤핑관세제도 활용

1) WTO 반덤핑 조사 및 조치

1995년 WTO 출범 이후 WTO에 통보된 반덤핑 조사건수는 2000년 초에 370건을 넘어 정점에 이르렀다가 점차 감소하였지만, 2013년과 2016년에 다시 300건 가까이 증가하였다. 현재 2018년 기준으로 반덤핑 조사건수는 194건이고, 반덤핑 조치가 취해진 건수는 203건이다.

[그림 2] 반덤핑 조사 및 조치 현황

(단위: 건)



출처: WTO(http://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p_e.htm, 검색일자: 2019. 8. 12.)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무역구제제도는 외국 수입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혹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해당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수입 수량을 제한하는 등의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WTO 전체 회원국 수가 164개국인데, 일부 소수의 국가들에 의해 반덤핑 조사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또한 소수 국가들이 반덤핑 조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WTO 설립 이후 반덤핑 조사를 가장 많이 한 국가는 인도이고, 반대로 반덤핑 조사를 가장 많이 받은 국가는 중국이다. 인도는 그동안 총 919건의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였고, 중국은 총 1,327건의 반덤핑 조사를 받았다.

인도 다음으로는 반덤핑 조사를 가장 많이 한 국가로는 미국과 EU 등이 있다. 그동안 반덤핑 조사를 많이 한 상위 10개 국가의 반덤핑 조사건수는 전체 반덤핑 조사건수에서 약 73.8%를 차지하고 있다.

반대로 중국 다음으로 반덤핑 조사를 두번째로 많이 받은 국가는 우리나라로 총 428건의 반덤핑 조사를 받았다. 반덤핑 조사를 많이 받은 상위 10개 국가가 전체 반덤핑 피조사건수의 62.4%를 차지하고 있다. 반덤핑 피조사도 소수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반덤핑 피조사를 많이 받은 상위 10개 국가들 중에서 7개가 아시아 국가라는 특징도 있다.

결과적으로 WTO 전체 회원국 수는 164개국인데, 일부 소수의 국가들에 의해 반덤핑 조사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또한 소수 국가들이 반덤핑 조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표 1> 반덤핑 조사 및 피조사 상위 10개국

(단위: 건, %)

| 반덤핑 조사 | | | 순위 | 반덤핑 피조사 | | |
|--------|-------|-------|----|----------|-------|-------|
| 조사 국가 | 건수 | 비중 | | 조사 대상 국가 | 건수 | 비중 |
| 인도 | 919 | 16.1 | 1 | 중국 | 1,327 | 23.2 |
| 미국 | 694 | 12.1 | 2 | 한국 | 428 | 7.5 |
| EU | 510 | 8.9 | 3 | 대만 | 302 | 5.3 |
| 브라질 | 417 | 7.3 | 4 | 미국 | 290 | 5.1 |
| 아르헨티나 | 368 | 6.4 | 5 | 인도 | 236 | 4.1 |
| 호주 | 344 | 6.0 | 6 | 태국 | 230 | 4.0 |
| 중국 | 274 | 4.8 | 7 | 일본 | 221 | 3.9 |
| 캐나다 | 241 | 4.2 | 8 | 인도네시아 | 211 | 3.7 |
| 남아프리카 | 231 | 4.0 | 9 | 러시아 | 167 | 2.9 |
| 터키 | 227 | 4.0 | 10 | 브라질 | 156 | 2.7 |
| 전체 | 5,725 | 100.0 | | 전체 | 5,725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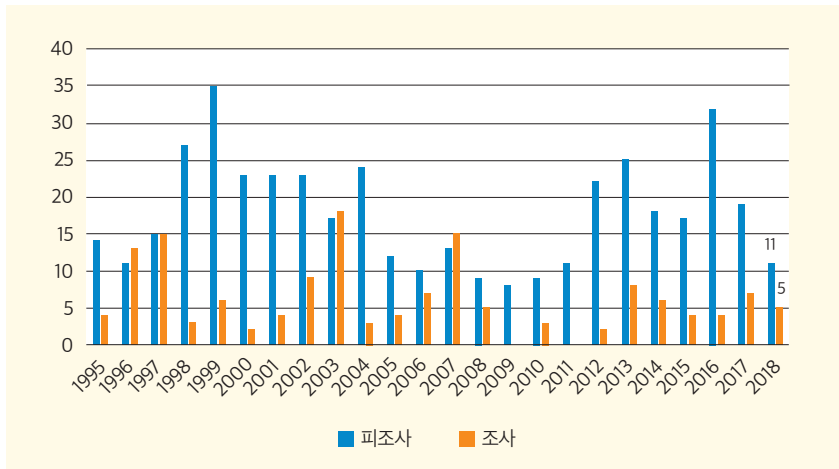
출처: WTO(http://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p_e.htm, 검색일자: 2019. 8. 12.)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우리나라와 반덤핑관세제도

WTO 출범 이후 우리나라가 반덤핑 조사를 받은 건수는 총 428건이고 반대로 우리나라가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 건수는 총 147건이다.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 건수는 조사를 받은 건수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35건의 반덤핑 조사를 받은 이후 점차 감소하다가 전 세계 추세와 유사하게 2012년 이후 다시 증가해서 2016년에는 다시 30건이 넘는 반덤핑 조사를 받았다.

[그림 3] 우리나라의 반덤핑 피조사 및 조사 현황

(단위: 건)



출처: WTO(http://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p_e.htm, 검색일자: 2019. 8. 12.)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우리나라에 반덤핑 조사를 가장 많이 실시한 국가는 인도이고, 그다음으로 미국, 중국, 호주, EU 등의 순서이다. 인도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총 68건의 반덤핑 조사를 실시해서 51건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반덤핑 조사를 가장 많이 실시한 국가는 중국이며, 그다음으로는 일본, 미국,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등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 총 32건의 반덤핑 조사를 실시해 이 중 26건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였다.

우리나라가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 건수는 조사를 받은 건수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1999년에 35건의 반덤핑 조사를 받은 이후 점차 감소하다가 전 세계 추세와 유사하게 2012년 이후 증가해서 2016년에는 다시 30건이 넘는 반덤핑 조사를 받았다.

1995년 WTO 설립 이후
WTO에 보고된
상계관세 조사건수는
총 541건이었다.
같은 기간 WTO에 보고된
반덤핑 조사 건수가
총 5,725건인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표 2> 우리나라 관련 반덤핑 조사 및 조치 실시 상위 10개국

(단위: 건)

| 우리나라가 반덤핑 조사 및 조치를 실시한 국가 | | | 순위 | 우리나라에 대해 반덤핑 조사 및 조치를 실시한 국가 | | |
|------------------------------|-----|----|----|---------------------------------|-----|-----|
| 국가 | 조사 | 조치 | | 국가 | 조사 | 조치 |
| 중국 | 32 | 26 | 1 | 인도 | 68 | 51 |
| 일본 | 21 | 18 | 2 | 미국 | 53 | 34 |
| 미국 | 15 | 9 | 3 | 중국 | 40 | 33 |
| 인도네시아 | 8 | 4 | 4 | 호주 | 36 | 20 |
| 인도 | 7 | 5 | 5 | EU | 31 | 14 |
| 말레이시아 | 7 | 5 | 6 | 브라질 | 23 | 13 |
| 대만 | 7 | 5 | 7 | 인도네시아 | 19 | 6 |
| 태국 | 7 | 4 | 8 | 캐나다 | 18 | 14 |
| 독일 | 4 | 2 | 9 | 아르헨티나 | 16 | 13 |
| 싱가포르 | 4 | 4 | 10 | 남아프리카 | 16 | 16 |
| 기타 | 35 | 14 | | 기타 | 108 | 65 |
| 합계 | 147 | 96 | | 합계 | 428 | 279 |

출처: WTO(http://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p_e.htm, 검색일자: 2019. 8. 12.)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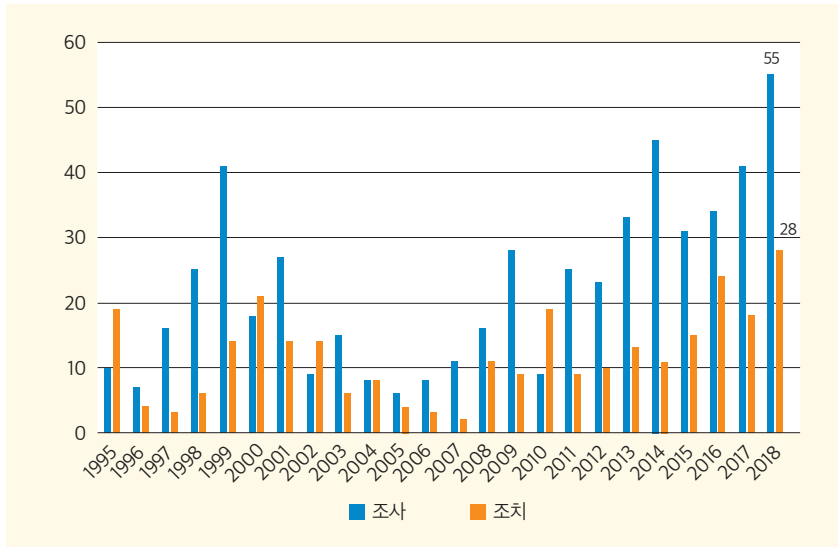
나. 상계관세제도 활용

1) WTO 상계관세 조사 및 조치

1995년 WTO 설립 이후 WTO에 보고된 상계관세 조사건수는 총 541건이었다. 같은 기간 WTO에 보고된 반덤핑 조사 건수가 총 5,725건인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상계관세 조사는 1999년에 41건으로 증가하였다가 2005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인 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고, 2018년에는 55건으로 급증하여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그림 4] 상계관세 조사 및 조치 현황

(단위: 건)



출처: WTO(http://www.wto.org/english/tratop_e/scm_e/scm_e.htm, 검색일자: 2019. 8. 12.)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상계관세 조사를 가장 많이 한 국가는 미국으로 243건의 상계관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전체 상계관세 조사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약 44.9%를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는 EU와 캐나다가 각각 81건과 69건으로 이들 3개 국가(지역)의 상계관세 조사건수가 전체 건수의 약 72.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상위 10개 국가까지 범위를 넓히면 전체 상계관세 조사건수의 약 91.7%를 차지하고 있다. 매우 소수의 국가들만이 상계관세 조사를 활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기업만 조사하는 덤핑 조사와 달리 상계관세 조사에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제공한 해당 국가까지 조사해야 하므로 정교한 상계관세 조사제도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상계관세 조사를 가장 많이 받은 국가는 중국으로 총 160건의 상계관세 조사를 받아 전체 조사건수의 약 29.6%를 차지한다. 중국 다음으로 인도가 86건, 우리나라가 30건,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24건이다. 이들 4개 국가가 전체 조사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10개 국가까지 범위를 넓히면 전체 상계관세 피조사건수의 약 73.9%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만 조사하는 덤핑 조사와 달리 상계관세 조사에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제공한 해당 국가까지 조사해야 해서 정교한 상계관세 조사제도와 전문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상계관세조사를 받은 경우는 30건으로 WTO 회원국 중에 3위로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가 상계관세를 조사하거나 조치한 적은 없다.

<표 3> 상계관세 조사 및 피조사 상위 10개국

(단위: 건, %)

| 상계관세 조사 | | | 순위 | 상계관세 피조사 | | |
|---------|-----|------|----|----------|-----|------|
| 조사 국가 | 건수 | 비중 | | 조사 대상 국가 | 건수 | 비중 |
| 미국 | 243 | 44.9 | 1 | 중국 | 160 | 29.6 |
| EU | 81 | 15.0 | 2 | 인도 | 86 | 15.9 |
| 캐나다 | 69 | 12.8 | 3 | 한국 | 30 | 5.5 |
| 호주 | 31 | 5.7 | 4 | 인도네시아 | 24 | 4.4 |
| 인도 | 13 | 2.4 | 5 | 태국 | 19 | 3.5 |
| 남아프리카 | 13 | 2.4 | 6 | 미국 | 19 | 3.5 |
| 브라질 | 12 | 2.2 | 7 | 터키 | 18 | 3.3 |
| 중국 | 12 | 2.2 | 8 | EU | 15 | 2.8 |
| 이집트 | 12 | 2.2 | 9 | 이탈리아 | 15 | 2.8 |
| 페루 | 10 | 1.8 | 10 | 베트남 | 14 | 2.6 |
| 전체 | 541 | 100 | | 전체 | 541 | 100 |

주: 남아프리카는 아프리카 남부의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나미비아 관세동맹지역을 의미
출처: WTO(http://www.wto.org/english/tratop_e/scm_e/scm_e.htm, 검색일자: 2019. 8. 12.)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우리나라와 상계관세제도

우리나라가 상계관세조사를 받은 경우는 앞서 보았듯이 30건으로 WTO 회원국 중에 3위로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가 상계관세를 조사하거나 조치한 적은 없다. 우리나라가 조사받은 30건 중에서 미국으로부터 18건의 상계관세 조사를 받았고, EU 7건, 캐나다 3건, 일본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각각 1건씩이었다.

<표 4> 우리나라에 상계관세 조사 및 조치를 실시한 국가

(단위: 건)

| 구분 | 상계관세 조사 | 상계관세 조치 |
|-------|---------|---------|
| 미국 | 18 | 10 |
| EU | 7 | 2 |
| 캐나다 | 3 | 1 |
| 일본 | 1 | 1 |
| 남아프리카 | 1 | - |
| 합계 | 30 | 14 |

주: 남아프리카는 아프리카 남부의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나미비아 관세동맹지역을 의미
출처: WTO(http://www.wto.org/english/tratop_e/scm_e/scm_e.htm, 검색일자: 2019. 8. 12.)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 세이프가드제도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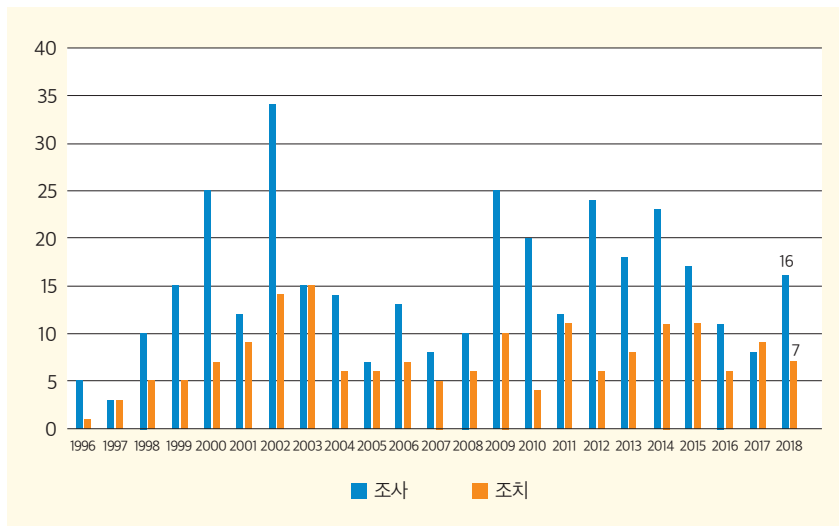
WTO에 보고된 세이프가드 조사건수는 총 347건이고, 2002년에 34건으로 정점을 이루었지만,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제도와 달리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이프가드제도는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제도에 비해 덜 활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해 수출을 제한받은 국가에 대해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는 불공정무역에 의한 국내 산업에 발생한 피해를 막는 것이 목적이지만, 세이프가드제도는 불공정무역이 아닌 수입 급증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막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WTO 설립 이후 세이프가드 조사를 가장 많이 한 국가는 인도로 총 43건이고, 인도네시아, 터키, 칠레 등이 그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세이프가드제도는 덤핑 또는 상계관세제도에 비해 덜 활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해 수출을 제한받은 국가에 대해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림 5] 세이프가드 조사 및 조치 현황

(단위: 건)



출처: WTO(https://www.wto.org/english/tratop_e/safeg_e/safeg_e.htm, 검색일자: 2019. 8. 13.)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수출에 중점을 둔 회원국은 반덤핑 조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반덤핑제도의 개정을 주장하지만, 반대로 외국 수입품 조사를 진행하는 회원국들은 반덤핑 회피 등에 초점을 두고 서로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표 5> 세이프가드 조사 상위 10개국

(단위: 건, %)

| 순위 | 조사 국가 | 건수 | 비중 |
|----|-------|-----|------|
| 1 | 인도 | 43 | 12.4 |
| 2 | 인도네시아 | 29 | 8.4 |
| 3 | 터키 | 25 | 7.2 |
| 4 | 칠레 | 20 | 5.8 |
| 5 | 요르단 | 18 | 5.2 |
| 6 | 이집트 | 13 | 3.7 |
| 7 | 필리핀 | 13 | 3.7 |
| 8 | 우크라이나 | 13 | 3.7 |
| 9 | 미국 | 12 | 3.5 |
| 10 | 체코 | 9 | 2.6 |
| 전체 | | 347 | 100 |

출처: WTO(https://www.wto.org/english/tratop_e/safeg_e/safeg_e.htm, 검색일자: 2019. 8. 13.)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WTO 회원국 의견

무역구제제도를 대하는 WTO 회원국들의 시선은 다양하다. 앞서 무역구제제도 활용 현황에서 보았듯이, 일부 국가들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 이런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들도 있다. 이러한 WTO 회원국들 사이의 다양한 입장 차이로 인해 WTO 반덤핑협정 또는 WTO 보조금협정의 개정 협상은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다수의 WTO 회원국들이 반덤핑 조사제도가 자의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개별 국가별로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출에 중점을 둔 회원국은 반덤핑 조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반덤핑제도의 개정을 주장한다. 반대로 외국 수입품 조사를 진행하는 회원국들은 반덤핑 회피 등에 초점을 두고 서로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Friends of Anti-Dumping Negotiation(FANs)은 반덤핑 조사를 많이 받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15개국³⁾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덤핑 조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반덤핑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반덤핑 조치를 많이 실시한 미국은 현재의 반덤핑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제로잉(Zeroing) 허용, 우회덤핑 금지, 반덤핑 조사 절차의 개선과 절차의 투명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인 인도, 인도네시아 등은 미국, EU 등이 자국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실시하더라도 자국도 자신

3) FANs는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홍콩, 이스라엘, 일본, 한국, 멕시코,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태국, 터키 15개국이다. www.wto.org/english/tratop_e/dda_e/negotiating_groups_e.htm, 검색일자: 2019. 8. 13.

의 의도에 따라 반덤핑제도를 활용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상계관세와 연관되어 있는 WTO보조금협정과 관련하여 미국, EU 등은 불법적인 보조금을 억제하기 위해 협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발도상국 관점에서 중국, 브라질, 인도 등은 보조금협정이 정당한 정부 정책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미국은 자국 통화를 저평가시키는 국가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환율을 통해 발생시킨 보조금(currency subsidy)을 상계관세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환율정책에 대한 보조금 논란은 그동안 회원국 간 큰 입장 차이를 보였던 부분이다. 반덤핑협정은 수출기업의 가격 책정에 대한 평가이지만, 보조금협정은 개별 정부의 법령과 제도 등에 대한 평가로 주권 침해 논란으로 연결될 수 있어 반덤핑 문제에 비해 협상하기가 더 어려운 분야이다.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무역구제제도로 WTO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그리고 긴급수량제한 등이 주로 사용되며, 이 중에서도 반덤핑방지관세가 무역구제제도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III. 무역구제를 위한 수입규제수단 및 직권조사

앞서 보았듯이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무역구제제도로 WTO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그리고 긴급수량제한(세이프가드) 등이 주로 사용되며, 이 중에서도 반덤핑방지관세가 무역구제제도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런 제도들은 WTO 회원국들이 활용하는 대표적인 무역구제제도이고 이 밖에도 국가별로 자국의 이익과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수입규제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1. 무역구제를 위한 수입규제수단

가. 우리나라 수입규제수단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WTO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그리고 긴급수량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국내법에 도입하여 수입규제수단으로 운영하고 있다. 반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 등은 「관세법」에, 긴급수량제한 조치는 관세 부과 및 수량제한 조치를 모두 허용하여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WTO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덤핑방관세, 상계관세, 그리고 긴급수량제한 조치를 국내법에 도입하여 수입규제수단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 또한 특허권, 상표권, 지식재산권 등 일반적인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 제도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국제무역규범 위반에 관한 조사제도와 무역에 관한 제한 등의 특별조치를 운영하고 있다. 국제무역규범 위반에 관한 조사제도는 2004년에 미국의 301조 제도를 참고하여 국내에 도입하였다. 미국의 301조 제도를 참고하여 EU에서는 무역장벽규칙(Trade Barrier Regulation)을, 중국에서는 대외무역장벽조사 규칙을 제정해서 미국의 301조 제도 남용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국제규범위반 조사를 한 적은 없다. 교역 상대국이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할 경우 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무역에 관한 제한 등의 특별조치는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조사를 위한 세부 규정, 조치 내용에 대한 규정이 불충분해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이 제도는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만 취할 수 있고 추가 관세 부과 등의 다른 정책 수단을 사용할 수는 없어 상대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에서도 추가 관세 부과 등의 정책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의 예시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서 그동안 2019년에 조정관세제도를 개선하였다. WTO에서 인정하는 제도였지만 그동안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제도를 「관세법」에 반영한 것이다. GATT 제20조에서는 공중도덕의 보호,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의 보호 등 일반적인 예외를, GATT 제21조에서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제평화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안보 예외에 따른 무역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GATT 제20조 및 제21조 예외 규정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수출입 금지는 가능한 반면 관세 부과 여부는 규정할 수가 없다. 이러한 추가 관세 여부는 기존의 조정관세 규정을 수정해서 보완하였다.

조정관세(「관세법」 제69조)는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국내 산업 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100%까지 올려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조정관세 규정 중에서 제2항의 ‘②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GATT 규정에 준해서 새롭게 ‘② 공중도덕 보호,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및 건강보호, 환경보

전, 유한천연자원 보존 및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수정해서 수입금지 이외에도 추가 관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조정하였다.

그리고 무역구제제도로써 조정관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다양한 관세율 중에서 조정관세가 우선 적용되도록 관세율 우선순위 조정도 함께 이루어졌다. 현재 우리나라 관세율 적용 순위상 1순위에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등이 속해 있으며, 여기에 조정관세(「관세법」 제69조 제2항)도 포함되었다.

우리나라 관세율 적용 순위상 1순위에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등이 속해 있으며, 여기에 조정관세도 포함되었다.

<표 6> 우리나라의 수입규제수단

| 수입규제수단 | 관련법 | 해당 조항 | 행정기관 | 가능 조치 |
|------------------|------------------------------|----------------|-----------|--------------------|
| 덤핑방지관세 | 「관세법」 | 제51조에서 제56조 | 기획재정부 | 관세 부과 |
|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제23조 | | |
| 상계관세 | 「관세법」 | 제57조부터 제62조 | 기획재정부 | 관세 부과 |
|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제24조 | | |
| 긴급수량제한 조치 | 「대외무역법」 | 제39조에서 제41조 | 산업통상자원부 | 수량 제한 |
|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제15조에서 제22조의 6 | | |
|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제도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제4조에서 제14조의 3 | 무역위원회 | 수출입제한 및 금지, 과징금 부과 |
| 국제무역규범 위반 조사제도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제25조의 2에서 제26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 | (구체적 실행 조치 내용 없음) |
|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 「대외무역법」 | 제5조 | 산업통상자원부 | 수출입 제한 및 금지 |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8), p. 123 자료를 이용하여 재작성

나. 주요국의 수입규제수단

1) 미국

미국의 주요 수입규제수단으로는 WTO 협정에 따라 운영되는 반덤핑방지관

**미국의 주요
수입규제수단으로는
WTO 협정에 따라 운영되는
반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수량제한조치, 그리고
특허, 저작권,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수입품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를 규제하는
규정 등이 있다.**

세, 상계관세, 긴급수량제한(세이프가드) 조치, 그리고 특허, 저작권,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수입품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를 규제하는 규정 등이 있다.

그리고 미국은 1962년 무역확장법(Trade Extension Act of 1962)에서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GATT 제21조에서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제평화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안보 예외에 따른 무역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규정은 GATT 제21조에 따른 것이지만 미국은 국가안보 범위에 경제후생 등도 포함시켜 GATT 제21조보다 포괄적으로 국가안보 범위를 정의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규제를 조사하거나 조치를 취한 경우는 드물다. 1962년 법안이 제정된 이후 6건의 수입규제 조치가 취해졌는데 모두 1970~1980년대 석유파동 등으로 석유에 대한 조치였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2017년 4월에 이 조항을 적용해서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였고 2018년에는 자동차에 대한 조사도 시작하였다.

미국은 301조 제도라는 미국 특유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301조 제도는 일반 301조(Regular 301), 슈퍼 301조(Super 301), 스페셜 301조(Special 301)를 통칭한다. 구체적으로 일반 301조는 1988년 무역법 제301조~제309조에 해당하며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보복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슈퍼 301조는 1988년 무역법의 제310조로 불공정무역행위를 정도별로 분류하여 불공정행위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와 관행을 우선협상대상국 관행(Priority Foreign Countries Practices)으로 지정하여 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스페셜 301조는 1988년 종합무역법 중 지식재산권에 관한 특별조항인 제182조를 의미한다. 현재 301조 제도의 대상 범위에는 상품, 서비스, 지식재산권, 상품과 서비스 교역과 관련된 해외직접투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301조 제도는 미국의 자국 법에 근거한 일방적인 조치로 EC에 의해 1998년 WTO에 제소되어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결을 받기도 했다. 당시 미국은 301조 제도 대신 WTO 분쟁해결기관(Dispute Settlement Body)을 통해 조치를 취하기로 했기 때문에, 301조 제도는 2000년 이후부터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2017년 8월 중국의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301조 제도가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미국의 일방적인 301조 적용으로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 밖에 국제수지 위기대응, BHC 수정조항 환율조작국 대응 등이 있다. 국제수지 위기대응(Balance-of-payments authority)은 1974년 무역법에 의해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및 달러가치 급락에 대응한 일시적인 관세 인상 또는 수입제한 등의 무역제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최장 150일간만 제재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미국이 2019년 8월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적용한 법은 1988년 종합무역법이다. 이 법에서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또는 유의미한 대미국 무역흑자 중 한 가지 요건에만 해당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환율조작국과 1년간 협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다는 점이 한계이다. 우리나라도 이 법에 의해 1988년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적이 있다. 이런 한계를 인식하고 구체적인 환율조작국 기준을 제시한 제도가 BHC(Bennet-Hatch-Carper Amendment) 수정조항이다. 이 조항은 2015년 무역원활화 및 집행법(교역촉진법) 제7편의 환율조작(Currency Manipulation)을 부르는 별칭으로 환율을 무역제재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제701조에서 규정한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고,⁴⁾ 문제가 된 사안을 1년 이내에 개선하지 않으면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제재 조치에는 해당국 기업들의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입이 금지되고 해당국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한하며, 미국의 공적 개발금융기관인 해외민간투자공사(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를 활용할 수 없어 미국 기업들의 해당국 투자가 제한된다. 이번 2019년 8월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때 중국이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적용하지 못하고 앞선 1988년 종합무역법을 적용하였다.

미국은 2019년 5월에 자국 통화가치를 미국 달러화 대비 저평가시키는 국가에 대해 통화보조금(currency subsidy)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환율조작국에 대해 무역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2019년 5월에 자국 통화가치를 미국 달러화 대비 저평가시키는 국가에 대해 통화보조금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4) 교역상대국의 환율 조작 여부에 대한 기준은 3가지로, ① 상대국의 대미(對美) 무역흑자(Trade Surplus)가 200억 달러를 상회하는 경우, ② 상대국의 경상흑자(Current Account Surplus)가 자국 GDP의 3%를 상회하는 경우, ③ 지속적이며 일방적으로 상대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이루어진 경우

EU의 무역구제제도도 WTO에서 인정하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를 기본으로 운영되고 있다. 무역구제제도를 개별 회원국이 아닌 EU 공동체 차원에서 EU 집행위원회의 조사 및 EU 이사회의 부과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표 7> 미국의 수입규제수단

| 수입규제수단 | 관련법 | 해당조항 | 행정기관 | 가능조치 | |
|--------------------|-------------------|-------------|---------------------------------|-----------------------------|--|
| 반덤핑관세 | 1930년 관세법 | 제702조 | 상무부(DOC), 국제무역위원회 (USITC) | 관세 부과 | |
| 상계관세 | 1930년 관세법 | 제701조 | 국제무역위원회 (USITC) | 관세 부과 | |
| 세이프가드 | 1974년 통상법 | 제201조 | 국제무역위원회 (USITC) | 관세 부과, 수량 제한 | |
|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제재 | 1962년 무역확장법 | 제232조 | 상무부 (DOC) | 관세 부과 수량 제한 | |
| 301조 제도 | 일반 301조 | 1974년 무역법 | 301조~309조 | 무역대표부 (USTR) | 관세 부과, 수입 제한, 무역협정양허유예, 특혜유예(GSP 등), 무역협정체결 |
| | 슈퍼 301조 | 1974년 무역법 | 제310조 | | |
| | 스페셜 301조 | 1988년 종합무역법 | 제182조 | | |
|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 1930년 관세법 | 제337조 | 무역대표부 (USTR) | 수입중지, 수입금지 | |
| 국제수지 위기대응 | 1974년 무역법 | 제122조 | 대통령 | 최대 15% 관세 인상 (최장 150일 간) | |
| 환율조작국 대응 | 1988년 종합무역법 | 제3004조 | 재무부 (DOT) | - | |
| BHC 수정조항 환율 조작국 대응 | 2015년 무역원활화 및 집행법 | 제701조 | 재무부 (DOT) | 정부조달금지, 해외 민간투자공사 금융 지원 금지 | |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8), p. 11의 자료 등을 이용하여 제작됨

2) EU

EU(European Union)의 무역구제제도도 WTO에서 인정하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를 기본으로 운영되고 있다. EU에서는 무역구제제도를 개별 회원국이 아닌 EU 공동체 차원에서 EU 집행위원회의 조사 및 EU 이사회의 부과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EU에서도 일방적인 보복조치로써 무역장벽 규칙(Trade Barrier Regulation)을 두고 있다. 이 제도는 미국의 제301조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신통상정책수단(New Commercial Policy Instrument)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나, 개정을 통해 현재는 무역장벽규칙(TBR)이란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상품,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 전 분야에서 불법적이거나 협정에 위배되는 통상적 관행이 EC 공동체 산업에 중대한 피해 또는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미국의 301조

제도가 WTO에서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역장벽규칙(TBR) 제도에서는 WTO 분쟁 절차를 선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WTO 협정에 맞는 수입규제 수단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8> EU의 수입규제수단

| 수입규제수단 | 해당 규정 | 행정기관 | 가능 조치 |
|---|---|----------------------------------|--|
| 반덤핑관세 | Regulation(EU) 2016/1036 Regulation(EU) 2017/2321 | 집행위원회의 조사 및 유럽이사회의 부과결정 | 관세 부과 |
| 상계관세 | Regulation(EU) 2017/2321 Regulation(EU) 2016/1038 | | 관세 부과 |
| 세이프가드 조치 | Regulation (EU) 2015/478 (WTO 회원국에 적용) Regulation (EU) 2015/755 (WTO 비회원국에 적용) | | 관세 부과, 수량 제한 |
| 무역장벽규칙 (Trade Barrier Regulation) | Regulation(EU) 2015/1843 | | 관세 인상, 양허 정지 또는 철회, 수량 제한, 기타 과징금 부과 |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8), p. 95의 자료를 이용하여 재작성

3) 중국

중국도 WTO 협정에 의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제재 등의 수입규제제도가 있다.

중국의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은 미국의 301조에 대응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EU의 무역장벽규칙(TBR)에 비하여 간략하게 규정되어 있고, 아직 조사사례도 없다. 대외무역과 투자 분야의 불합리한 무역장벽⁵⁾을 제거하고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부터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자 마련되었다. 중국은 대외무역법을 통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물품의 수입에 대해 수입규제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무역제제조치를 취한 적은 없다.

중국도 WTO 협정에 의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제재 등의 수입규제제도가 있다.

5) 무역장벽이란, ① 동 국가(지역)와 중국이 공동 체결 또는 공동 참가한 경제무역조약 또는 협정을 위반하거나 협정이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무역 영향들이 발생한 경우, 중국 제품 또는 서비스가 동 국가(지역) 시장 또는 제3국(지역)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방해 또는 제한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중국 제품 또는 서비스가 동 국가(지역) 시장 또는 제3국(지역) 시장에서의 경쟁력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또는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동 국가(지역) 또는 제3국(지역)의 제품 또는 서비스가 중국으로의 수출에 방해 또는 제한을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직권조사를 시행하였다.
미국은 2017년에 피해기업의
청원 없이 직권으로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알루미늄 합판에 대해
덤핑 등의 조사를
시작하였다.

<표 9> 중국의 수입규제수단

| 수입규제수단 | 관련 법 | 해당 조항 | 가능 조치 |
|-------------|-------------|-------------------------|--------------------|
| 반덤핑관세 | 2016년 대외무역법 | 제41조, 제42조 | 관세 부과 |
| 상계관세 | 2016년 대외무역법 | 제43조 | 관세 부과 |
| 세이프가드 조치 | 2016년 대외무역법 | 제44조 | 관세 부과, 수량 제한 |
| 대외무역장벽 조사규칙 | 대외무역장벽 조사규칙 | 총 37개 조문 (부령) | 적절한 조치 (구체적 규정 없음) |
| 국가안보 관련 제재 | 2016년 대외무역법 | 제3장 화물 수출입 및 기술수출입 제17조 | (조치 관련 규정 없음) |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8), p. 77의 자료를 이용하여 재작성

2. 무역구제를 위한 직권조사

덤핑, 불법 보조금 등의 불공정무역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자국 정부에 조사를 청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피해기업의 청원 없이도 국가가 직권으로 불공정무역을 조사하는 경우도 있다. WTO의 반덤핑 협정과 보조금협정에서도 덤핑이나 보조금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특정상황에서 당국의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WTO에서도 인정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그동안 직권조사는 잘 사용되지 않았다. 피해기업의 청원 없이 국가가 직접 나설 경우 외교적 마찰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피해기업이 존재하면 그 피해기업이 조사를 신청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직권조사를 시행하였다. 미국은 2017년에 피해기업의 청원 없이 직권으로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알루미늄 합판에 대해 덤핑 등의 조사를 시작하였다. 반덤핑 및 상계관

세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국가에 의한 직권조사는 드문 경우다. 1980~2016년까지 미국에서 시행된 총 1,379건의 반덤핑 조사 중에서 6건만이 직권조사로 시행되었다. 상계관세 등도 마찬가지다. 이들 직권조사 모두 1985년 이전에 이루어졌다. 2017년 2월에 중국산 알루미늄 합판에 대한 반덤핑 직권조사는 1985년 일본산 반도체에 대한 반덤핑 직권조사 이후 32년 만에 처음이다.

<표 10> 미국의 직권조사 현황(1980~2016년)

(단위: 건)

| 구분 | 반덤핑관세 | 상계관세 | 세이프가드 | 국가안보 |
|------|-------|------|-------|------|
| 조사개시 | 1,379 | 631 | 31 | 14 |
| 직권조사 | 6 | 6 | 4 | 3 |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8), p. 80의 자료를 이용하여 재작성

미국의 직권조사에 대해 중국도 미국산 농산물 덤핑 등의 불공정무역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작하였다. 중국도 직권조사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다. 다만, 중국은 직권조사에 대한 세부 시행세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EU도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EU에서 중대한 왜곡(significant distortion)이라는 개념을 통해 중대한 왜곡이 발견되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EU 집행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EU에서 직권조사를 실행한 적은 없다.

미국에서는 현재 직권조사 강화를 위한 「직권조사 무역이행법(Self-Initiation Trade Enforcement Act of 2018)」이 발의되었다.⁶⁾ 이 법안의 목적은 그동안 소극적으로 운영된 직권조사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여 특히 산업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입증 자료 준비 등으로 제소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정부의 직권조사를 통해 구제하자는 것이다.

미국의 직권조사에 대해 중국도 미국산 농산품에 대한 덤핑 등의 불공정무역에 직권조사를 시작하였다. 중국도 직권조사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다. 다만, 중국은 직권조사에 대한 세부 시행세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6) 미국 의회,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senate-bill/2427/all-info>, 검색일자: 2019. 12. 4.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나치게 방어적인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덤핑 조사를 받는 국가와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는 국가의 입장을 함께 고려하여 균형 잡힌 입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전 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조되는 대외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무역구제제도 활용에 대해 몇 가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 등의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우리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반덤핑 및 상계조사를 많이 받은 국가 중 하나이다. 이런 이유로 WTO 논의에서도 반덤핑 및 상계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공세적인 대응에 방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FTA 체결로 인해 국내 산업을 보호할 관세 장벽이 사라지면서 불공정무역에 대처할 방법은 무역구제제도가 유일하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듯이 불공정무역을 해소하기 위해 무역구제제도를 활용하는 정책은 국민적 지지를 받기가 용이해서 향후 보호무역주의와 함께 빈번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에 대해 방어적인 입장을 강조하였지만, 이제는 공세적인 입장에서 균형감을 가지고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반덤핑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만, FTA 확대로 우리나라가 반덤핑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증가하게 되면 이때의 입장은 지금과 정반대로 지금의 피소국 입장에서 주장한 내용이 향후에는 우리나라의 입지를 좁힐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조사당국이 구체적이고 엄격한 요건에 의해 조사가 진행되도록 조사당국의 재량을 제한한다면, 외국 조사당국의 재량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조사당국의 재량도 제한된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중 FTA로 인해 반덤핑 조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나치게 엄격한 조항의 도입은 우리를 옥죄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다른 예로, 우회덤핑 방지(금지) 규정도 우리나라는 피소국 입장에서 보고 있지만, 현재도 FTA 확산으로 동남아국가들로부터 우회덤핑이 발생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나치게 방어적인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덤핑 조사를 받는 국가와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는 국가의 입장을 함께 고려하여 균형 잡힌 입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가 상계관세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입법조치 등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분쟁을 보면 이미 보조금 분쟁은 주요 교역국 간 통상 분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보조금 교부

에서부터 다양한 정부의 간접적인 지원까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반덤핑 조사와 상계관세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최근의 상황을 감안하면 앞으로 반덤핑 조사가 주된 목표인 경우에도 상계관세 조사가 어떤 식으로든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피제소국과 피제소 기업에 대한 물리적 부담을 가중시켜 자국 기업에 유리한 판정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상계관세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덤핑방지관세와 다른 정치적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상계관세제도는 그동안 미국, EU, 캐나다 등 특정 몇몇 국가들만 활용하고 있다. 상계관세는 덤핑방지관세와 달리 수출기업은 물론이고 수출국 정부를 조사해야 하고 수출국 정부의 법령을 판단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WTO 보조금협정에서는 상계관세 조사를 시작할 때 반드시 양자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을 감안해 미국에서는 상계관세제도와 관련해서 매우 상세한 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⁷⁾ 우리나라가 상계관세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적 기반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WTO 보조금협정에서는 정부의 보조금을 통한 기업의 경제적 혜택을 계산할 때 모든 회원국은 이 계산 방식을 국내법령에 구체적으로 그리고 '사전에'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구체적인 계산 방식 등의 규정이 없어서 상계관세 조사를 하더라도 보조금협정에 위반이 된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처음으로 반도체 관련 상계관세를 부과하였지만 이런 구체적인 규정 등이 없어서 WTO에서 패소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향후 상계관세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입법조치도 필요하다.

셋째, WTO에서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활용하지 않은 제도 중에 직권조사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 보았듯이, 여러 국가들이 WTO 규정에 근거하는 다양한 수입규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직권조사와 유사하게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 규정을 활용한 사례는 없다. 또한 부과 주체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권으로 판단하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 반덤핑 관련 조사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활용하지 않으면서 모호한 규정보다는 WTO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권조사 규정을 국내법에 도입

우리나라가 상계관세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입법조치 등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분쟁을 보면 이미 보조금 분쟁은 주요 교역국 간 통상 분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보조금 교부에서부터 다양한 정부의 간접적인 지원까지 확산되고 있다.


⁷⁾ 미국 '상무성 조사실무 지침 (Manual)' 또는 '상무성 정책집행 방침(Policy bulletin)'의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공표되어 있으며 주요 절차를 상세히 나열, 설명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도 미국의 제도를 참고해서 자국법에 도입하고 있다.

무역구제제도를 이전보다 더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화하면서, 그리고 다른 국가들처럼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함께 부과하고 직권조사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나라 무역위원회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해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국, EU, 중국 등은 피해기업의 청원 없이 조사기관의 직권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할 수 있어 불공정 무역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에서도 보듯이, 미국이 중국 산 알루미늄에 직권조사를 개시했을 때 중국도 자국법의 직권조사 권한을 활용하여 맞대응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무역구제제도를 이전보다 더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화하면서, 그리고 다른 국가들처럼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함께 부과하고 직권조사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나라 무역위원회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무역구제를 전담하는 집행기관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역위원회가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덤핑 여부를 판정하고 상무부의 국제무역관리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에서 산업피해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 중에서 무역구제업무는 EU 통상총국(Taxation and Customs Union)이 담당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무역구제제도 관련해서 근무하는 인원만 수백명이다.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이지만 우리나라 무역위원회와 그 차이는 크다.

현재 우리나라 무역위원회에서는 반덤핑과 관련해서 피해기업들이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덤핑 피해를 입어도 관련 자료를 조사해서 수집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는 다른 국가의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앞서 언급하였듯이 미국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직권으로 조사를 강화하려고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이런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무역위원회가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인력과 예산, 그리고 능력 배양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는 단기간에 개선될 수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무역구제를 위해 집행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이희성, 「미국 반덤핑 조사 개시 동향 및 미국 기업이 반덤핑 제소시 주장하는 실질적인 피해(MATERIAL INJURY) 사례」, 한국무역협회, 2018. 3.
- 정재호·노영예·박지우, 『주요국의 반덤핑 직권조사 규정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12.
- 미국 의회,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senate-bill/2427/all-info>, 검색일자: 2019. 12. 4.
- WTO, http://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p_e.htm, 검색일자: 2019. 8. 12.
- _____,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da_e/negotiating_groups_e.htm, 검색일자: 2019. 8. 13.
- _____,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regfac_e.htm, 검색일자: 2019. 9. 23.
- _____,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safeg_e/safeg_e.htm, 검색일자: 2019. 8. 13.
- _____, http://www.wto.org/english/tratop_e/scm_e/scm_e.htm, 검색일자: 2019. 8. 12.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 - 유자격 기회 펀드(QOF) 투자 관련 최종 규정 발표]

- 2020년 1월 3일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유자격 기회 펀드(Qualified Opportunity Fund, 이하 QOF) 지분에 대한 연방소득세 혜택에 관한 세부 시행사항을 다룬 최종 규정 TD9889를 발표함¹⁾
 - 트럼프 정부는 Tax Cuts and Jobs Act의 Section 1400Z-2에서 QOF를 통해 유자격 기회 구역(Qualified Opportunity Zone)에 장기 투자 시 주어지는 연방소득세 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회 발표한 TD9889에서 세부 시행사항을 논의함
- Section 1400Z-2에 규정된 QOF 관련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음
 - 국세법 Section 1231에 규정된 상업용 부동산 및 기타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발생한 이익을 180일 이내에 QOF에 재투자할 경우 소득을 이연시킬 수 있음

- Section 1231에 규정된 수익은 2019년 12월 31일 발생분부터 적용됨²⁾
- QOF의 첫 매도 때까지, 혹은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분에 대해 소득의 이연이 가능함

- 5년 이상 적격 투자를 유지하는 경우 총소득에서 10%, 7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15%, 10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전액을 이연 소득으로 배제할 수 있음

- TD9889에서는 소득금액 결정을 위한 세부 지침 및 QOF 참여 자격 충족 요건 등의 내용을 다룸
<자료 수집 및 정리: 박하얀 연구원>

[아일랜드 - 부가가치세 변경사항에 대한 세부 매뉴얼 발표]

- 2019년 12월 20일 아일랜드 국세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변경사항에 대해 신규 작성한 매뉴얼을 공개하는 eBrief No.220/19를 발표함³⁾
- 역내 부가가치세 면제 공급과 관련한 실질적인 적용 방안이 마련됨⁴⁾

1) United States - Final regulations issued on investing in qualified opportunity funds (14 Jan. 2020), News IBFD
 2) DLA Piper 홈페이지, <https://www.dlapiper.com/ko/korea/insights/publications/2019/12/taxpayers-take-note-first-important-qoz-program-investment-date>, 검색일자: 2020. 1. 31.
 3) Ireland - Value added tax - manuals created or updated (10 Jan. 2020), News IBFD
 4) 아일랜드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revenue.ie/en/tax-professionals/tm/value-added-tax/part06-rates-and-exemptions/intra-community-supply-of-goods/substantive-requirements-for-zero-rating-intra-community-supplies.pdf>, 검색일자: 2020. 1. 21.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ICS(Intra-Community Supply) 요건은 다음과 같음
 - 매입업체는 다른 회원국에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공급업체는 매입업체의 국가코드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등록번호를 보유해야 함
 - 공급업체 및 매입업체의 부가가치세 등록번호를 계산서에 기재해야 함
 - 상품은 다른 회원국으로 발송 또는 운송해야 하며, 공급업체는 EU의 부가가치세 정보교환 시스템인 VIES에 신고해야 함
- 상품이 다른 회원국으로 발송 또는 운송되었다는 것과 관련한 증빙자료들을 구비하고 있어야 함
 - 공급업체는 각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다음 표 A분류의 서류 2종이나, A분류에서 1종 및 B분류에서 1종으로 2개 서류를 보유해야 함

| A분류 | B분류 |
|-------------------------|---------------------------------|
| ① 서명된 도로운송장 (CMR) 문서/노트 | ① 상품 운송과 관련된 보험 정책 |
| ② 선하증권 | ② 발송 및 운송에 대한 지불을 입증하는 은행 서류 |
| ③ 항공화물 송장 | ③ 상품의 목적지 도착을 확인하는 공증인 등의 공식 문서 |
| ④ 상품 운송업체의 송장 | ④ 상품의 현지 보관을 확인하는 도착국 창고의 영수증 |

- 매입업체가 상품의 운송을 담당하는 경우 공급업체는 매입업체가 상품을 운송했거나 상

품이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술서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진술서에는 ① 진술서 발행일, ② 매입업체명 및 주소, ③ 상품의 수량 및 특성, ④ 상품 도착 날짜 및 장소가 포함되어야 함

■ 콜오프 재고(Call-Off Stock)의 부가가치세 처리 관련 매뉴얼이 작성됨⁵⁾

- 콜오프 재고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작동함
 - 공급업체와 구매예정업체의 사전 계약에 따라 한 회원국에서 다른 회원국으로 상품이 발송되며, 운송 시 상품 구매예정업체의 부가가치세 등록 정보가 공급업체에 고지됨
 - 상품은 발송받은 회원국에 보관되어 구매업체의 필요에 따라 수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품의 소유권은 회원국에 도착한 시점보다 늦게 구매자에게 이전될 수도 있음
- 공급업체의 고정사업장이 상품 도착국에 없고, 구매업체가 즉시 혹은 12개월 이내에 상품을 인수할 경우 콜오프 재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단순화 조치가 적용됨
 - 공급업체는 상품 도착국에 별도의 부가가치세 등록을 할 필요가 없음

■ 연쇄거래(Chain Transaction)와 관련한 지침이 마련됨⁶⁾

5) 아일랜드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revenue.ie/en/tax-professionals/tdm/value-added-tax/part03-taxable-transactions-goods-ica-services/call-off-stock-arrangements/vat-treatment-of-call-off-stock-arrangements.pdf>, 검색일자: 2019. 1. 20.
 6) 아일랜드 국세청, <https://www.revenue.ie/en/tax-professionals/tdm/value-added-tax/part03-taxable-transactions-goods-ica-services/transfer-of-business/transfer-of-business.pdf>, 검색일자: 2020. 1. 20.



- 하나의 물품이 EU 내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는 일련의 다중 거래망을 통해 전달되는 연쇄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는 결과적으로 최초 공급국가와 최종 소비국 사이에서 이루어짐⁷⁾
- 연쇄거래에서 상품의 운송은 중개업체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때 중개업체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음
 - 중개업체는 상품 운송국의 부가가치세 등록번호를 발급받아 최초 공급업체에 전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상품은 중개업체가 운송하는 상품이 아닌 중개업체에 공급되는 상품으로 간주하게 됨
 -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은 상기한 '역내 부가세 면제 공급'에 제시된 조건과 동일함
 - 중개업체는 상품의 역내 운송을 담당하는 업체임과 동시에 물품을 운송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보관해야 함
 - 중개업체는 ① 계약서, ② 지불방식, ③ 기타 입증 가능 문서, ④ 계약건의 모든 상황을 고려한 경제적 현황과 같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됨
 - 상품운송 증명에는 ① 주문서, ② 운송명세

- 서, ③ 공급업체 송장, ④ 자금이체증명서, ⑤ 창고 영수증 사본, ⑥ 운송수단 세부사항(차량등록번호, 항공편 번호, 선박 항해 세부사항 등)이 포함됨

<자료 수집 및 정리: 박하얀 연구원>

[그리스 - 부동산 판매 및 임대 관련 준비금의 과세 처리 규정 발표]

- 2019년 12월 31일 그리스 공공수익국은 부동산의 판매 및 임대 준비금의 과세 처리에 관한 circular E.2002를 발표함⁸⁾
- 자산 매각회사와 임대회사 사이에 lease-back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그리스 소득세법에 따라 임대회사에 부동산 사업을 매각하고 발생하는 이익을 매각회사의 소득에서 공제함
 - lease-back은 자산의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자산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거래로, 자산 판매 직후 임대계약 세부사항을 결정함⁹⁾
 - 현재 사용 중인 고가의 고정 자산을 가진 업체가 투자를 위해 현금이 필요한 경우 활용하는 거래 방식임
 -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건에 대한

7) PwC, <https://www.pwc.com/sk/en/tax-services/value-added-tax/chain-transactions-and-vat.html>,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9-5호 재인용

8) Greece - Tax treatment of sale and leaseback reserve in case of business reorganizations and subleasing of immovable property (06 Jan. 2020), News IBFD

9) Investopedia 홈페이지, <https://www.investopedia.com/terms/l/leaseback.asp>, 검색일자: 2020. 2. 5.

판매 및 임대 준비금에 적용되며,¹⁰⁾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준비금이 별도의 면세 계정으로 추가되어야 함

- 임차인 변경, 임대계약 종료, 혹은 임대회사의 영업 종료 시에는 면세 혜택이 해지됨
- 개발법에 따라 사업이 개편되는 경우나 임대회사가 부동산을 다른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준비금 면세 혜택을 유지함

<자료 수집 및 정리: 박하얀 연구원>

[스위스 - 상호합의절차 이행을 위한 규정 초안 발표]

- 2019년 12월 13일 스위스 연방위원회는 국제협약 및 이중과세방지협약(DTA)에 따른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s: MAPs) 이행을 위한 규정 초안과 관련한 협의를 시작함¹¹⁾
- 스위스의 상호합의절차는 1951년 발효 후 개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최근 관련 사례의 증가와 함께 BEPS Action 14에 따른 OECD 기준 준수를 위해 규정 마련이 필요해짐¹²⁾

- 개정안에는 신청 요건,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 등의 내용을 포함할 계획임

- 정부 기관과 납세자의 의사소통 규칙을 포함한 MAPs 신청절차를 마련함
- 담당 기관의 지원은 일반적으로 무료이나 납세자가 합리적으로 피할 수 있었던 분쟁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상환해야 함
- 이외에도 ① 자격 기준, ② 전담기관 설치, ③ 원천징수세 환급절차 및 신청 마감일 등의 내용이 포함됨

- 관련 법 미비로 스위스 형사법(VStG)에 근거하여 시행해 왔으나, 내용이 모호하여 분쟁이 되어 온 원천징수 구제 및 처벌 절차에 관한 공식 규정 또한 마련할 예정임¹³⁾

<자료 수집 및 정리: 박하얀 연구원>

[이탈리아 - 2020년도 예산법 시행]

- 이탈리아 의회는 2019년 12월 24일 2020년도 예산 법안을 통과시켰고, 위 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법인세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¹⁴⁾
- 2018년 12월 말에 폐지된 자기자본비용 공제제도(Allowance for Corporate Equity)를 재개하

10) Greece Tax Agency Issues Circular on Taxation of Reserves from Lease-Back Transactions, Bloomberg Law: Tax (Jan 7, 2020)
 11) Switzerland Seeks Comments on Draft Regulation to Implement MAP Rules Under DTAs, Bloomberg Tax: Law (December 17, 2019)
 12) Switzerland Proposes Updates to MAP, Withholding Relief Rules, Tax Notes International, (December 23, 2019)
 13) Switzerland Proposes Updates to MAP, Withholding Relief Rules, Tax Notes International, (December 23, 2019)
 14) News IBFD, Italy - Budget Law for 2020 - details of corporate income tax measures, 2020. 1. 15.;EY, Global Tax Alert - Italy approves 2020 Budget Law, 2020. 1. 9., <https://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italy-approves-2020-budget-law>, 접속일자: 2020. 2. 5.



- 여 2019년 사업연도분부터 다시 적용함
- 자기자본비용 공제율은 1.3%로, 과세표준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순 자기자본 증가분의 1.3%의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함¹⁵⁾
- 영업용 자산이 아닌 비유동자산의 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납부한 지방세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되, 공제율을 기존 40%에서 50%(2019년 사업연도), 60%(2020년, 2021년 사업연도)로 상향 조정함
- 이탈리아에 본사 또는 고정사업장을 둔 기업이 이탈리아 내 신규 유형자산 또는 특정 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
 - 일반 유형자산의 경우, 연간 구매가액(최대 200만유로¹⁶⁾의 6%에 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
 - 첨단기술사업 투자의 경우, 투자액을 기준으로 250만유로¹⁷⁾까지는 그 금액의 40%, 250만유로 이상 1천만유로¹⁸⁾까지는 그 금액의 20%를 세액에서 공제함
 - 1천만유로 이상의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음
 - 소프트웨어 관련 투자의 경우 투자액 70만유로¹⁹⁾를 상한으로 하여 투자액의 15%를 세액

에서 공제함

- R&D 관련 세액공제제도를 재정비함
 - 기본 R&D 활동: 위 R&D 비용(최대 300만유로²⁰⁾의 12%를 세액에서 공제하며, 기초 학문 연구, 산업 관련 연구, 실험 활동 등을 포함함
 - 기술 혁신 활동 및 디자인 활동: R&D 비용(최대 150만유로²¹⁾의 6%를 세액에서 공제함

■ 2020년부터 디지털서비스세를 시행함²²⁾

- 전 세계 매출 7억 5천만유로²³⁾ 이상, 이탈리아 국내 매출 550만유로²⁴⁾ 이상의 법정 요건에 따른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당해 기업의 이탈리아 매출액의 3%를 디지털서비스세로 납부해야 함
- 다음 내용의 디지털 서비스를 과세 대상으로 함
 - ① 디지털 인터페이스 사용자를 타깃으로 하여 당해 인터페이스에 게재되는 온라인 광고
 - ② 사용자 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거나 사용자 간 상호작용을 통하여 직접 재화/용역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다면 플랫폼(multi-sided digital interface)
 - ③ 사용자로부터 수집된 데이터 및 디지털 인터페이스 사용으로 발생한 데이터의 전송

15) 이탈리아 국세청, <https://www.agenziaentrate.gov.it/portale/web/english/nse/invest-in-italy/allowance-for-corporate-equity-ace->, 검색일자: 2020. 2. 5.

16) 2020. 2. 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6억원임

17) 2020. 2. 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2억원임

18) 2020. 2. 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1억원임

19) 2020. 2. 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억원임

20) 2020. 2. 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9억원임

21) 2020. 2. 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9억원임

22) News IBFD, Italy - Budget Law for 2020 - details of digital services tax, 2020. 1. 9.

23) 2020. 2. 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832억원임

24) 2020. 2. 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2억원임

■ 소득세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²⁵⁾

- 2020년부터 특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 또는 직군에 대하여 적용되는 대체세율(substitute tax) 20%를 폐지함
 - 단, 종전 납세의무자 중 직전 과세연도 매출이 6만 5천유로²⁶⁾를 넘지 않으며 총인건비(labour cost)가 2만유로²⁷⁾ 이하인 자들은 15%의 대체세율을 적용받는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농장 또는 농지 보유 관련 소득의 50%만을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함

■ 2020년에 예정된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2021년으로 연기함²⁸⁾

- 2019년도 예산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율은 2020년 1월 1일부터는 25.2%로, 2021년 1월 1일부터는 26.5%로 인상될 예정이었음²⁹⁾
 -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세율은 2020년 1월 1일부터 10%에서 13%로 인상될 예정이었음
- 그러나 본 2020년 예산법에 따르면, 일반 부가세율은 내년인 2021년 1월 1일부터 22%에서

25%로, 2022년 1월 1일부터는 26.5%로 인상될 예정임

-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세율은 2021년 1월 1일부터 10%에서 12%로 인상될 예정임

■ 플라스틱·설탕세를 도입함³⁰⁾

- 플라스틱세로, 기업이 수입·생산하는 1회용 플라스틱 용기 1kg당 0.45유로³¹⁾를 부과함
- 설탕세로, 당 함유 음료 및 농도 1.2% 이하의 알콜 음료 1ℓ당 0.1유로(희석 제품의 경우 1ℓ당 0.25유로³²⁾를 부과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도연 변호사>

[독일 - EU 차원 금융거래세 도입안 발표]

■ 독일 재무장관은 2019년 12월 9일 독일 등 EU 회원국 10개국에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 FTT)를 도입하기 위한 원안을 마련함³³⁾

- 위 10개국은 독일을 포함하여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임
- EU 차원의 금융거래세 도입 여부는 2011년부터

25) News IBFD, Italy - Budget Law for 2020 - details of individual income tax measures 2020. 1. 13.

26) 2020. 2. 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500만원임

27) 2020. 2. 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600만원임

28) News IBFD, Italy - Budget Law for 2020 - details of value added tax measures, 2020. 1. 14.

29) News IBFD, Italy - Budget Law for 2019 - details, 2019. 1. 19.

30) News IBFD, Italy - Budget Law for 2020 - details of miscellaneous indirect taxes, 2020. 1. 14.

31) 2020. 2. 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00원임

32) 2020. 2. 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00원임

33) 독일 재무부, Gesetzesvorschlag zur Finanztransaktionsteuer, 2019. 12. 10.;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Schlaglichter/Steuererechtigkeit/2019-12-10-Gesetzesvorschlag-Finanztransaktionsteuer.html>, 검색일자: 2020. 1. 22.



논의되었으나 그간 담보상태에 놓여 있었고, 금
번 독일의 도입안은 프랑스의 금융거래세제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음³⁴⁾

- 독일 예상 세수는 약 15억유로로, 독일은 이를 기초연금(basic pension)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 밝힘

■ 본 도입안은 기업가치가 10억유로를 넘는 대형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경우 그 매입가액의 0.2%를 과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2011년 기존 EU안은 EU 내 발생하는 모든 주식 및 채권 거래에 0.1%, 파생상품 거래에 0.01%를 과세하는 것이었음³⁵⁾
- 독일에서는 약 145개 기업이, 참가 EU 회원국에서는 500개의 기업그룹 주식이 대상 범위로 포함됨³⁶⁾
- 2021년도 시행을 목표로 함
- 펀드 등 주식 이외의 금융자산을 과세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참여국들의 재량으로 함

■ 한편,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은 새로운 금융거래세 제안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금융거래세 협의그룹에서 탈퇴할 수 있음을 시사함³⁷⁾

-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은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새로운 제안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밝히며, 투기를 방지하고 실물 경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초의 취지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힘

- 제시된 안은 투기자들을 방치하면서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 또한 새로운 수정안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오스트리아는 10개국으로 구성된 금융거래세 협의그룹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도연 변호사>

[독일 - 강제적 보고규정 법률 관보 게재]

■ 독일은 2019년 12월 30일 세무조력자 등에게 조세 거래를 보고하도록 하는 강제적 보고 관련 법률을 관보에 게재함³⁸⁾

- 위 법률은 EU DAC6 지침의 국내 이행 법률임
- 독일 재무부는 2019년 9월 26일 법률안을 제출하였고 독일 연방의회는 같은 해 12월 23일 위 법안을 통과시켰음

34)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이미 금융거래세(FTT)를 도입하였고, 영국은 인지세(stamp duty)의 형태로 주식거래를 과세하고 있음

35) Bloomberg Law News, Germany's EU Financial Transaction Tax Plan Gets Mixed Reviews, 2019. 12. 11.

36) Bloomberg Law News, Scholz Submits Draft Law on Financial-Transaction Tax: SZ, 2019. 12. 10.

37) Federal Ministry, Republic of Austria, Finance, <https://www.bmf.gv.at/en/press/press-releases/2020/january-2020/Finance-Minister-B%C3%BCmel-attends-first-ECOFIN-and-Eurogroup-meetings-.html>, 검색일자: 2020. 1. 30.; Bloomberg,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01-21/eu-financial-tax-faces-new-trouble-as-austria-threatens-to-quit>, 검색일자: 2020. 1. 30.

38) News IBFD, Germany - Bill on implementation of EU Directive on cross-border tax arrangements (DAC6) - gazetted, 2010. 1. 6.

■ 본 법률은 전반적으로 EU DAC6 지침의 내용을 따르고 있음³⁹⁾

- 보고 대상 거래의 범위는 역외 거래에 한정하고, 중개인을 보고의무자로 정하고 있음
 - 국내 거래도 포함시킬지 여부는 여전히 논의 중에 있으며, 간접세는 포함되지 않음
- 보고 대상 거래의 특징(hallmark) 또한 EU DAC6 지침의 내용과 유사함
 - 다만,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역외 거래가 발생한 경우, 보고 대상 거래 금액의 액수는 전액 임(공제가 되는 범위 내로 제한되지 않음)
- 첫 보고의무는 2020년 6월 30일 이후 발생하고, 보고의무를 불이행한 중개인의 경우 최대 2만 5천유로⁴⁰⁾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도연 변호사>

[영국 - EU 조세분쟁해결절차 입법]

■ 영국 과세관청은 2020년 1월 20일 EU 조세분쟁 해결절차 도입 계획을 공개하고, 이후 관련 법령을 고시함⁴¹⁾

- 영국 과세관청은 2020년 1월 중 EU지침을 채택하는 중재절차 관련 법령을 공지하고 2018년 1월 이후 소득과 자본과 관련된 분쟁에 적용할

예정임

- 2017년 10월 공개된 EU 중재지침은 회원국들에 이를 입법 등의 절차로 도입할 것을 강제하고 있으며, 2019 재정법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법령제정을 과세관청에 위임하고 있음

- 이후 2020년 1월 22일 관련 법령(The Double Taxation Dispute Resolution (EU) Regulations 2020)을 관보에 고시함

■ 새로운 법령은 납세자의 중재 이용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를 가지고 있음

- 새로운 규정은 기존 연합중재협약(the Union Arbitration Convention)을 따르고 있는 영국 법령이나 다른 회원국과의 협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적인 수단임
- 기존에 비해 보다 폭넓은 항목을 중재 대상으로 함
 - 기존 이전가격과 고정사업장에 한정되는 것을 조세조약의 모든 해석과 적용을 대상으로 함
- 납세자가 중재를 거부하는 회원국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부가 중재체계의 절차 준수를 감시하도록 하며 중소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절차를 통해 부담을 줄이고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정훈 회계사>

39) PwC, EU Direct Tax News alert - German draft proposal implementing DAC6, 2019. 9. 27. (<https://www.pwc.com/gx/en/tax/newsletters/eu-direct-tax-newsalerts/eudtg/german-draft-proposal-implementing-dac6.pdf>, 검색일자: 2020. 1. 22.)

40) 2020. 1. 31.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270만원임

41) GOV.UK,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legislating-the-double-taxation-dispute-resolution-eu-regulations-2020/legislating-the-double-taxation-dispute-resolution-eu-regulations-2020#policy-objective>, 검색일자: 2020. 1. 30.



[룩셈부르크 - EU 조세분쟁해결절차 입법]

■ 룩셈부르크 의회는 2019년 12월 20일 EU 조세분쟁해결절차 도입을 위한 법안을 의결함⁴²⁾

- 이 법안은 2017년 10월 공개된 EU 중재지침을 국내법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조약 등의 다양한 해석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함
- 법안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대상은 2018년 1월 이후 소득과 자본과 관련된 분쟁에 적용됨

■ 법안은 제한된 기간 내에 룩셈부르크와 EU 회원국 간에 분쟁해결의 강제력을 부여하고 있음⁴³⁾

- 대상은 EU 내로 한정되어 적용되며, 조약 등의 해석과 적용에 모든 소득과 자본을 포함함
- 납세자는 분쟁 대상이 되는 처분이 도달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룩셈부르크와 관련 체약국의 과세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절차를 개시할 수 있음
- 룩셈부르크 과세관청은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조정절차의 인용 또는 거부를 통지해야 함
 - 납세자는 모든 체약국의 과세관청이 조정절차를 거부하는 경우 자문위원회의(Advisory Panel) 설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룩셈부르크

과세관청이 거부하는 경우 불복절차를 제기할 수 있음

- 모든 체약국의 과세관청이 신청을 인용하게 되면, 2년 내에 상호합의가 이루어져야 함
 - 1년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3년까지 소요될 수 있음
-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룩셈부르크 과세관청에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훈 회계사>

[노르웨이 - 디지털서비스세 조건부 실행계획 공개]

■ 노르웨이 재무장관은 2019년 1월 중 여러 매체를 통해 디지털과세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 2021년부터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힘⁴⁴⁾

- 노르웨이 재무장관은 2020년 중 OECD의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는 경우, 2021년에 국내법을 통해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하여 과세하겠다고 밝힘
 -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밝히지 않았지만, 노르웨이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세안을 설계할 수 있으나 다른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국가를 참고할 것이라고 함

42) Journal officiel du Grand-Duché de Luxembourg, <http://legilux.public.lu/eli/etat/leg/loi/2019/12/20/a890/jo>, 검색일자: 2020. 1. 30.

43) Ernst & Young, <https://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luxembourg-transposes-eu-tax-dispute-resolution-directive-into-domestic-law>, 접속일자: 2020. 1. 30.

44) Klassekampen, <https://www.klassekampen.no/article/20200113/ARTICLE/200119987>, 검색일자: 2020. 1. 30.; Bloomberg Tax,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XDBB2DPG000000?bna_news_filter=daily-tax-report-international&jsession=BNA%25200000016f9f8fd383a56f9f9fd0e0001#cite, 검색일자: 2020. 1. 30. 등

- 이러한 과세의 근거로 디지털 기업들의 성장세가 갈수록 더 커지고 강해지고 있어 계속적인 과세지연을 방관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훈 회계사>

별 기준으로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음

- 그러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등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연결그룹 차원에서 계산함
- 2022년 4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새로운 법안이 적용됨

[일본 - 2020년도 세법 개정안 세목별 내용 발표]

- 일본 정부는 2019년 12월 12일 발표한 2020 세법 개정안을 세목별로 구체화함⁴⁵⁾
 - 제안된 개정안은 2020년 3월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⁴⁶⁾
 - 세목별로 구체화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법인세법

- 기업의 연결납세 규정을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으로 개정함⁴⁷⁾
 - 내국법인은 100% 일본 내 연결 기업 간 손익을 통산할 수 있음
 - 연결모회사 및 자회사는 개별적으로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며, 전자신고를 통해 이루어짐
 - 기존의 연결납세 방법과는 다르게,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특정 소득과 세액공제 항목들을 개

- 혁신적인 스타트업 회사에 투자하는 회사에 소득 공제를 적용함⁴⁸⁾

-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스타트업 회사에 지분을 투자하는 경우 취득금액의 25%를 소득 공제함
- 투자금액이 최소 1억엔(외국기업의 경우 5억엔) 이상인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됨
-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회사가 이후 해당 주식을 양도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하는 등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야 함(단, 해당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음)

- 5G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투자 사업에 대하여 조세 혜택을 적용함⁴⁹⁾

- 정보통신확산법안(법안명은 변경될 수 있음)에 따라 5G네트워크를 도입하려는 사업자가 서비스 도입을 위한 설비 및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45) Japan - 2020 tax reform proposal outlines - further details (03 Jan. 2020), News IBFD

46) PWC, Announced 2020 Japan Tax Reform Proposals, 2020. 1. 17.

47) EY, 2020 Japan tax reform outline, 2019. 12. 18.

48) EY, 2020 Japan tax reform outline, 2019. 12. 18.

49) EY, 2020 Japan tax reform outline, 2019. 12. 18.



에 적용함

- 설비 및 시설 취득금액의 30% 특별상각율을 선택하거나 취득금액의 15%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단, 세액공제액은 과세연도 법인세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해당 혜택은 법안 발효일로부터 2022년 3월 31일 까지 적용됨

■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 R&D 투자세액공제 적용 금지 조건을 강화함⁵⁰⁾

- 기존 대기업의 국내 투자금액이 해당 회계연도 감가상각비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투자금액이 감가상각비 총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함
- 이는 대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임⁵¹⁾

■ 기타 법인세법상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자본금이 10조엔을 초과하는 기업이 지출한 접대 목적의 식음료 비용은 접대비 공제가 배제됨
- 지역 사업 시설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 규정이 2년 연장됨

2) 국제조세

■ 종속기업의 배당 등을 통하여 지배기업의 주식양

도차익을 줄이는 조세회피 방안을 방지하는 법안을 마련함⁵²⁾

- 종속기업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배기업이 주식 장부가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배당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주식 장부가에서 차감하도록 함
- 종속기업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지배력은 직·간접적으로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함
- 단, 아래의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이 배제됨
 - 종속기업이 내국기업이고 해당 기업의 설립 시점부터 지배력을 획득한 시점까지 90% 이상의 지분을 내국기업이 보유한 경우
 - 배당 총액이 종속기업의 이익잉여금 순증가분보다 적은 경우
 - 지배력을 획득한 이후 10년 이후에 배당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 배당금액이 2천만엔 이하인 경우

■ 기타 국제조세와 관련한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 CFC 소득 계산 시 Usance 이자소득은 대상 소득에서 제외함
- 이자비용 공제제한제도에서 일본 기업이 해외 법인의 일본 고정사업장에 지급한 이자비용을 적격이자비용에서 제외함

50) EY, 2020 Japan tax reform outline, 2019. 12. 18.

51) Japan - 2020 tax reform proposal outlines - further details (03 Jan. 2020), News IBFD

52) EY, 2020 Japan tax reform outline, 2019. 12. 18.

3) 개인소득세 등

■ 개인소득세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⁵³⁾

- 결혼하지 않은(이혼가정이 아닌) 편부모가정의 연간 소득이 500만엔 이하인 경우 이혼가정 및 사별가정에 적용되는 특별 소득공제를 동일하게 적용함
- 개인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퇴직을 위한 저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본개인저축계좌(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 프로그램을 5년 연장하여 2037년까지 적용함

■ 전산장부유지법안(Electronic Books Maintenance Act)을 개정함

- 전산데이터로 보존해야 하는 인보이스 및 영수증에 ① 발행자는 데이터의 타임스탬프를 부착해야 하며, ② 발행 시 영수증 수령인이 데이터를 마음대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을 사용해야 함

■ 소비세 신고기한을 연장함

- 법인세 신고서 기한이 연장되는 기업이 최종 소비세 신고서 기한연장 통지서를 제출하는 경우, 최종 소비세 신고서 기한이 1개월 연장됨
- 해당 통지서는 과세연도의 마지막 날에 제출된

경우 해당 연도 및 그 이후부터 적용됨

- 해당 규정은 2021년 3월 31일이 과세연도의 마지막 날이 되는 연도 이후부터 적용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다운 회계사>

[중국 - 소득세법 사회복지 기부금 공제 규정 도입]

■ 중국 재무부 및 국세청은 2019년 12월 31일 개인 소득세법상 사회복지 기부금 공제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는 99호 공고를 발표함⁵⁴⁾

■ 교육 및 가난해소 지원을 하는 사회복지단체 및 공공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은 개인소득세 법상 기부금을 과세소득의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음⁵⁵⁾

- 일정 기부금은 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액 공제받을 수 있음
- 개인의 종합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자산양도 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이 공제 대상 소득에 해당됨

■ 기부 형태에 따라 공제 대상 기부금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함

- 금전으로 제공한 기부금: 해당 자산의 실제 금

5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19-12호, 2019.

54) China (People's Rep.) - Rules on deduction of public welfare donations updated (09 Jan. 2020), News IBFD

55) KPMG, <https://home.kpmg/cn/en/home/insights/2020/01/china-tax-alert-03.html>, 검색일자: 2020. 1. 21.



전적 가치

- 주식 및 부동산으로 제공한 기부금: 취득시점의 원가
- 기타 비금전적 기부자산: 시장가치

■ 공제 대상 소득의 유형별로 기부금 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음

- 거주자의 경우 연간 종합소득,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자산양도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의 30%까지 공제 가능함
- 비거주자의 경우 기부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월의 과세소득 30% 이내의 범위에서 공제 가능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서 공제 가능함

■ 거주자의 종합소득 유형별로 기부금 공제 시점은 아래와 같음

-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시점

- 인적용역소득, 로열티소득: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시점
- 종합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기타 소득: 개별 소득의 세무 처분에 따름

■ 납부한 기부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개인은 소득세

- 신고서와 함께 기부내역 상세를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해당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해야 함
-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개인은 원천징수 대리인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함
- 개인은 기부내역을 증명하기 위해 계좌증명서를 원천징수 대리인에게 기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원천징수 대리인은 해당 내역을 과세관청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다운 회계사>

주요국의 재정동향



EU

■ EU 집행위, 2019 채무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표 (2020. 1. 24.)¹⁾

※ 3년마다 발간되는 재정 지속가능성 보고서(Fiscal Sustainability Report, EU 회원국의 단·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변화를 분석)의 매년 중간 업데이트. 이번 호에서는 2019년 집행위원회의 가을 경제 전망과 장기 경제 및 재정 전망을 다룬 *Ageing Report 2018*(특히 고령화 비용)을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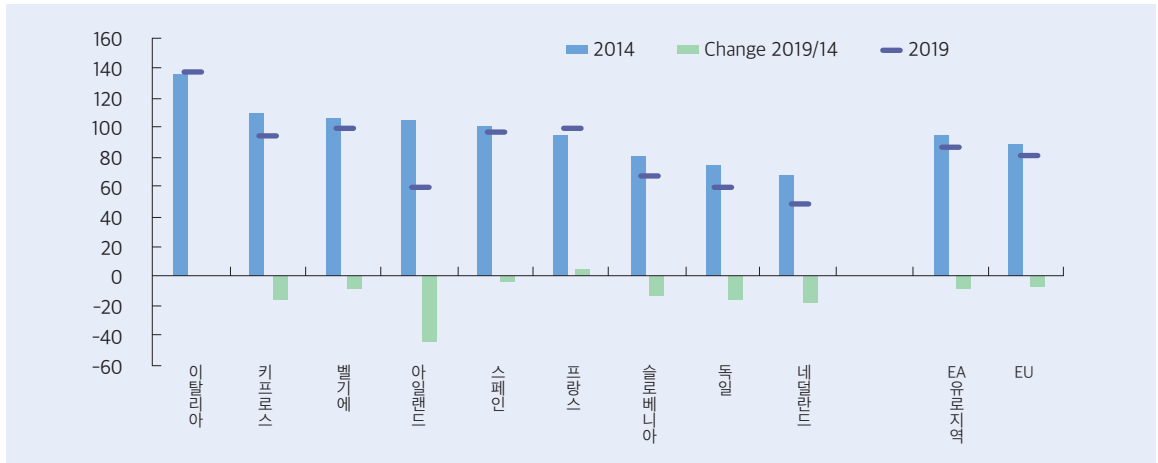
- 현재 낮아진 금리를 반영하여 재정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분석
 - 작년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금리는 더 낮아졌

으며,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금리와 성장률 차이($r-g$) 값이 마이너스(-)를 보임

- 유리한 금융 상황이지만(저금리), 고령화 · 기후 변화와 같은 충격에 따른 채무 증가 및 금리 인상 초래 등의 부정적 충격을 대비하여 채무 모니터링이 중요
 - 저금리 이점을 이용하여 2015~2019년 동안 대부분의 회원국들에서 채무 비율을 낮췄으나, 높은 채무 수준의 국가들은 향후에도 채무 증가 전망(이탈리아, 프랑스)
- 5년 후 유로지역의 채무 감소 가능성이 높으며, 구조적 재정수지²⁾ 개선으로 2030년까지 EU 및 유로지역의 채무 수준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

[그림 1] GDP 대비 정부채무 - 2014년과 2019년 차이

(단위: GDP 대비 %)



출처: European Commission(2019), *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19*, Graph 1.1.

1) European Commission, *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19*, 2020. 1. 24.

https://ec.europa.eu/info/publications/debt-sustainability-monitor-2019_en

2) 재정수지에서 경기 순환 효과를 제거하고, 일회적이고 일시적인 세입·세출 항목의 효과를 제거함으로써 정부의 재량적 정책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재정지표



- 2030년 EU 및 유로지역의 채무는 각각 70%, 75%로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2019년 EU 및 유로지역의 GDP 대비 채무는 각각 80.6%, 86.4%)

● EU 전반적인 단기³⁾ 재정리스크는 낮은 수준이

며, 일부 국가들의 경우 취약성이 있음

- 거시 재정 불균형⁴⁾ (키프로스), 공공 재정 상태 저조(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헝가리)
- 2020년 차입 가능성 높음(이탈리아, 크로아티아), 차입 가능성 증가(루마니아)

<표 1> EU 회원국의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표

| 국가 | Overall SHORT-TERM risk category | Overall MEDIUM-TERM risk category | S1 indicator - overall risk category | Debt sustainability analysis - overall risk category | S2 indicator - overall risk category | Overall LONG-TERM risk category |
|-------|----------------------------------|-----------------------------------|--------------------------------------|--|--------------------------------------|---------------------------------|
| 벨기에 | LOW | HIGH | HIGH | HIGH | MEDIUM | HIGH |
| 불가리아 | LOW | LOW | LOW | LOW | LOW | LOW |
| 체코 | LOW | LOW | LOW | LOW | MEDIUM | MEDIUM |
| 덴마크 | LOW | LOW | LOW | LOW | LOW | LOW |
| 독일 | LOW | LOW | LOW | LOW | MEDIUM (LOW) | MEDIUM (LOW) |
| 에스토니아 | LOW | LOW | LOW | LOW | LOW | LOW |
| 아일랜드 | LOW | LOW | LOW | LOW | MEDIUM | MEDIUM |
| 스페인 | LOW | HIGH | HIGH | HIGH | LOW (MEDIUM) | MEDIUM (HIGH) |
| 프랑스 | LOW | HIGH | HIGH | HIGH | LOW | MEDIUM |
| 크로아티아 | LOW | LOW (MEDIUM) | LOW (MEDIUM) | LOW (MEDIUM) | LOW | LOW (MEDIUM) |
| 이탈리아 | LOW | HIGH | HIGH | HIGH | MEDIUM | HIGH |
| 키프로스 | LOW (HIGH) | LOW (MEDIUM) | LOW | LOW (MEDIUM) | LOW | LOW (MEDIUM) |
| 라트비아 | LOW | LOW | LOW | LOW | LOW | LOW |
| 리투아니아 | LOW | LOW | LOW | LOW | LOW | LOW |
| 룩셈부르크 | LOW | LOW | LOW | LOW | HIGH | HIGH |
| 헝가리 | LOW | LOW (HIGH) | LOW (HIGH) | LOW (HIGH) | MEDIUM | MEDIUM (HIGH) |
| 몰타 | LOW | LOW | LOW | LOW | MEDIUM | MEDIUM |
| 네덜란드 | LOW | LOW | LOW | LOW | MEDIUM | MEDIUM |
| 오스트리아 | LOW | LOW | LOW | LOW | MEDIUM | MEDIUM |
| 폴란드 | LOW | LOW | LOW | LOW | LOW (MEDIUM) | LOW (MEDIUM) |
| 포르투갈 | LOW | HIGH | MEDIUM (HIGH) | HIGH | LOW | MEDIUM |
| 루마니아 | LOW | HIGH (MEDIUM) | HIGH (MEDIUM) | HIGH (MEDIUM) | HIGH (MEDIUM) | HIGH (MEDIUM) |
| 슬로베니아 | LOW | LOW (MEDIUM) | LOW (MEDIUM) | LOW | MEDIUM | MEDIUM |
| 슬로바키아 | LOW | LOW | LOW | LOW | MEDIUM | MEDIUM |
| 핀란드 | LOW | MEDIUM (LOW) | MEDIUM (LOW) | MEDIUM (LOW) | MEDIUM | MEDIUM |
| 스웨덴 | LOW | LOW | LOW | LOW | LOW | LOW |
| 영국 | LOW | HIGH | MEDIUM | HIGH | MEDIUM | HIGH |

주: 괄호 안은 2018년 재정지속가능성 보고서(FSR 2018) 평가 수치
출처: European Commission(2019), *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19*, Table. 1.

3)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18*와 마찬가지로 단기 재정리스크는 S0지표를 기준으로 측정. S0지표는 단기 예상되는 잠재 재정 압력(fiscal stress)을 측정 및 구조 관련 변수로 측정
4) 경상수지 적자, 높은 수준의 대외순부채, 가계 저축률 마이너스, 가계 및 비금융 기업 단기 채무의 높은 수준 등이 거시 재정 측면의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 일부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의 중기⁵⁾ 재정리스크가 높음

- 8개 국가(벨기에,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루마니아, 영국)에서 높은 채무 수준*과 약한 재정 상황으로 인해 중기 재정리스크가 높은 상황**

* 벨기에, 이탈리아, 포르투갈
 ** 핀란드의 중기 재정리스크는 중간 수준

- 루마니아는 GDP 대비 채무의 증가 속도가 특히 빠른 상황이며, 이탈리아는 전망기간 내내 성장률보다 높은 금리로 인해 GDP 대비 채무 수준이 증가
- 영국과 포르투갈의 S1 지표는 중간 수준이나 부정적 충격에 대한 높은 민감도로 인하여 중기 재정리스크가 높은 국가로 분류

● 고령화가 장기⁶⁾ 재정리스크를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로 작용

- 5개 국가(벨기에,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루마니아, 영국)의 장기 재정리스크 높음

- 고령화 비용의 증가(벨기에, 영국), 약한 재정 상황(이탈리아), 고령화 비용의 빠른 증가세(룩셈부르크), 고령화 비용·약한 재정 상태·채무 지속가능성 분석(DSA) 낮은 평가에 모두 해당(루마니아)

- 13개 국가들의 장기 재정리스크는 중간 수준

일 것으로 예상되며, 고령화 비용의 증가 전망이 큰 영향으로 작용



IMF

■ IMF, World Economic Outlook(WEO) Update 발표(2020. 1. 20.)⁷⁾

- IMF는 ‘잠정적인 안정화, 부진한 회복?(Tentative Stabilization, Sluggish Recovery?)’이라는 제목으로 2020년 1월 WEO update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전망) 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9년 10월 WEO 경제성장 전망(이하 지난 전망)보다 0.1%p 하락한 2.9%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됨
 - 2020년과 2021년의 세계 경제성장률은 3.3%, 3.4%로 예측되며, 이는 지난 전망 대비 각각 0.1%p, 0.2%p 하향 조정된 수치임
 - 성장 전망 하향 조정의 주요 원인으로 ① 몇몇 신흥 시장*에서의 놀라울 정도로 부정적인 경제활동에 따른 영향과 ② 사회 불안(social unrest)의 증가에 따른 영향을 지적하였음

*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2019년 10월 예측 당시에 비해 내수 부진에 따른 국가 특정적 충격이 있었음을 언급. 특히 인도의 경우 2020년 성장 전망치를 7.0%에서 5.8%로 석 달 만에 1.2%p를 하향 조정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고 있음

5) DSA(debt sustainability analysis) 분석(향후 10년 동안의 채무 수준과 추이)과 S1 지표(고령화로 인한 추가 비용 조달 등을 포함해 중기적으로(15년) GDP 대비 채무 비율 60%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구조적 기초수지 조정 수준)를 활용하여 분석

6) 장기(무한 기간) 채무 비율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구조적 기초수지 조정 수준을 측정할 S2지표를 기초로 함

7) IMF, “Tentative Stabilization, Sluggish Recovery?”, World Economic Outlook, 2020. 1. 20.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0/01/20/weo-update-january2020>



- 반면,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① 제조업과 세계 교역이 저점을 통과(bottom out)하고 있다는 잠정적인 신호, ②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광범위한 확산, ③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호의적인 미중 무역 협상 소식, ④ 노딜브렉시트에 대한 두려움 감소 등을 꼽았으나 아직 글로벌 거시 경제데이터상 전환점이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음

● (국가별 전망: 선진국 그룹) 2020년 선진국 그룹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전망보다 0.1%p 낮은 1.6%, 2021년에는 지난 전망과 동일한 1.6%로 안정적일 것으로 예측됨

- (미국) 2019년 성장률은 2.3%로 추산. 2020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보다 0.1%p 하향 조정된 2.0% 성장, 2021년은 지난 전망과 동일하게 1.7% 성장할 것으로 예측

- ① 중립적인 재정기조로의 회귀와 ② 추가적인 재정 확장을 통한 지원의 축소 예상을 반영

- (유로지역) 2019년 1.2% 성장에서 조금씩 상승하여 2020년은 1.3%, 2021년은 1.4%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지난 전망과 비교하여 2020년 성장률은 0.1%p 하향 조정된 수치이며, 2021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과 동일

- 외수(external demand)의 개선으로 견고한 성장을 예상하나, 2019년에도 제조업이 위축된 상태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독일과 예상보다 강한 내수 및 수출 감소를 겪은 스페인의 영향을 반영하여 지난 전망에 비

해 하향 조정

- (영국) 지난 전망과 동일하게 2020년 1.4%, 2021년 1.5%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단, 해당 전망은 영국이 EU로부터 질서정연하게 빠져나간 후, 새로운 경제관계로 점진적으로 이행한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진 전망이다

- (일본) 2020년은 지난 전망보다 0.2%p 상향 조정된 0.7%, 2021년은 지난 전망과 동일한 0.5%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이번 상향 조정 전망은 일본 정부의 10월 소비세율 인상 대응 조치에서 야기된 강건한 민간 수요, 견고한 자본 지출과 2019년 12월에 있었던 경기 부양책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반영

● (국가별 전망: 신흥 시장 그룹) 선진국 그룹에 비해 성장 전망치를 더 큰 폭으로 하향 조정. 지난 전망 대비 각각 0.2%p 하향 조정하여 2020년 4.4%, 2021년 4.6%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신흥 시장 경제의 스트레스와 경기침체로부터의 불안정한 회복, 진행 중인 중국의 구조적인 성장 둔화(slow down)를 반영

- (중국) 2019년 성장률은 6.1%로 추산되며, 2020년 6.0%, 2021년 5.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 미국과의 “1단계(Phase One)” 무역 거래의 일환으로 과거 관세 일부를 점진적으로 철폐(rollback)하고 추가 관세 인상 중단으로 인해 단기적인 약세가 완화될 것으로 예

- 상되는 점을 반영하여 2020년의 경우 성장 예측치를 지난 전망 대비 0.2%p 상향 조정
- 그러나 국내 금융 규제 강화와 더불어 더 광범위한 미-중 간 미해결 분쟁은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인도) 2020년 5.8%, 2021년 6.5%로 지난 전망 대비 각각 1.2%p, 0.9%p만큼 큰 폭으로 하향 조정. 비은행 금융 부문의 스트레스와 신성장 성장의 감소로 인해 예상보다 내수가 더 크게 둔화된 점을 반영
 - (위험)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한 위험은 여전히 하방으로 더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지난 전망에 비해서는 그 정도가 줄어들었음
 - 여전히 회복력을 보이고 있는 소비지출, 개선된 기업 지출, 미국과의 “1단계(Phase One)” 무역 거래의 일환으로 과거 관세 일부를 점진적 철폐(rollback)하고 추가 관세 인상 중단, 주요 신흥 시장에서의 완화된 통화정책 등이 현재 예상보다 강한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요인으로 꼽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방 위험은 두드러지며, 주요 위험 원인으로는 ① 미국-이란 충돌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 ② 미국과 주요 교역국 간 관세 갈등, ③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 등을 지적하였음
 - (정책 권고) 규범에 근거한 무역 시스템, WTO 항소기구에 대한 교착상태 신속한 해결,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높이지 않으면서 의견 불일치 해결, 지식재산권 및 기술 이전 관련 문제 해결, 온실가스 배출 억제, 글로벌 금융 안전망 보장 등

다자간 긴밀한 정책적 협력이 요구됨

- (선진국)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는 연구, 직업 훈련 및 물적 인프라를 포함한 생산성 성장을 높이기 위한 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음
 - 민간 수요가 매우 약한 지역을 제외하고, 부채가 많은 국가는 다음 침체와 추가적인 지출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선진국 다수의 장기 이자율이 낮은 상태로 유지(일부의 경우 음수(-))되면서 성장 하락에 대처할 수 있는 통화정책의 여지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
 - 재정정책의 여지가 있으면서 아직 과도하게 확장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필요에 따라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재정 부양책에 더 의존할 수 있음(단, 부채를 지속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활용의 여지가 적음)
- (신흥 시장) 신뢰 회복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정책 조정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부채가 많은 국가는 보조금 타깃팅 개선, 수익 기반 확대, 더 강력한 준법감시를 통한 부채 정리(consolidation)*를 목표로 해야 함
 - * 단, 경제활동의 급격한 둔화를 피하기 위한 속도 측정(calibrating its pace) 필요
 - 비교적 안전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경제 활동이 잠재력에 비해 약화된 국가의 경우에는 최근의 인플레이션 하락을 활용(특히 실질 이자율이 여전히 높은 경우)하여 추가적인 통화정책을 통한 경제활동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신흥 시장 국가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하게 공유되어야 할 목표는 건강과 교육에 대한 지출을 통해 인적 자본을 증가시킴과 동시

에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에 고용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임

<표 2> 세계 경제 전망

(단위: %, %p)

| 구분 | 실적치 | | 전망치 | | 10월 전망과 차이 ¹⁾ | |
|--|------|------|------|------|--------------------------|------|
| | 2018 | 2019 | 2020 | 2021 | 2020 | 2021 |
| World Output | 3.6 | 2.9 | 3.3 | 3.4 | -0.1 | -0.2 |
| Advanced Economies | 2.2 | 1.7 | 1.6 | 1.6 | -0.1 | 0.0 |
| United States | 2.9 | 2.3 | 2.0 | 1.7 | -0.1 | 0.0 |
| Euro Area | 1.9 | 1.2 | 1.3 | 1.4 | -0.1 | 0.0 |
| Germany | 1.5 | 0.5 | 1.1 | 1.4 | -0.1 | 0.0 |
| France | 1.7 | 1.3 | 1.3 | 1.3 | 0.0 | 0.0 |
| Italy | 0.8 | 0.2 | 0.5 | 0.7 | 0.0 | -0.1 |
| Spain | 2.4 | 2.0 | 1.6 | 1.6 | -0.2 | -0.1 |
| Japan | 0.3 | 1.0 | 0.7 | 0.5 | 0.2 | 0.0 |
| United Kingdom | 1.3 | 1.3 | 1.4 | 1.5 | 0.0 | 0.0 |
| Canada | 1.9 | 1.5 | 1.8 | 1.8 | 0.0 | 0.0 |
| Other Advanced Economies ²⁾ | 2.6 | 1.5 | 1.9 | 2.4 | -0.1 | 0.1 |
|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 4.5 | 3.7 | 4.4 | 4.6 | -0.2 | -0.2 |
| Emerging and Developing Asia | 6.4 | 5.6 | 5.8 | 5.9 | -0.2 | -0.3 |
| China | 6.6 | 6.1 | 6.0 | 5.8 | 0.2 | -0.1 |
| India ³⁾ | 6.8 | 4.8 | 5.8 | 6.5 | -1.2 | -0.9 |
| ASEAN-5 ⁴⁾ | 5.2 | 4.7 | 4.8 | 5.1 | -0.1 | -0.1 |
| Emerging and Developing Europe | 3.1 | 1.8 | 2.6 | 2.5 | 0.1 | 0.0 |
| Russia | 2.3 | 1.1 | 1.9 | 2.0 | 0.0 | 0.0 |
|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 1.1 | 0.1 | 1.6 | 2.3 | -0.2 | -0.1 |
| Brazil | 1.3 | 1.2 | 2.2 | 2.3 | 0.2 | -0.1 |
| Mexico | 2.1 | 0.0 | 1.0 | 1.6 | -0.3 | -0.3 |
|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 1.9 | 0.8 | 2.8 | 3.2 | -0.1 | 0.0 |
| Saudi Arabia | 2.4 | 0.2 | 1.9 | 2.2 | -0.3 | 0.0 |
| Sub-Saharan Africa | 3.2 | 3.3 | 3.5 | 3.5 | -0.1 | -0.2 |
| Nigeria | 1.9 | 2.3 | 2.5 | 2.5 | 0.0 | 0.0 |

| | | | | | | |
|--|------|-------|------|------|------|------|
| South Africa | 0.8 | 0.4 | 0.8 | 1.0 | -0.3 | -0.4 |
| Memorandum | | | | | | |
| Low-Income Developing Countries | 5.0 | 5.0 | 5.1 | 5.1 | 0.0 | -0.1 |
| World Growth Based on Market Exchange Rates | 3.0 | 2.4 | 2.7 | 2.8 | 0.0 | 0.0 |
| World Trade Volume (goods and services) ⁵⁾ | 3.7 | 1.0 | 2.9 | 3.7 | -0.3 | -0.1 |
| Advanced Economies | 3.2 | 1.3 | 2.2 | 3.1 | -0.4 | -0.1 |
|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 4.6 | 0.4 | 4.2 | 4.7 | 0.0 | 0.0 |
| Commodity Prices (U.S. dollars) | | | | | | |
| Oil ⁶⁾ | 29.4 | -11.3 | -4.3 | -4.7 | 1.9 | -0.1 |
| Nonfuel | 1.6 | 0.9 | 1.7 | 0.6 | 0.0 | -0.7 |
| Consumer Prices | | | | | | |
| Advanced Economies | 2.0 | 1.4 | 1.7 | 1.9 | -0.1 | 0.1 |
|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⁷⁾ | 4.8 | 5.1 | 4.6 | 4.5 | -0.2 | 0.0 |

주: 1. 실질실희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은 2019. 10. 14.~2019. 11. 11.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된 것으로 간주

1)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9 전망치와의 차이

2) G7국가들(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과 유로지역 국가들 제외

3) 인도의 실적/전망치 데이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2011년 이후 GDP는 2011-2012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시장가격 기준 GDP임

4)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5) 수출과 수입 생산물의 산술 평균

6) 영국 브렌트(Brent), 두바이(Dubai), 미 서부텍사스의 중질유(Intermediate crude oil)의 단순평균가격. 2019년 원유의 평균가격은 배럴당 60.62달러, 2019년 11월 12일 현재 선물시장 기준으로 가정한 가격은 2020년 58.03달러, 2021년 55.31달러임

7) 베네수엘라 제외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uary 2020, Table 1



OECD

■ 2019년 3사분기 고용률 발표(2020. 1. 20.)⁸⁾

- 2019년 3사분기 고용률(15-64세)은 OECD 지역이 68.9%로 전분기 대비 0.2%p 상승하였고, 유로지역은 67.9%로 전분기와 동일한 수치 기록
 - 에스토니아(75.7%), 라트비아(72.7%), 포르투갈(70.8%)의 고용률은 0.5%p 이상씩 상승하였고, 프랑스(65.2%), 룩셈부르크(67.9), 슬로베니아(71.5%)는 0.3%p 이상씩 하락

- 칠레(62.7%), 덴마크(75.1%), 일본(77.9%), 노르웨이(75.7%), 폴란드(68.4%), 미국(71.5%)의 고용률은 0.3%p 이상씩 상승한 반면, 아이슬랜드는 전분기 대비 1.7%p 하락한 82.7%를 기록
- OECD 지역의 여성 고용률은 61.7%, 남성 고용률은 76.2%로 모두 전분기 대비 0.2%p씩 상승
 - 여성과 남성 간 고용률 격차는 14.5%p로 전년 동기 대비 0.5%p 좁혀졌고, 특히 일본, 한국, 멕시코에서 보다 빠르게 그 격차가 좁혀지고 있음

8) OECD, <http://www.oecd.org/sdd/labour-stats/employment-situation-oecd-third-quarter-2019.htm>



<표 3> OECD 회원국의 고용률(15~64세, 계절조정)

(단위: %)

|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8 | | | 2019 | | |
|---------|------|------|------|------|------|------|------|------|------|------|
| | | | | | Q2 | Q3 | Q4 | Q1 | Q2 | Q3 |
| OECD 전체 | 66.3 | 66.3 | 67.7 | 68.4 | 68.4 | 68.5 | 68.6 | 68.7 | 68.7 | 68.9 |
| G-7 | 69.1 | 69.1 | 70.6 | 71.3 | 71.3 | 71.4 | 71.6 | 71.7 | 71.8 | 72.0 |
| 유럽연합 | 65.6 | 65.6 | 67.6 | 68.6 | 68.5 | 68.7 | 68.8 | 69.0 | 69.1 | 69.3 |
| 유로지역 | 64.5 | 64.5 | 66.3 | 67.3 | 67.2 | 67.4 | 67.6 | 67.8 | 67.9 | 67.9 |
| 호주 | 72.2 | 72.2 | 73.0 | 73.8 | 73.6 | 73.7 | 74.0 | 74.1 | 74.2 | 74.4 |
| 캐나다 | 72.5 | 72.5 | 73.4 | 73.8 | 73.7 | 73.8 | 74.1 | 74.2 | 74.5 | 74.5 |
| 프랑스 | 63.8 | 63.8 | 64.7 | 65.4 | 65.2 | 65.4 | 65.6 | 65.5 | 65.5 | 65.2 |
| 독일 | 74.0 | 74.0 | 75.3 | 75.9 | 75.7 | 76.0 | 76.2 | 76.4 | 76.7 | 76.8 |
| 이탈리아 | 56.3 | 56.3 | 58.0 | 58.5 | 58.7 | 58.6 | 58.6 | 58.8 | 59.0 | 59.1 |
| 일본 | 73.4 | 73.4 | 75.3 | 76.9 | 76.8 | 77.0 | 77.3 | 77.5 | 77.6 | 77.9 |
| 한국 | 65.9 | 65.9 | 66.6 | 66.6 | 66.6 | 66.5 | 66.6 | 66.7 | 66.7 | 66.9 |
| 스페인 | 57.8 | 57.8 | 61.1 | 62.4 | 62.3 | 62.6 | 62.9 | 63.1 | 63.3 | 63.2 |
| 영국 | 72.7 | 72.7 | 74.1 | 74.7 | 74.6 | 74.6 | 74.9 | 75.1 | 75.1 | 75.0 |
| 미국 | 68.7 | 68.7 | 70.1 | 70.7 | 70.7 | 70.7 | 71.0 | 71.1 | 71.2 | 71.5 |

주: 고용률 = $\frac{\text{취업자 수}}{\text{15~64세 인구수}} \times 100$

출처: "OECD employment rate increases slightly in the third quarter of 2019," OECD Quarterly Employment Situation News Release, 2020. 1. 20., Table 1을 재구성



미국

[예산·결산 등]

■ 미 연방 항소법원,⁹⁾ 남부지역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방예산 전환 허용 판결(2020. 1. 8.)¹⁰⁾

- (배경) 국방부는 2019년 9월에 국방예산 중 36억

달러를 남부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 → 이후 소송 진행

- (1심 판결)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는 장벽 건설 시도를 주요 사유로 한 장벽 건설 금지 명령 판결을 내림

* 장벽 건설은 해당 지역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야기한다는 지역 사회의 불만이 있음¹¹⁾

9)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ifth Circuit

10)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statement-press-secretary-regarding-border-wall-victory/> ABC News, <https://abcnews.go.com/Politics/trump-praises-appeals-court-decision-military-funds-border/story?id=68168127>

11) CNBC, <https://www.cnbc.com/2020/01/09/trump-border-wall-can-use-military-money-during-legal-challenge.html>

- (백악관 입장) 백악관 대변인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법치주의의 승리이며, 국경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국경장벽을 완수해낼 것이라 발표

<남부지역 국경장벽 관련 주요 배경 사건¹²⁾>

- 정부와 민주당 간의 FY2019 남부 국경지역 장벽 건설 예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 못하자 2018년 말~2019년 초 미국 연방정부의 역대 최장 기간 섯다운 사태 발생
- 최장 기간의 섯다운 사태는 3주간의 시한을 둔 3차 임시예산법이 통과(2019. 1. 25.)되면서 잠정적 해소
- 이후, 민주/공화 양당이 국경장벽 예산에 대한 잠정 합의를 거친 후, 2019년 2월 15일에 2019 회계연도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서 FY2019 섯다운 리스크는 해소되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법안 최종 확정 당일 국가비상사태를 섯포
 - * 국가비상사태가 섯포되면서 남부지역의 국경안보와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응한 정부의 활동은 국가비상사태법에 의거하여 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미 국방부는 36억달러 규모의 국방 관련 예산을 국경장벽 예산으로 전환 계획 발표(2019. 9. 4.)

■ 의회예산처(CBO), 2020~2030 예산·경제 기준선 전망(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0-2030)¹³⁾ (2020. 1. 28.)

*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보고서는 대통령 예산안 발표 전/후에 발표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는 2020년 1월 7일 이전에 변화된 법률 또는 예산/경제 영향만 반영함

- (경제 전망) 2019년 경제성장률은 2.3%로 추정되며, 2020년은 0.1%p 감소한 2.2% 전망 (2020~2030년 기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 1.7% 수준)
 - (지난 전망과의 차이점) 2019년 8월에 발표된 2019~2029 예산경제기준선 전망과의 수치와 이번 보고서의 수치가 이자율과 물가 인상을 이 하향 조정된 것을 제외하곤 비슷한 수준(전망 후반기의 잠재성장치와 실업률 수치도 하향 조정)
 - (성장률) 경제성장은 2020년에 최근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잠재성장을 상회함에 따라 물가상승과 이자율을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
 - 전망기간의 후반기(2025~2030년)에는 실질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치와 같은 1.7%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

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재정지출분석센터), 2019년 1월, 2월 하반기 재정동향 / 9월 상반기 재정동향

13) CBO, <https://www.cbo.gov/publication/56020>



[그림 2] 실질GDP/잠재GDP 증가율 추이 및 전망

(단위: %)



출처: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0 to 2030, 2020. 1. 28.

- (노동시장) 견고한 경제성장과 노동수요로 인해 실업률은 낮은 수준으로 머물며, 2020년에 잠재 고용규모¹⁴⁾를 초과하고, 임금(wages)/급여(salaries) 상승 전망(향후 5년간 잠재고용 규모 초과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소비지출) 지난 몇 년간 빠르게 상승한 임

- 금/급여의 영향과 함께 2017 세금감면법으로 인해 가처분(개인)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 지출이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도 가계자산(household wealth) 증가 및 임금/급여의 증가가 소비지출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
- (기업투자) 2019년에 마이너스 성장률(-1.6%)

14) potential employment = maximum sustainable level of employment

<표 4> 미국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

| 경제 전망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2024 | 2025~2030 |
|-------------------|------|------|------|------|----------------------------|-----------|
| | 추정 | 전망 | | | 평균 성장률 (Annual Average) | |
| 실질 GDP 성장률 | 2.3 | 2.2 | 1.9 | 1.7 | 1.6 | 1.7 |
| 물가(CPI - Urban) | 1.8 | 2.5 | 2.6 | 2.6 | 2.4 | 2.2 |
| 실업률 ¹⁾ | 3.7 | 3.5 | 3.5 | 3.8 | 4.3 | 4.5 |

주: 1. 지표 수치는 Calendar Year 기준

1) 2019 실업률은 실적 수치(actual value)

출처: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0 to 2030, 2020. 1. 28.

을 보였던 기업투자는 2020년에 3.6% 증가 전망

- 기업 고정투자는 2018년 4.2%, 2019년에 0.2%로 하락하였으나, 2020년에 3.6%로 반등할 전망

* 기업 고정투자의 하락세는 보잉737맥스의 납품 보류 및 불확실한 관세정책 등에 부분적 기인

- (주택/부동산 투자¹⁵⁾) 2019년에 0.9%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2020년에는 5.7%로 크게 증가할 전망(2021~2024년 기간 동안 연평균 1.3% 증가율 전망)

* 2018년 주택시장의 하락세는 2017 세금감면법의 부분적 영향으로 주택소유에 대한 동기부여 감소와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율의 증가에 기인(2019~2020년에는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율 감소 전망)

- (정부지출) 2019년에 2.6%의 증가율을 보이나, 2020년에는 0.9%로 하락할 전망(2021~2024년에는 연평균 0.5%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재정 전망) FY2020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3.1%(310억달러) 증가한 1조 150억달러로 GDP

대비 4.6% 전망(2021~2030년 동안 연평균 재정적자는 1.3조달러 전망)

* 재정적자는 향후 10년간 GDP 대비 4.3~5.4% 사이에서 유지될 전망(최근 50년의 연평균 재정적자는 약 3.0% 수준)

* 기초재정수지는 향후 10년간 2.3~2.9% 사이에서 유지될 전망

- (수입) FY2020 연방수입은 전년 대비 4.6%(1,580억달러) 증가한 3조 6,320억달러 전망

• 연방수입은 2020년에 GDP 대비 16.4%, 2023년에는 17%대로 진입하고, 이후 2027년에 GDP 대비 18%에 도달 전망

* 2025년 이후의 수입규모 증가는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2017 세금감면법(개인소득세 감면조항) 만료에 크게 기인

- (지출) FY2020 연방지출은 전년 대비 4.5%(2천억달러) 증가한 4조 6,470억달러 전망

• (총량) 연방지출은 2020년에 GDP 대비 21.0%, 2025년에는 22%대로 상승 전망(2021~2030년 재정지출의 GDP 대비 평균 비중은 22.2%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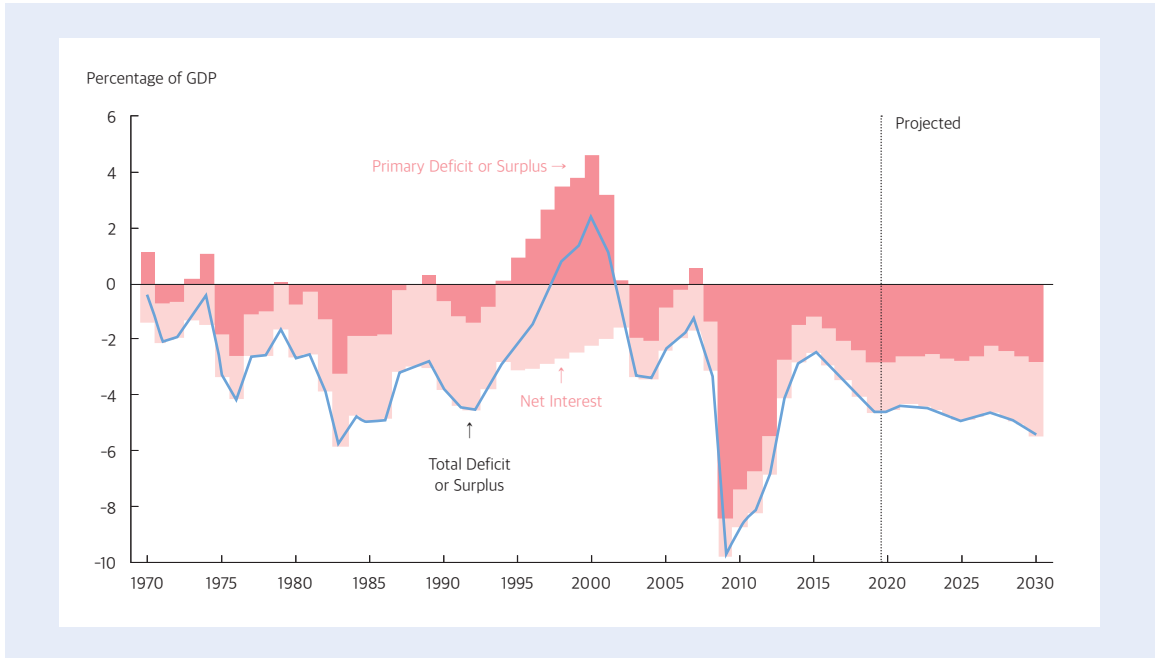
* 향후 10년 동안 연방지출의 총증가규모는 2.8조달러로 전망되며, 이 중 사회보장지출, 메디케어, 순이자지출이 총지출 증가분의 2/3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임

15) residential investment



[그림 3] 총재정수지, 기초재정수지, 순 이자지출 추이 및 전망

(단위: GDP 대비 %)



출처: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0~2030, 2020. 1. 28.

- (재량지출) 2020년 기준 GDP 대비 각각 3.2%를 차지하고 있는 국방과 비국방 지출은 2030년에 각각 2.8%로 하락하며, 순이자지출 비중은 1.7%(2020년)에서 2.6%(2030년)로 증가할 전망
* 재량지출의 경우, 지출한도 및 기타 의무지출의 증가율과 같은 이유로 GDP 대비 감소
- (의무지출) 2020년 기준 GDP 대비 4.9%, 5.4%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보장지출과 기타 보건지출 비중의 경우 2030년에 각각

6.0%, 7.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 사회보장지출의 증가는 인구의 고령화에 기인하며, 기타 보건지출은 인구의 고령화 및 보건비용 증가에 기인, 기타 의무지출은 GDP 성장률보다 낮게 증가하여 GDP 대비 감소, 순 이자지출은 누적되는 채무와 이자비용의 상승으로 증가

- (국가채무) 연방정부 채무¹⁶⁾는 올해(2020년) GDP 대비 80.8%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30년에는 GDP 대비 98.3% 전망

* 채무가 증가함으로써 향후 경제 생산량을 위축시키며, 해외 투자자들이 보유한 채권에 대한 이자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 가구소득도 감소할 것으로 보임

16) 정부 내부거래(debt held by government accounts) 제외

<표 5> CBO 예산기준선 전망 비교(2019년 8월 vs 2020년 1월)

(단위: 십억달러, GDP 대비 %)

| 재정 전망 | 실적 | | 전망 | | | | | | | | | | |
|------------------------|------|--------|--------|--------|--------|--------|--------|--------|--------|--------|------|--------|--------|
|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 | 2029 | 2030 | |
| 예산총량 (십억달러) | | | | | | | | | | | | | |
| 수입 | 8월 | 3,330 | 3,462 | 3,620 | 3,792 | 3,971 | 4,163 | 4,392 | 4,585 | 4,900 | ... | 5,619 | - |
| | 1월 | | | 3,632 | 3,816 | 4,001 | 4,206 | 4,382 | 4,562 | 4,851 | ... | 5,545 | 5,745 |
| 지출 | 8월 | 4,109 | 4,447 | 4,628 | 4,826 | 5,130 | 5,344 | 5,543 | 5,869 | 6,174 | ... | 6,997 | - |
| | 1월 | | | 4,647 | 4,816 | 5,117 | 5,325 | 5,534 | 5,877 | 6,184 | ... | 7,012 | 7,487 |
| 재정 적자 | 8월 | 779 | 984 | 1,008 | 1,034 | 1,159 | 1,181 | 1,151 | 1,284 | 1,274 | ... | 1,378 | - |
| | 1월 | | | 1,015 | 1,000 | 1,116 | 1,119 | 1,152 | 1,315 | 1,333 | ... | 1,466 | 1,742 |
| 국가 채무 ¹⁾ | 8월 | 15,750 | 16,803 | 17,755 | 18,841 | 20,042 | 21,264 | 22,457 | 23,784 | 25,102 | ... | 29,322 | - |
| | 1월 | | | 17,855 | 18,886 | 20,066 | 21,248 | 22,453 | 23,827 | 25,196 | ... | 29,667 | 31,447 |
| 예산총량 (GDP 대비 %) | | | | | | | | | | | | | |
| 수입 | 8월 | 16.5 | 16.3 | 16.4 | 16.6 | 16.7 | 16.9 | 17.2 | 17.3 | 17.8 | ... | 18.2 | - |
| | 1월 | | | 16.4 | 16.6 | 16.7 | 17.0 | 17.0 | 17.1 | 17.6 | ... | 18.0 | 18.0 |
| 지출 | 8월 | 20.3 | 21.0 | 21.0 | 21.1 | 21.6 | 21.7 | 21.7 | 22.1 | 22.4 | ... | 22.7 | - |
| | 1월 | | | 21.0 | 20.9 | 21.4 | 21.5 | 21.5 | 22.1 | 22.4 | ... | 22.7 | 23.4 |
| 재정 적자 | 8월 | 3.9 | 4.6 | 4.6 | 4.5 | 4.9 | 4.8 | 4.5 | 4.8 | 4.6 | ... | 4.5 | - |
| | 1월 | | | 4.6 | 4.3 | 4.7 | 4.5 | 4.5 | 4.9 | 4.8 | ... | 4.8 | 5.4 |
| 국가 채무 ¹⁾ | 8월 | 77.8 | 79.2 | 80.7 | 82.4 | 84.5 | 86.4 | 88.0 | 89.7 | 91.2 | ... | 95.1 | - |
| | 1월 | | | 80.8 | 82.0 | 83.9 | 85.6 | 87.3 | 89.4 | 91.2 | ... | 96.2 | 98.3 |

주: 1) 국가채무는 정부내부거채를 제외한 연방채무 규모를 의미

출처: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0 to 2030, 2020. 1. 28.

CBO, An Update t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19 to 2029, 2019. 8. 21.



[기타]

■ 의회예산처(CBO), '해외 출생 미국 거주자가 미국 연방예산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표 (2020. 1. 9.)¹⁷⁾

* 보고서 원문 제목: The Foreign-born population and its effects on the U.S. economy and the federal budget - An Overview

- (개요) 2018년 기준, 해외 출생한 미국 거주자들은 약 4,700만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 중 3/4은 합법 체류자로 추정되고 있음

* (합법 체류자) 귀화 시민, 영주권자, 망명자, 난민자, 직업 또는 학업 등을 이유로 임시 기간 동안 승인된 체류자 등을 포함하여 약 3,600만명 수준

* (불법 체류자) 비자 만기 후 체류 및 무허가 국경 이탈자 등을 포함하여 약 1,100만명 수준

- (예산 영향) 해외출생 미국 거주자의 연방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세금 또는 이민자 신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정부 프로그램 참여도에 따라 다른 주/지방정부의 경우에도 이민자들의 주/지방세 납세 의무 및 공공서비스 이용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예: 인구증가는 학교 등의 공공자원에 대한 예산 압박 야기)
- (경제 영향) 이민자들의 경우 불법, 합법 여부를 떠나 경제활동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1인당 생산량이 증가하지는 아닐지라도 총생산량은 증가함
 - * ① 이민자 수 증가 → ② 경제활동 규모 증가 → ③ 경제활동인구의 생산 증가/자본투자 확대/노동자들의 높아진 생산성 → ④ 총생산량 증가
- 이민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이민자의 대체 또는 보충성 특성에 따라 다름
 - * 이민자가 기존 거주 노동자의 능력과 비슷할 경우 임금에 부

정적인 영향이 있는 반면, 기존 거주 노동자에 대해 보충적(complement) 역할을 할 경우 노동 생산성을 높여 임금에 긍정적 역할을 함

- 해외 출생 미국 거주자들(25세 이상)의 학력 수준은 미국 본토인들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기에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저숙련 노동자 임금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

* 출생지역별 실업률의 경우 교육 수준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미국 본토인들에 비해 멕시코 및 중앙 아메리카 출생의 미국 거주자들은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아시아인 거주자들은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음)

■ 의회 상원, 하원의 탄핵안이 상원으로 이관(2020. 1. 16.)된 후 본격적인 탄핵 심판 심리 착수(2020. 1. 21.)¹⁸⁾

* 하원은 작년 말(2019. 12. 18.)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 의결시킨 후, 최근까지 상원으로의 이관을 보류하고 있었음

- 펠로시 하원 의장의 하원탄핵소추위원회(impeachment managers) 지명(총 7명) 의결안(H.Res.798)이 하원에서 통과(2020. 1. 15.)된 후, 탄핵 소추안도 상원으로 이관
 - * <참고> 탄핵소추위원회는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대한 감사의 역할을 맡게 되며, 상원의원들은 배심원 역할을 맡게 됨(탄핵심판 주관은 상원의장이 아닌, 연방대법원장의 주재로 진행)
-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접수 후,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의 선서와 함께 대통령 탄핵 심리 절차 정식 개시(2020. 1. 21.)
- 트럼프 대통령은 팻 시폴론(Pat A. Cipollone) 백악관 법률고문 등이 서명한 백악관의 공식 입장문¹⁹⁾을 통해 탄핵 조항들이 헌법에 위배되며, 탄핵절차가 대통령의 정당한 법절차가 무시된 결과물이라 밝힘
 -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조항 1(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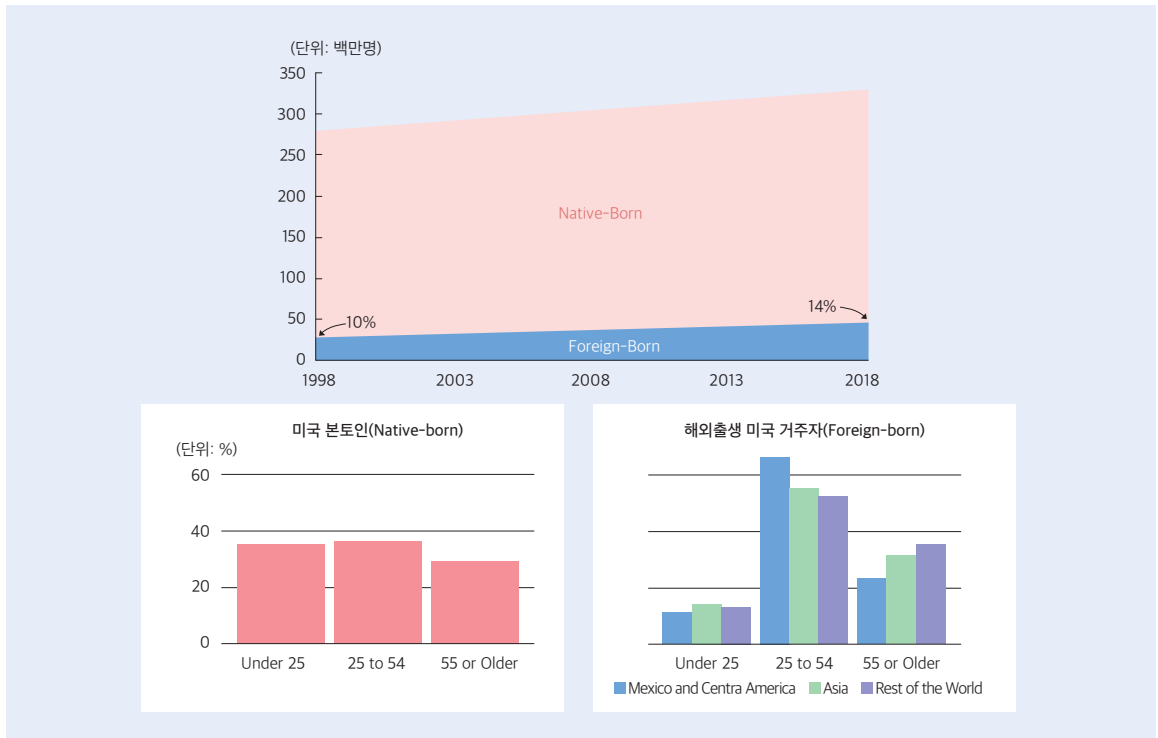
17) CBO, <https://www.cbo.gov/publication/55967>

18) 의회 상원, https://www.senate.gov/legislative/LIS/floor_activity/floor_activity.htm

19) 미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0/01/Answer-of-President-Donald-J.-Trump.pdf>

[그림 4] 미국 본토인·해외출생 미국 거주자별 비중 및 연령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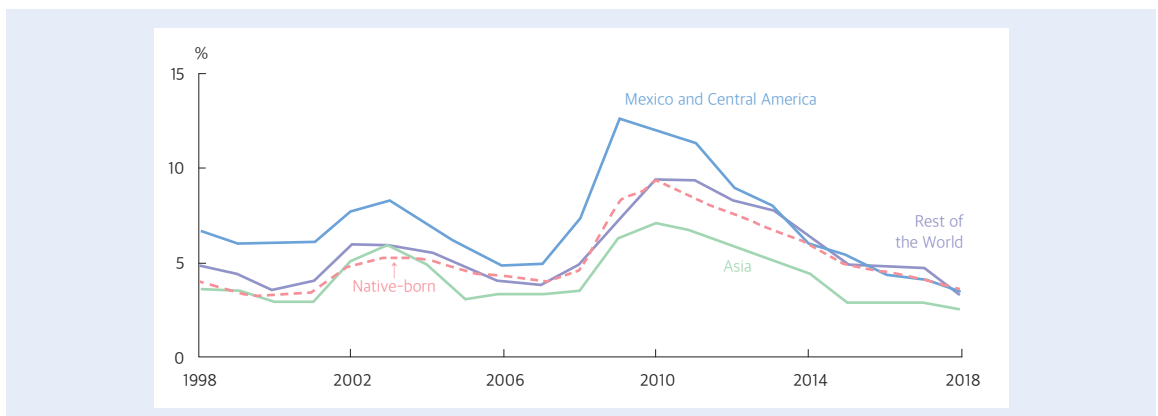
(단위: 백만명, %)



출처: CBO, The Foreign-born population and its effects on the U.S. economy and the federal budget - An Overview, 2020. 1. 9.

[그림 5] 25~54세 대상 출생지별 실업률 추이

(단위: %)



출처: CBO, The Foreign-born population and its effects on the U.S. economy and the federal budget - An Overview, 2020. 1. 9.



남용)에 대해 헌법 2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의 외교 권한을 점령하려는 시도이며, 조항 2(의회방해)는 행정부의 헌법적 권한(privileges)을 처벌하려는 시도로서 견제와 균형을 파괴하는 것이라 언급

- 한편, 감사원(GAO)은 관리예산처(OMB)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금(약 1억 1,400만달러 규모)을 보류한 사안에 대해 법률위반이라는 유권 해석 발표(2020. 1. 16.)^{20), 21)}

<지출유보 통제법²²⁾>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 지출유보통제법(ICA)은 닉슨 행정부 시절 의회가 의결한 세출예산에 대해 닉슨 대통령이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 지출을 거부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의회에서 통과시킨 법으로서, 대통령이 자금의 연기 또는 취소 등을 할 경우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지출의 유보(impoundment)란 행정부의 직원 및 공직자 등이 연방자금의 지출 등에 대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배제(preclude)하려 하는 작위(action) 또는 부작위(inaction)를 뜻함

- 지출유보통제법(ICA)은 의회가 해당 자금을 철회/폐지(rescind)하지 않는 한 예산집행의 보류는 일시적으로만 허용됨

- 감사원은 1974년도에 입법된 의회예산 및 지출유보통제법²³⁾에 근거하여 행정부의 세출예산 유보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은 좁고(narrow) 제한적(limited)임을 밝히고 있으며, 동 법은 정책적인 이유로 인해 관리예산처가 예산을 보류할 수 없음을 언급

■ 미 트럼프 대통령,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서명(2020. 1. 29.)²⁴⁾

- 2018년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법안에 합의했으나 인준이 지연되자 2019년 개정에 합의하고 2020년 동 협정을 의회가 인준하고 대통령이 서명²⁵⁾

- 2018년 초안은 기존 협정과 비교해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 국제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제도 적용 범위 축소, 유제품 시장 개방 등이

20) GAO, <https://www.gao.gov/about/press-center/press-releases/press-statement-b-331564-omb-ukraine.htm>

21) GAO, <https://www.gao.gov/products/b-330330>

22) 의회 하원 예산위원회, <https://budget.house.gov/publications/report/impoundment-control-act-1974-what-it-why-does-it-matter>

23)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24) 미 백악관, President Donald J. Trump's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Delivers a Historic Win for American Workers, 2020. 1. 19.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president-donald-j-trumps-united-states-mexico-canada-agreement-delivers-historic-win-american-workers/>

25) 멕시코는 비준 완료, 캐나다는 비준 예정

포함됨²⁶⁾

- 2019년 개정된 협정은 초안과 비교해 집행·노동·환경·원산지 규정 강화, 의약품 지식재산권 규정 개정 등이 반영됨²⁷⁾

●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이 지식재산권, 디지털 무역 등을 반영하여 현대화되었을 뿐 아니라 일자리 60만개, 경제효과 2,350억달러, 농산물 수출 22억달러, 자동차산업 일자리 7만 6천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 이에 앞서 무역대표부는 동 협정이 17만 6천~58만 9천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큰 폭으로 촉진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음²⁸⁾

● 의회예산처(CBO)는 동 협정 제1장(협약 발효)과 관련해, 재정 적자가 2020년 1,900만달러를 포함해 10년간 30억 4,400만달러 감축될 것으로 추계²⁹⁾

- 예산권한은 2020년 1,900만달러를 포함해 10년간 8,400만달러 감소하고 의무지출(direct spending)은 2020년 900만달러, 10년간 7,400만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

• 특정 유제품의 수출이 증가해 유제품 가격

이 소폭 상승하여 유제품 생산자를 지원하는 연방 지급액이 소액 감소

• 북미개발은행개선 및 오염해결법(H.R. 132)에 따라 미-멕시코 간 환경 및 인프라 투자를 위해 2020년 북미개발은행에 자금이 투입될 예정

- 수입은 2020년 1천만달러, 10년간 29억 7천만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자동차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 규정과 새로운 노동가치 비율 요건으로 인해 특정 면세 수입차 및 부품 수입이 감소하고 이를 일부 관세 품목이 대체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수입이 증가할 전망

• 반면 무역 장벽이 낮아져 캐나다산 면세 수입품이 증가하여 수입 농산품에 대한 관세 수입이 소폭 감소

- 한편 동 협정 제9장(USMCA 추가세출법(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과 관련해, 협약 이행을 위한 연방 기관의 재량지출(discretionary Appropriations)은 2020년 3억 3,400만달러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84억 3천만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

26) 조문하·권혁주·강민지, 「NAFTA 재협상(USMCA) 결과: 평가와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8, No. 3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10. 19.

27) 이규업·강민지, 「USMCA 개정의 함의」,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 2, No. 4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 12. 19.

28) 미 무역대표부, Ambassador Lighthizer Issues Statement on House Passage of the USMCA, 2019. 12. 19.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19/december/ambassador-lighthizer-issues-statement-house-passage-usmca>

29) CBO, "H.R. 5430,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2019. 12. 16.

<https://www.cbo.gov/publication/55960>



<표 6> USMCA 제1장에 따른 의무지출 및 수입 추계

(단위: 회계연도 기준, 백만달러)

|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20-2024 | 2020-2029 |
|-----------------------|------|------|------|------|------|------|------|------|------|------|-----------|-----------|
| 농림부 의무지출 증(+)/감(-) | | | | | | | | | | | | |
| 예산 권한 | -19 | -23 | -17 | -13 | -7 | -5 | 0 | 0 | 0 | 0 | -79 | -84 |
| 지출 | -19 | -23 | -17 | -13 | -7 | -5 | 0 | 0 | 0 | 0 | -79 | -84 |
| 북미개발은행 의무지출 증(+)/감(-) | | | | | | | | | | | | |
| 예산 권한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지출 | 1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 | 10 |
| 수입 증가(+) | | | | | | | | | | | | |
| 수입 | 10 | 40 | 70 | 230 | 360 | 450 | 460 | 450 | 450 | 450 | 710 | 2,970 |
| 재정 적자 감소(-) | | | | | | | | | | | | |
| 적자 영향 | -19 | -63 | -87 | -243 | -367 | -455 | -460 | -450 | -450 | -450 | -779 | -3,044 |

주: 2019년 5월 CBO 기준선 대비, 2020년 2월 발효 가정

출처: CBO, "H.R. 5430,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2019. 12. 16., table.1.

<표 7> USMCA 제9장에 따른 재량지출 추계

(단위: 회계연도 기준, 백만달러)

| 세출소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20-2024 | 2020-2029 |
|------------------|------|------|------|------|------|------|------|------|------|------|-----------|-----------|
| 농림 | | | | | | | | | | | | |
| 예산 권한 | 4 | 0 | 0 | 0 | 0 | 0 | 0 | 0 | 0 | 0 | 4 | 4 |
| 지출 | 3 | 1 | 0 | 0 | 0 | 0 | 0 | 0 | 0 | 0 | 4 | 4 |
| 상무, 사법, 과학 | | | | | | | | | | | | |
| 예산 권한 | 106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6 | 106 |
| 지출 | 68 | 22 | 16 | 0 | 0 | 0 | 0 | 0 | 0 | 0 | 106 | 106 |
| 내무, 환경 | | | | | | | | | | | | |
| 예산 권한 | 308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08 | 308 |
| 지출 | 37 | 121 | 120 | 30 | 0 | 0 | 0 | 0 | 0 | 0 | 308 | 308 |
| 노동, 보건, 인적자원, 교육 | | | | | | | | | | | | |
| 예산 권한 | 21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지출 | 11 | 63 | 63 | 42 | 21 | 0 | 0 | 0 | 0 | 0 | 0 | 0 |
| 국무, 내무 | | | | | | | | | | | | |
| 예산 권한 | 215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15 | 215 |
| 지출 | 215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15 | 215 |
| 총계 | | | | | | | | | | | | |
| 예산 권한 | 843 | 0 | 0 | 0 | 0 | 0 | 0 | 0 | 0 | 0 | 843 | 843 |
| 지출 | 334 | 207 | 199 | 72 | 21 | 0 | 0 | 0 | 0 | 0 | 843 | 843 |

주: 2019년 5월 CBO 기준선 대비, 2020년 2월 발효 가정

출처: CBO, "H.R. 5430,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2019. 12. 16., table.2.



일본

[예산·결산 등]

■ 재무성, FY2020 예산 정부안 추가발표(2020. 1. 20.)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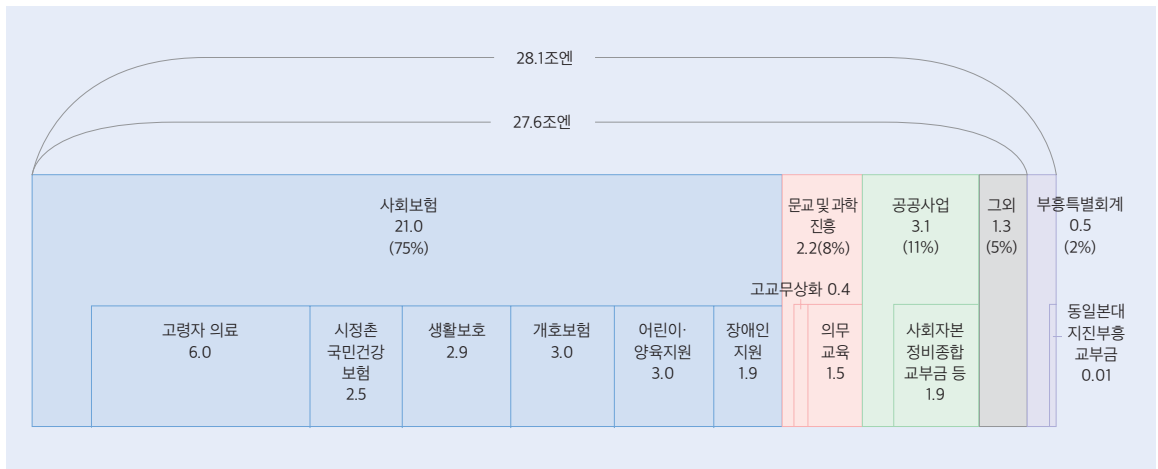
-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391.8조엔, 회계 간 이전 등을 제외한 세출 순계액은 196.8조엔
- 세출 순계액의 대부분은 국채상환비(85조엔), 사회보장급부비(72조엔), 지방교부세교부금(19.8조엔), 재정용자 자금으로 편입(재투채³¹⁾)

에 의한 자금조달) 등에 사용되며 이를 제외한 금액은 7.9조엔

- 동일본대지진부흥경비 1.7조엔을 제외하면 총 6.2조엔

- 6.2조엔 중 40%는 보험사업, 20%는 에너지대책에 사용
- 재원 면에서는 일반회계로부터 편입이 1.4조엔(특정재원의 일반회계 경우 편입을 포함) 나머지는 그 외 세입(보험료 등)
- 지방 보조금 총액은 28조 953억엔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9% 증가(+5,238억엔)

[그림 6] FY2020 지방을 위한 보조금 전체 그래프



財務省, 地方向け補助金等の概要, 2020. 1. 20.

30) 재무성, https://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0/seifuan2019/index.html

31) 재투채(財投債), 재정 용자 자금의 운용 재원에 충당하기 위한 국채. 재투채 발행 수입은 '재정용자특별회계 재정용자자금 계정'의 세입의 일부가 되며, 세출로 재정용자 자금으로 이월됨. 발행 한도액은 국회의 의결을 받으며 상품성 또한 일반 국채와 동일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이 재정용자 자금의 대부 재원이 되는 동시에 상황이 재정용자자금의 대출 회수금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회계의 세출 재원이 되고, 상황이 조세 등으로 충당되는 일반 국채와는 다른. 또한 재투채는 국민계정의 일반정부 부채로 분류되지 않으며 국가 및 지방의 장기 채무 잔고에도 포함되지 않음



- 부흥특별회계를 제외하면 27조 5,740억엔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6% 증가

■ 재무성, FY2019 추경예산 정부안 국회제출(2020. 1. 20.)³²⁾

- 일반회계 총액 4조 4,700억엔의 추가 세출을 시행함
- 종합경제대책에 따라 “재해복구·부흥과 안전·안심 확보” 관련 경비에 약 2조 3,100억엔 “경기하방 리스크를 뛰어넘는 곳에 중점 지원” 관련 경비에 약 9,200억엔, “미래에 대한 투자와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이후를 내다본 경제활력 유지 및 상향” 관련 경비에 약 1조 800억엔을 계상하였으며, 국제 분담금 등 추가 재정수요에 약 1,700억엔을 계상
- 재원조달은 세출에서 기본경비를 약 1조 2,900억엔 감액하였으며, 세입에서 전년도 잉여금 약 8천억엔을 계상하였고, 건설공채로 약 2조 1,900억엔을 발행함
- 세입측면에서는 약 2조 3,200억엔의 감소가 예상됨
- 국세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액 보전을 위한 소요액은 특례공채를 약 2조 2,300억엔 발행
- FY2019 일반회계의 추경 후 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과 비교해 세입세출 모두 약 3조 1,900억

엔 증가한 약 104조 6,500억엔

- 특별회계예산에도 필요한 보정을 실시하였으며, 재정투융자계획은 종합경제대책을 근거로 현재 저금리 상황을 활용한 인프라 정비에 대한 초장기 자금공급과 일본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해 1조 4,500억엔을 추가

[기타]

■ 총무성, 가계조사(2인 이상 가구) 2019년 11월분 발표(2020. 1. 10.)^{33), 34)}

- 전국 9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의 수입·지출, 저축·부채 등을 매월 조사
- 2인 이상 가구의 가계수지는 주로 지역·세대 특성에 따라 매월 공표하며, 1인 가구 및 전체 가구의 가계수지에 대한 결과 및 2인 이상의 가구의 저축·부채에 대한 결과는 분기별로 공표
- 2019년 11월분 소비지출은, 1세대 당 27만 8,765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실질 1.4% 감소, 명목 0.8% 감소
- 전년 동월 대비 변동 조정치³⁵⁾는 실질 2.0% 감소, 명목 1.4% 감소
- 전월 대비(계절조정치) 실질 2.6% 감소
- 근로자가구의 실질 소득은 가구당 47만 5,548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실질 3.8% 증가, 명목 4.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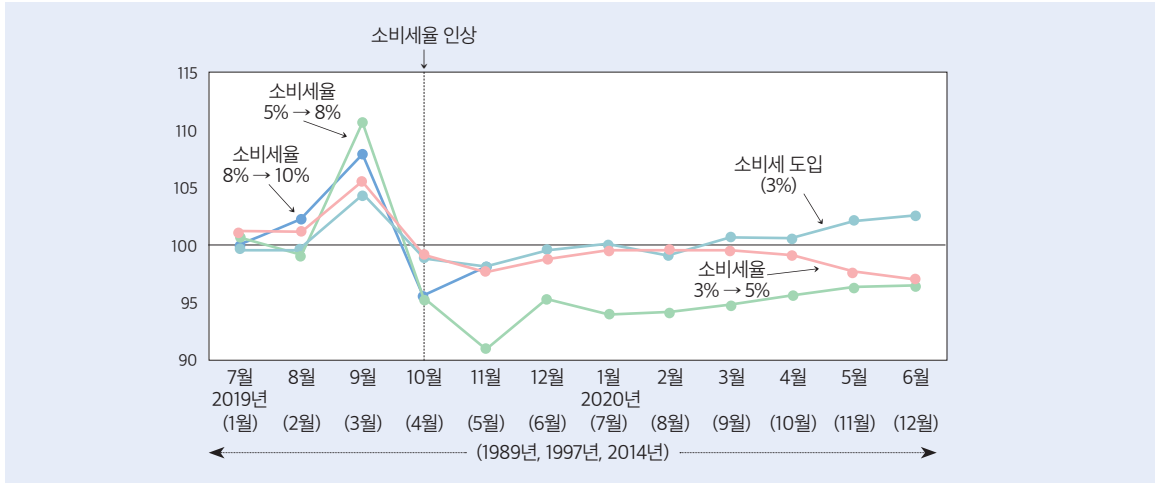
32) 재무성, https://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19/index.html#hosei1

33) 일본 통계청, <https://www.stat.go.jp/data/kakei/sokuhou/tsuki/index.html>

34) 총무성, https://www.soumu.go.jp/menu_news/s-news/01toukei07_01000186.html

35) 조사방법 변경의 영향에 따른 변동을 조정한 추정치. 2018년 1월부터 조사표를 전면 개정함에 따라, 조사가구의 절반은 새로운 가계부A를, 나머지 절반은 기존의 가계부B를 사용하고 있어 조사표 개정에 의한 조정치를 아울러 추정함

[그림 7] 소비세율 인상 전후의 소비지출(계절조정 실질지수³⁶⁾) 추이



주: 각 지수의 기준이 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음

- 소비세 도입(3%): 1988년 평균=100
- 소비세율 3%→5%: 1996년 평균=100
- 소비세율 5%→8%: 2013년 평균=100
- 소비세율 8%→10%: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 1년 평균=100

- 또한 소비세 도입(3%) 및 소비세율 3%→5%는 농림어업 세대를 제외한 결과이며, 소비세율 5%→8% 및 소비세율 8%→10%는 농림어업 세대를 포함한 결과임
출처: 総務省統計局, 家計調査追加参考, 2020. 1. 10.

- 전년 동월 대비 변동 조정치는 실질 1.9% 증가, 명목 2.5% 증가
- 소비세율 인상이 전년 동월 대비 소비지출의 실질 증감률에 주요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

- (재정지출) 2019년 재정지출은 3,436억유로로 기존 지출 목표대비 128억유로 낮게 집계
- (재정수입) 소득세, 신자동차 보유세(Kfz-Steuer) 증가와 EU 자체재원 이전(EU Eigenmittel abführungen) 감소로 2019년 재정수입은 목표치보다 7억유로 높은 3,571억유로로 집계
- (재정수지) 구조적 재정수지는 GDP 대비 0.1% 흑자를 기록, 이는 채무제한법³⁷⁾ 대비 0.45%p 높은 수치임
- 최종 결산보고서는 6월 발표 예정



독일

[예산·결산등]

■ 연방재무부, FY2019 잠정결산 발표(2020. 1. 13.)³⁶⁾

36) 연방 재무부, ÖFFENTLICHE FINANZEN,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0/01/2020-01-13-PM01-Abschluss-BHH2019.html>

37) 채무제한법(Debt Brake): 연방의 신규 순채무를 2016년부터 GDP 대비 0.35% 이하로 제한하고, 주정부의 신규 순채무는 2020년부터 전적으로 금지



<표 8> FY2019 결산(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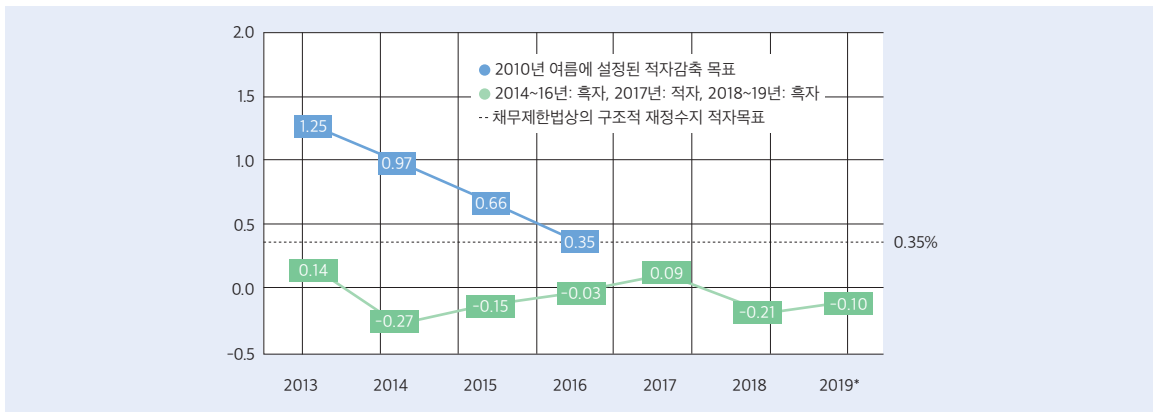
(단위: 억유로)

| 구분 | 2019(목표) | 2019(잠정) | 목표치 대비 차이 |
|--------|----------|----------|-----------|
| 재정지출 | 3,564 | 3,436 | -128 |
| 예비비충당금 | 0 | 135 | +135 |
| 재정수입 | 3,564 | 3,571 | +7 |
| 조세수입 | 3,225 | 3,290 | +35 |
| 세외수입 | 254 | 281 | +27 |
| 예비비인출 | 55 | 0 | -55 |
| 신규차입 | - | - | - |

출처: 연방 재무부, ÖFFENTLICHE FINANZEN, 2020. 1. 13.

[그림 8] 구조적 재정수지 추이

(단위: GDP 대비 %)



출처: 연방 재무부, ÖFFENTLICHE FINANZEN, 2020. 1. 13.

[기타]

■ 연방정부, 2038년까지 석탄연료 사용중단 계획 발표(2020. 1. 17.)³⁸⁾

* 동 계획은 2019년 8월 28일 연방내각에서 통과된 탄광지역의 구조적 개발법으로 성장·구조변화·고용관리위원회가 제시한 구조정책 권고안에 따라 연방정부의 지원원칙 및 재정범위를 구체화함

- 기후보호프로그램(Klimaschutzprogramm) 이행 및 에너지 발전의 구조적 변화를 위해 석탄 연료 사용을 중단할 계획
- 2038년까지 총 400억유로(금융지원 140억유로, 해당 연방부처 예산 260억유로)를 지출하여 헬름스테트 등 열악한 석탄채굴지역에 철

38) 연방 재무부, Top-Themen, 2020. 1. 17.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Schlaglichter/Klimaschutz/2020-01-17-kohleausstieg-erfuellungs-klimaschutzziele.html>

도 및 도로확장, 연구시설 확충, 석탄사업자 보상,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지원할 계획

-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사용을 확대하여 2030년까지 65%의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계획

■ 연방통계청, 2019년 독일 GDP 성장률 발표(2020. 1. 15.)³⁹⁾

- 독일의 2019년 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0.6% 성장하여 10년 연속 성장을 지속하였지만, 지난 10년간 평균 성장률(1.3%)에 비해 낮은 성장률을 기록함
- 가계최종소비지출과 정부총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각각 1.6%, 2.5% 증가하여 2019년 성장에 기여함

- 건설 토목의 투자 증가에 따른 건설부문 총고정자본형성은 전년보다 3.8% 성장하였지만, 기계장비는 0.4%에 그침
- 2019년 독일의 수출은 연평균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2018년 이후 성장폭이 둔화되어, 2019년 0.9%로 집계됨

- 산업별로는 서비스 부문(2.9%)과 건설(+4.0%)이 크게 성장한 반면, 자동차판매량 감소에 따른 제조업 부진으로 2019년 총부가가치는 0.5% 증가에 그침
- 2019년 취업자수는 전년 대비 40만명 증가한 4,530만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사회보험가입자 또한 0.9% 증가함
-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126억유로 감소한 498억유로로 8년 연속 흑자를 달성함

<표 9> 독일 GDP 성장률(2009~2019년)

(단위: %)

| 구분 | 전년 대비 가격조정 | 전년 대비 가격 및 달러조정 |
|------|------------|-----------------|
| 2009 | -5.7 | -5.6 |
| 2010 | 4.2 | 4.0 |
| 2011 | 3.9 | 4.0 |
| 2012 | 0.4 | 0.6 |
| 2013 | 0.4 | 0.5 |
| 2014 | 2.2 | 2.2 |
| 2015 | 1.7 | 1.5 |
| 2016 | 2.2 | 2.1 |
| 2017 | 2.5 | 2.8 |
| 2018 | 1.5 | 1.5 |
| 2019 | 0.6 | 0.6 |

출처: 연방통계청, Presse, Pressemitteilungen, 2020. 1. 15.

39) 연방통계청, Presse, Pressemitteilungen, 2020. 1. 15.



<표 10> 독일 GDP 성장률(2009~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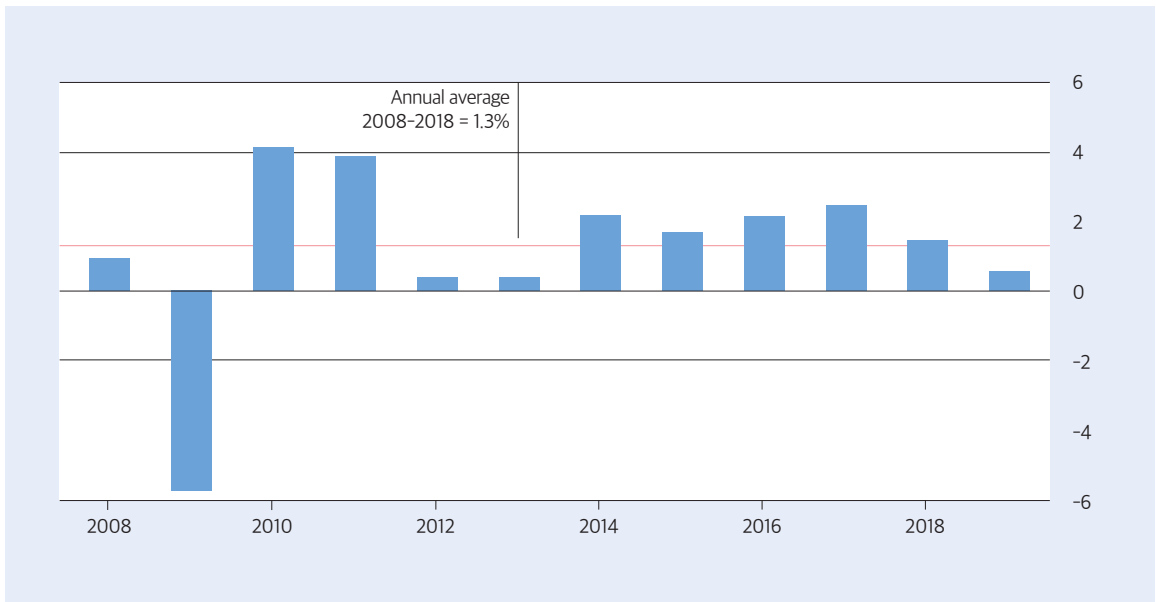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
| 가계최종소비지출 | 2.3 | 1.3 | 1.3 | 1.6 |
| 정부소비지출 | 4.1 | 2.4 | 1.4 | 2.5 |
| 총고정자본형성 | 3.8 | 2.4 | 3.5 | 2.5 |
| 건설 | 3.8 | 0.7 | 2.5 | 3.8 |
| 기계장비 | 3.0 | 4.0 | 4.4 | 0.4 |
| 기타 | 5.2 | 4.2 | 4.3 | 2.7 |
| 수출 | 2.4 | 4.9 | 2.1 | 0.9 |
| 수입 | 4.3 | 5.2 | 3.6 | 1.9 |
| GDP | 2.2 | 2.5 | 1.5 | 0.6 |

출처: 연방통계청, Presse, Pressemitteilungen, 2020. 1. 15.

[그림 9] 독일 GDP 성장률

(단위: 전년 대비 가격조정 %)



출처: 연방통계청, Presse, Pressemitteilungen, 2020. 1. 15.



프랑스

[기타]

■ 연금개혁⁴⁰⁾ 관련 진행 경과

- 2019년 12월 초에 시작된 연금 개혁 반대 총파업은 역대 최장기간 파업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3차례 대규모 집회(12. 5.; 12. 11.; 12. 17.)에 이어 1월 9일 4차 대규모 집회가 개최됨⁴¹⁾
- 마크롱 대통령, 2020년 신년사를 통해 연금개혁 완수 의지 표력(2019. 12. 31.)⁴²⁾
 - 파업 종결을 이끌고 연금 개혁을 끝까지 이행할 수 있도록 조속한 타협을 위한 노력 의지를 밝힘
-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 노조 대표들과 연금 개혁안 협상을 시도,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2020. 1. 7.)⁴³⁾
-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 노조 대표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조항을 철회할 수 있음을 언급(2020. 1. 11.)⁴⁴⁾

- 이에 대해, 프랑스 최대 노조인 민주노동연맹(CFDT)은 환영의 의사를 표시함⁴⁵⁾

■ 중견기업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stratégie Nation ETI) 발표(2020. 1. 21.)⁴⁶⁾

- 2017년 기준 5,400개의 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며, 프랑스 전체 고용의 25%를 담당함
 - * 중견기업(ETI: entreprises de taille intermédiaire)은 직원 수 250명 이상, 5천명 미만이고 연간 매출액이 15억유로 미만이거나 대차대조표 총액이 20억유로 미만인 기업
- 2009년부터 2015년 사이 총 33만 7,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민간 R&D 지출의 23%를 차지함
-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을 목표로 함
 -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 중견기업의 평균 규모 확대
 - 주요 사업에 젊은 근로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대학과의 유대 강화
-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다음의 조치들을 포함
 - 지역별 수출지원 프로그램인 Team France Export를 강화하여 해외에서 활동 중인 중견

40) 프랑스는 2019년 9월 12일, 보편성, 공정성, 책임성의 측면에서 보편적 연금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12월 제1호, 2019 참고

41) 노동총동맹(CGT)은 정부 연금 개편안 전체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프랑스 최대 노조인 민주노동연맹(CFDT)은 은퇴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조정하는 조항에 대해 집중적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

42) 프랑스 대통령궁, Vœux 2020 aux Français, <https://www.elysee.fr/emmanuel-macron/2019/12/31/voeux-2020-aux-francais>

43) 프랑스 정부, Déclaration du Premier ministre à l'issue de la réunion avec les partenaires sociaux, <https://www.gouvernement.fr/partage/11332-micro-tendu-du-premier-ministre-a-l-issue-de-la-reunion-avec-les-partenaires-sociaux>

44) 프랑스 정부, Courrier de M. Édouard Philippe, Premier ministre, aux organisations syndicales et patronales, <https://www.gouvernement.fr/partage/11334-courrier-de-m-edouard-philippe-premier-ministre-aux-organisations-sociales-et-patronales>

45) 프랑스 민주노동연맹(CFDT), RÉFORME DES RETRAITES: UN PREMIER PAS DANS LA BONNE DIRECTION, https://www.cfdt.fr/portail/actualites/l-avenir-des-retraites/reforme-des-retraites-un-premier-pas-dans-la-bonne-direction-srv_1086757

46) 프랑스 대통령궁, Lancement de la stratégie de la Nation pour les ETI, entreprises de taille intermédiaire, <https://www.elysee.fr/emmanuel-macron/2020/01/21/lancement-de-la-strategie-de-la-nation-pour-les-eti-entreprises-de-taille-intermediaire>



- 기업의 홍보 지원 강화
- 프랑스공공투자은행(Bpifrance)의 혁신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지원 강화

- 를 해결하겠다는 최근 발표들을 반영할 예정
- 채무를 통제하는 가운데, 적절하고 책임있는 투자를 위해 저금리의 이점을 활용하여 재정 책임헌장(Charter of Fiscal Responsibility)을 새로운 준칙으로 업데이트할 예정



영국

[예산·결산 등]

■ 영국 재무장관, 예산안 발표 일정 공개(2020. 1. 7.)⁴⁷⁾

* 영국은 2017년부터 정부 예산안을 가을에 발표하도록 변경(이전에는 봄 예산안 형식으로 발표)되었으나 2019년에는 조기 총선 추진으로 예산안 발표일을 연기하였음

- 사지드 자비드(Sajid Javid) 재무장관은 예산 과정이 착수되었으며 2020년 3월 11일에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임을 밝힘
 - 또한 영국의 잠재력 발휘, 영국 전역의 수준 제고, 향후 10년의 부흥(renewal)을 위한 야심 찬 계획을 예산안에 담을 것이라고 언급
- 예산안에서 영국 전역에 대한 투자 제고와 같은 기회 확대, 근로자들의 생계비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등의 계획을 포함할 전망
 - 환경을 예산의 우선순위에 둘 것임
 - 신규 병원에 대한 투자, 신규 임용 경찰에 대한 훈련 제공, 직업교육 지원, 법정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 역대 최대 증액 등 공공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생계비 문제

[기타]

■ 영국 재무부, 2020년 최저임금 인상 계획 발표(2019. 12. 31.)⁴⁸⁾

- (제도 개요) 영국은 연령 구간과 견습직(apprentice)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 금액을 다르게 적용함
 - 2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법정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을, 16~24세 근로자에 대해 연령 구간별로 법정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을 적용함
- 최근 발표된 최저임금 관련 계획
 - 2019년 9월, 재무부 장관은 2024년까지 법정 생활임금을 약 10.5파운드(중위 소득의 2/3 목표)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힘
 - 또한 법정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2021년 4월부터 23세 이상으로, 향후 5년 이내에 21세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발표함
 - * 이를 통해 약 400만명의 저임금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
- 2020년 최저임금 인상 내용
 - 2020년 4월 1일부터 법정생활임금을 8.21파

47) 영국 재무부, Chancellor launches Budget process to usher in 'decade of renewal', 2020. 1. 7.
<https://www.gov.uk/government/news/chancellor-launches-budget-process-to-usher-in-decade-of-renewal>

48) 영국 재무부, Government announces pay rise for 2.8 million people, 2019. 12. 31.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announces-pay-rise-for-28-million-people>

운드에서 8.72파운드로 인상(6.2% 증가)하여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할 전망

- 법정최저임금을 받는 전일제 근로자는 전년도 최저임금 대비 연간 930파운드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됨
- 16~24세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연령 구간별로 4.6~6.5% 인상될 예정
- 약 300만명의 근로자가 법정생활임금 및 법정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혜택을 받을 전망

시 상원으로 반환되었으며, 상원은 수정안을 주장하지 않고 하원의 법률안을 승인(1. 22)함
- 의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여왕의 재가(1. 23.)를 받음

- (향후 일정)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탈퇴 협정 승인을 거쳐 2020년 1월 31일(오후 11시)자로 영국이 EU에서 공식 탈퇴할 예정

* 탈퇴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1개월간 이행기간 적용

[기타]

■ EU 탈퇴법안(Withdrawal Agreement Bill) 영국 상·하원 통과 및 여왕 재가 완료(2020. 1. 23.)⁴⁹⁾

- 영국의회의 EU 탈퇴 법안 검토·승인 경과
 - 하원이 EU 탈퇴 법안을 가결(1. 9.)한 이후, 상원에서 EU 탈퇴 법안 수정안이 통과(1. 21.)됨
 - 영국 내 EU 시민의 거주권, 난민 아동과 가족의 재결합 조항 유지, 자치 정부의 동의 없이 관련 문제에 대한 의회의 입법 제한 등 5개의 수정안 포함
 - 하원에서 상원의 수정안이 부결(1. 22.)되어 다



중국

[예산·결산 등]

■ 재무부, 발생주의 기반 정부종합재무제도(权责发生制政府综合财务报告) 개정 보고서를 발표(2020. 1. 3.; 2020. 1. 8.)^{50), 51)}

- 정부의 재무 시스템 개혁을 위해 정부재무 편성 방법,⁵²⁾ 부처별 재무 편성 및 작성지침,⁵³⁾ 정부종합재무 편성 및 작성지침⁵⁴⁾ 개정 보고서를 발표
- 발생주의 기반 정부종합재무제도의 구축은 제 18차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제안된 주요 개혁

49) 영국 의회, European Union (Withdrawal Agreement) Bill returns to the Lords, 2020. 1. 23.

<https://www.parliament.uk/business/news/2020/january/lords-debates-european-union-withdrawal-agreement-iii/>

50) 중국 재무부, http://gks.mof.gov.cn/guihangzhidu/202001/t20200103_3454563.htm

51) 중국 재무부, http://www.mof.gov.cn/zhengwuxinxi/caijingshidian/zgcjb/202001/t20200108_3456308.htm

52) 政府财务报告编制办法 原文, http://gks.mof.gov.cn/guihangzhidu/202001/t20200103_3454467.htm

53) 政府部门财务报告编制操作指南 原文, http://gks.mof.gov.cn/guihangzhidu/202001/t20200103_3454468.htm

54) 政府综合财务报告编制操作指南 原文, http://gks.mof.gov.cn/guihangzhidu/202001/t20200103_3454469.htm



과제이며 예산법에 명시되어 있음

- 2014년 국무원⁵⁵⁾은 발생주의 기반 정부종합재무제도의 개혁 계획을 승인하고 2015년부터 정부재무보고서 작성방법 및 운영가이드, 정부재무제도 프레임워크 구축 등의 개혁을 진행해왔음
- 발생주의 기반 정부종합재무제도 개정 보고서는 재무제표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예산법에 따라 각 부처는 부처별 재정결산보고서와 정부종합재무보고서를 발간해야 함
 - 재정결산보고서에서는 주로 흐름(flow)의 측면에서 연간 예산수입 및 지출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정부 종합재무보고서는 재고(stock) 및 흐름(flow)의 측면 모두 반영하여 정부의 전반적인 재정 및 운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재정결산보고서는 주로 일반예산회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는 반면, 종합재무보고서는 예산회계데이터뿐만 아니라 재무부와 부처, 부처 간 사안 등 기타 사안까지 포함해야 함

[기타]

■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⁵⁶⁾ 개최 (2019. 12. 10.~12.)⁵⁷⁾

- 2020년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자는 전체 기조하에 민생안정 및 빈곤퇴치, 경제성장 안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과학기술형 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 확대, 부동산 규제 추가, 금융시스템의 개혁촉진 등의 정책을 발표
 - (빈곤퇴치) 2020년은 중국의 소강사회(小康社会: 국민생활 수준이 중산층이 되는 사회), 13차 5개년 계획(十三五)가 마무리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저소득 계층의 소득 수준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
 - (인프라 투자) 전략적 네트워크형 인프라와 통신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하고 지방의 인프라 건설을 가속화할 것이라 발표
 - (기업혁신 지원) 과학기술체제개혁을 심화하고 과학기술 성과를 위해 기업혁신능력을 상승시킬 것이라 밝힘

55)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집행기관 및 최고 국가행정기관으로 총리 1명, 부총리 4명, 국무위원 5명, 비서장 1명 등의 주요 각료로 구성되어 있음. 법률에 근거한 행정법규 및 명령의 제정 및 공포, 국민경제, 사회발전계획 수립 및 국가예산의 편성과 집행, 지방의 각급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지도 등의 권한이 있음

56) 매년 12월 당 최고의 지도자와 국무원 및 경제 관련 책임자가 참여하여 내년도 재정 및 통화정책 기조와 주요 경제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

57) 중국 인민일보, <http://theory.people.com.cn/n1/2019/12/18/c40531-31511415.html>, 검색일자: 2020. 1. 9.

중국경제, <http://www.chinajingji.co.kr/2019/12/16/%EC%A4%91%EA%B5%AD-%EC%A4%91%EC%95%99%EA%B2%BD%EC%A0%9C%EA%B3%B5%EC%9E%91%ED%9A%8C%EC%9D%98-5%EA%B0%80%EC%A7%80-%EA%B3%BC%EC%9E%AC/>, 검색일자: 2020. 1. 10.

중국 신화넷, http://www.xinhuanet.com/fortune/2019-12/13/c_1125341133.htm, 검색일자: 2020. 1. 10.

- (부동산 규제)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3가지 항목(토지가격 안정, 부동산 가격 안정 및 향후 안정적인 전망)이 추가되어 여전히 엄격한 통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금융 개혁) 자본시장 시스템을 개선하고 차스닥(创业板), 신삼판(新三板)⁵⁸⁾ 개혁 등 금융시스템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
- 중국 정부는 안정적인 경제운영을 추구하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재정 효율성을 적극 개선하고 재정지출의 구조조정에 집중
 - 일반지출(一般性支出)⁵⁹⁾을 줄이고 주요 보장 부문(최저임금, 기초생활보장 등의 기본 생계 지원)에 집중하도록 함
 - 또한 재정 및 통화정책이 소비, 투자, 고용, 산업 및 지역정책과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 중국 국가통계국, 2019년 및 2019년 4분기 경제성장률을 발표(2020. 1. 18.)^{60), 61), 62)}
 - 2019년 중국의 국내총생산량은 99조 865억위안, 실질 GDP 성장률은 6.1%로 당초 목표인 6~6.5% 범위 내로 나타나 목표치를 달성
 - 2019년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6.0%로 전분기와 동일하게 나타남
 - 2019년 제1차 산업은 7조 467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고 곡물 총생산량은 6억 6,384만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 산업은 전년 대비 5.7% 증가, 제조업 10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비스업 역시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2019년 제3차 산업은 전년 대비 6.9% 증가한 53조 4,233억위안이고 전체 GDP 대비 3차 산업의 비중은 53.9%로 나타남
 - 2019년 고정자산 투자(농민가구 제외)는 전년 대비 5.4% 증가한 55조 1,478억위안, 수입 및 수출 총액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31조 5,446억 위안
 - 2019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이며 도시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 농촌지역의 경우 3.2% 증가
 - 2019년 말 등록기준 도시 실업률은 3.62%로 전년 대비 0.1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58)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전국 대상의 장외거래시장을 의미, 중국 증권촌 소재의 비상장하이테크 벤처기업들의 장외거래시장을 뜻하는 말이었으나 2006년 중국 정부가 전국의 중소, 벤처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신삼판 시장을 설립함
 59) 정부예산과목의 일반지출의 개념은 없으나 주로 일반 공공예산 중 행정비용을 의미, <https://www.yicai.com/news/100241144.html>, 검색일자: 2020. 1. 14.
 60) 중국 국가통계국 통계표, http://www.stats.gov.cn/tjsj/zxfb/202001/t20200117_1723591.html
 61)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 http://www.stats.gov.cn/tjsj/zxfb/202001/t20200117_1723383.html
 62) 중국 국가통계국 언론기사, http://www.stats.gov.cn/tjsj/sjtd/202001/t20200122_1724463.html



<표 11> 2019년 및 2019년 4분기 중국 경제성장률

(단위: 억위안, %)

| 구분 | 2019년 | |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 |
|---|---------|---------|--------------|------|
| | 4분기 | 전체 | 4분기 | 전체 |
| 경제성장률 | 278,020 | 990,865 | 6.0 | 6.1 |
| 제1차 산업 | 27,462 | 70,467 | 3.4 | 3.1 |
| 제2차 산업 | 109,253 | 386,165 | 5.8 | 5.7 |
| 제3차 산업 | 141,305 | 534,233 | 6.6 | 6.9 |
| 농업, 임업, 축산업 및 어업 | 28,580 | 73,567 | 3.5 | 3.2 |
| 산업 | 86,722 | 317,109 | 5.9 | 5.7 |
| 제조업 | 73,952 | 269,175 | 5.9 | 5.7 |
| 건설 | 23,072 | 70,904 | 5.3 | 5.6 |
| 도매 및 소매업 | 26,796 | 95,846 | 5.4 | 5.7 |
| 교통운수, 창고 및 우편서비스 (交通运输, 仓储和邮政业) | 11,244 | 42,802 | 6.3 | 7.1 |
| 숙박 및 요식업 | 5,071 | 18,040 | 6.2 | 6.3 |
| 금융 | 18,974 | 77,077 | 7.0 | 7.2 |
| 부동산 | 18,799 | 69,631 | 2.5 | 3.0 |
|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기술 관련 서비스 (信息传输, 软件和信息技术服务业) | 8,341 | 32,690 | 15.6 | 18.7 |
|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租赁和商务服务业) | 9,263 | 32,933 | 9.9 | 8.7 |
| 기타 서비스 | 41,158 | 160,266 | 6.0 | 5.9 |

주: 1. 금액은 현재가격으로 계산, 성장률은 고정가격으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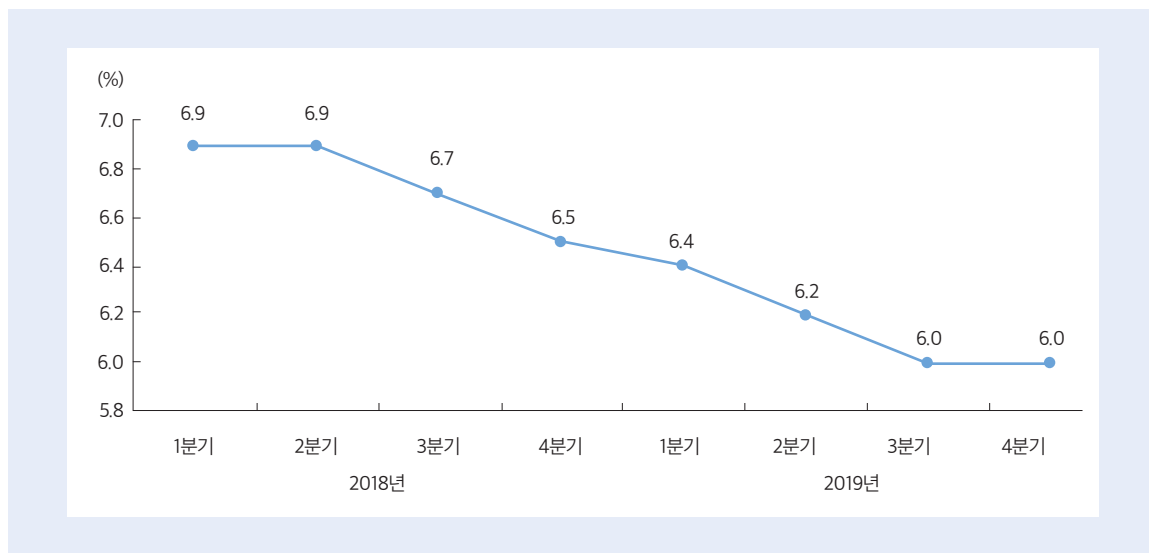
2. 산업분류는 국가경제산업분류(国民经济行业分类(GB/T 4754 - 2017))에 따름

3. GDP 총량은 산업의 합계와 같지 않으며, 산술(반올림 등) 오류로 기계적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출처: 중국 국가통계국, 2019年四季度和全年国内生产总值(GDP)初步核算结果, 표 1, 2020. 1. 18.

[그림 10] 중국 분기별 GDP 성장률

(단위: 전년 동기 대비 %)



재정포럼

2020년 2월호 통권 제284호

-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인/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재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편집·제작/ 최병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책임전문원)
김서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원)

■ 월간 재정포럼

2020년 2월 14일 발행 / 제24권 제2호(통권 제284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34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세일포커스(주) TEL: 02-2275-6894

■ 인쇄 세일포커스(주) TEL: 02-2275-6894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여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414-2134
- FAX: (044)-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식정보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점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재정포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도 아래층 이웃에게는 때론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층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생각을 가지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kobaco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공익광고협의회



인터넷 지식인에게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쉽게 얻은 정답은 진짜 나의 지식으로 오래 남기 어렵습니다. 내가 지식인이 되는 방법, 인터넷 검색(searching)이 아닌 독서(reading)입니다.